

速記文化

創刊號

1967

大韓速記協會

- ◇ 卷頭言.....會長 李源萬(7)
- ◇ 揮毫.....國會議長 李孝祥
- ◇ 揮毫.....國務總理 丁一權

- 祝辭 大韓速記協會의 創立과 「速記文化」의 創刊을 祝賀함文敎部長官 文鴻柱(8)
- 祝辭 文化發展의 新轉機를 確信.....速記課長 李弼鎔(9)

速記協會設立의 意義와 使命.....理事長 金宗煥(10)

——法廷速記特輯——

- ◎ 法廷速記의 展望.....法院行政處長 全禹榮(12)
- ◎ 法廷速記의 實際問題서울地法刑事課 盧元鎬(14)
- ◎ 法廷速記의 必要性.....楊澈在(16)

論說

- ◇ 官費養成機關이 지닌 問題點.....韓奉永(20)
- ◇ 速記士法制定의 必要性.....金永善(22)

提言

- 速記界에 대한 나의 提言.....金震熙(24)
- 能率的이고 體系的인 協會運營을 爲하여.....崔鎮洙(19)
- 速記法의 새로운 方案을 摸索하여.....崔亨奎(28)

企業體에 있어서의 速記士의 貢獻.....金鉉基(29)

- ◎ 希望座談會.....(32)

◇ 속기와 한글타자기 공 명 우 (37)

速記素材論 姜 駿 遠 (38)

프 포

◎ 速記講習會를 마치고 李 東 根 (44)

◎ 速記講習會設問의 分析 李 康 賢 (46)

◎ APU 總會點播 Y 生 (48)

◎ 外國速記界現況 (日本篇) 梁 源 龍 (50)

◎ 日本速記士給料對比表 (51)

速記의 本質과 養成問題에 關한 小考 李 東 根 (52)

◇ 養成所探訪記 東邦速記學院篇 梁 源 龍 (31)

法式紹介

姜駿遠式 (56 上段)

高麗式 (56 下段)

東邦式 (62)

世宗式 (66 上段)

韓國式 (66 下段)

□ 速記學綱目 K 研 究 生 (70)

□ 陶然明의 田園詩 李 明 奎 (71)

◇ 發言速度變遷狀態 (15)

◇ 現職速記士分布 (49)

◇ 資料 = 速記關係冊子一覽 (74)

大韓速記協會定款 (75)

任 員 名 單 (76)

會 務 日 誌 (77)

贊助人士一覽(廣告) (26)

編 輯 後 記 (78)

祝 創 刊

韓國銀行	總裁 金世鍊	韓國產業銀行	總裁 李廷煥	韓國商業銀行	銀行長 徐軫銖	外換銀行	銀行長 洪升熹	國民銀行	銀行長 鄭遇昌
中小企業銀行	銀行長 徐丙纘	朝興銀行	銀行長 文鍾健	第一銀行	銀行長 李寶衡	韓一銀行	銀行長 全信鎔	서울銀行	銀行長 林錫春

速記文化



李源万



우리말 速記도 가시덤불을 헤쳐나오면서 58年の年輪을 거듬한 설이다. 1909年「하와이」로 亡命한 朴如日氏가 僑胞週聞誌「신한민보」에 一案을 發表, 矯矢를 놓았고 解放 前에 7案, 後에 7案이 發表되어 現在의 實用法式이 8, 그 人員이 200餘, 本會員 資格을 얻은數 130名에 이르니 우리 文化의 조그마한 隊伍로서 자못 큰 矜持를 느끼지 않을수 없으니 速記는 그 民族의 文字이며 이것은 그 民族과 같이 永劫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는 우리나라 初會 國會記錄을 가냘픈 손으로나마 正確히 全言을 남겨 놓고 地方議會를 記錄——後生國家일망정 速記文化度로는 셋째를 손꼽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社會 一般의 速記에 關한 모든 認識 不足을 깨우치고 速記學者를 돕고 實務者를 길러 여봐란 듯이 質과 量의 面에서 次元을 높여야 할것을 느끼면서 民主社會에는 言論이 盛하여야 하고 言論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는 先進諸國과 같이 事務가 있는 곳에는 速記가 있도록 하여 速記分野에서 “後進”이란 소리를 제임으로 안 하도록 必死의 誠과 熱을 기우릴 것을 다짐 하면서 微薄한 第1誌를 發刊함에 江湖諸賢의 아낌 없는 叱正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本協會會長·國會議員)



創刊



大韓速記協會의 創立과 “速記文化”의 創刊을 祝賀함

文敎部長官 文 鴻 柱

祖國의 近代化 課業을 完遂하기 위하여 “일하는 해”의 旗幟를 높이 든 오늘의 이 時點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무엇보다도 모든 分野의 指導者들이 그 透徹한 理念을 國民에게 正確히 傳達함으로써 國民의 自發的인 協力을 얻는 일이라 할 것 입니다.

즉 指導者는 國民의 念願을 올바르게 理解하여야 하며 한편 自己의 信念과 計劃을 友情있는 說得을 通하여 認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指導者의 뜻과 國民의 念願이 서로 圓滿하게 傳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歪曲되게 解釋됨으로써 當初의 意圖를 서로 誤解하는 境遇가 생기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記憶力이 한번 들어만 가지고는 이를 永久히 또한 正確히 머릿속에서 그대로 지닐수 없는 흠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正確한 그리고 迅速한 記錄技術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大韓速記協會가 새로운 意態과 새로운 陣容으로 發足하고 이어서 보다 正確하고 迅速한 記錄文化의 發展을 위하여 “速記文化”의 創刊을 이룩하게 됨에 즈음하여 晩時之感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보다 次元이 높은 陣容과 內容임을 볼때에 實로 慶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특히 모든 事物은 첫 印象이 좋아야 하거늘 오늘 “速記文化” 創刊號의 內容을 一瞥컨대 그 알차고 重厚한 品位가 넘쳐흐르는 것으로 보이기에 斯界의 門外漢인 本人으로서도 자못 호뭇한 感을 禁치 못하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나라 速記界의 各法式이 비록 그 記錄方式은 다름 망정 序頭에서 말씀드린 “忠實한 뜻의 傳達者”로서의 使命을 더욱 銘心하고 合心團結하여 所期의 目的을 훌륭하게 達成하기를 바라며 우리 社會의 記錄文化에 크나큰 貢獻과 보람찬 奉仕가 있기를 믿어 마지 않습니다.

會員여러분의 健勝과 協會 및 “速記文化”의 發展을 祝賀합니다.

祝 辭

文化發展의 新轉機를 確信



國會事務處 速記課長 李 弼 鎔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라고 한다. 個體보다 集團이 生을 營爲함에 있어 보다 便利하고 強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宿命的인 人類의 變化無常한 離合集散中에서도 나는 大韓速記協會創立을 契機로 우리나라 全體 速記人이 하나의 旗幟아래 굳게 團合하게 됨을 크게 기뻐하며 祝賀해 마지 않는다. 그 理由는 許多하겠지만 晩年에 滿朔童이의 出産을 맞은 家族들의 氣分 같은 것이 앞서기 때문이다.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速記協會는 한때 짧은 歷史나마 前歷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채 피어보지도 못한 汗송이의 꽃이 덧 없이 졌다고나 할런지 너무도 빨리 解散되고 이내 곧 再建 있어야 할 協會가 於焉 五個星霜을 지내도록 冬眠狀態에 있었으니 말이다.

民政이 移讓되고 國會를 舞臺로 湧기종기 速記人들이 다시 모여들어 陽地바른 봄 별을 즐겨 온지도 벌써 3年이 지난 舊臘, 우리는 또 한해를 無爲로 보낼세라 서둘러서 이제 다시 再建을 하였으니 이 기쁨 어찌 速記人들 뿐이며 이에 關與한 人士들이라고만 할 것인가! 온 겨레가 모두 함께 반겨주어야 할 慶事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 速記協會創立은 비록 速記文化의 開發뿐 아니라 우리 社會文化 全般에 寄與할 貢獻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祝賀의 義務를 加重시키고자 한다.

速記文化! 이는 言語文化에 그 뿌리를 두었고 速記文化發展의 즐거 위에는 반드시 全體 社會文化開發에 「일」과 「꽃」을 피우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社會學者가 現代를 3S時代라고 指摘한 事實을 引用할 必要도 없이 實로 機械文明이 極度로 發展한 現代는 「스피드의 時代」이다. 言語도 記錄도 大衆傳播의 「데스크」도 모두가 迅速化해 가고 있다.

이웃나라 日本만 해도 各級 議會·裁判所·言論機關·一般企業體等 社會各分野에서 速記는 너무도 緊要하게 널리 貢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아직도 이에 미치지 못함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期必코 이에 따르고 이보다 앞서야 할 큰 宿題가 바로 現時點에 處한 우리 速記人들의 거룩한 使命이며 義務가 아니겠는가? 무릇 千里길도 한걸음부터 始作된다고 한다면 우리 協會 發足은 크나큰 課題를 안겨주는 速記人들의 마음의 가다드름이며 힘의 誇示이며 使命의 完遂를 爲한 힘찬 進軍의 첫걸음이라고 볼때에 나는 이 協會의 誕生을 眞實로 祝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祝賀「무드」에만 사로잡히고 現實을 忘却하기에는 너무도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뒤라서 否認할 것인가 하나도 돌도「創立精神」으로 뒤돌아가고 돌이켜 생각하여 永世無窮한 發展의 遺産을 後世에 물려주기 爲하여 밀거름이 될 거룩한 犧牲精神이 있어주시길 懇望하면서 祝賀의 글로 가름한다.

速記協會 設立의 意義와 使命



理事長 金 宗 煥

人間社會에 있어서 協同精神의 崇高함을 再論할 것까지도 없이 우리 나라速記인들이 總網羅되어 協會를 構成하기에 이른 것은 所謂 non printed media를 printed media化하는 우리 速記界뿐 아니라 文化界全體를 爲하여 慶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間 速記界는 4·19와 더불어 兩院制實施 및 地方議會構成등으로 空前의 需要增加를 보아 速記界를 이루어 가야흐로 速記인들의 社會的活動이 눈부시게 展開되려 할 때 議會事務處의 解體로 前身協會가 瓦解되고 速記인들의 存在마저 稀微

할만큼 沈滯狀態에 있었던 것은 同人들에게 賣肉해야 큰 일이었다. 多幸히 民政移議를 前後하여 速記에 대한 認識이 새로워지고 需要가 漸增함에 따라 新進養成이 時急하게 됨으로서 速記인들의 團合된 힘이 切實히 要求되어 이에 協會結成을 보게 된것은 그것이 비록 速記同人들의 自發的인 出發이 못되고 速記界를 아끼고 理解하는 몇몇 外部人士의 產婆役에 依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過去 似而非視하던 同人들까지 參與한 文字 그대로 速記界總意에 依해서 五個月餘에 걸쳐 眞摯하게 論議된 끝에 이루어진 것인만큼 우리 同人들에게는 앞날의 飛躍을 爲한 礎의 마련이라고 보고 記錄文化의 誠實한 役軍으로서의 自負를 禁치 못하는 바이다. 이제 速記인들은 우리에게 負荷된 責任을 痛感하여 創立總會時 宣言한바와 같이 式閱意識을 排除하고 全體速記인의 權益擁護는 勿論, 나아가서는 假飾과 虛構에 가득찬 現實에서 社會淨化의 旗手로서의 矜持를 지니고 活躍할 時期에 이르렀다고 본다.

더욱 우리는 過去의 狹量을 脫皮하여 速記를 理解하고 우리를 積極 指導鞭撻할 社會名士를 協會의 領導者로 모시게 된것은 앞날의 成功을 한층 굳게 하는 것으로 믿어 疑心치 않는다.

다만 協會를 構成한 同人들의 使命이 結코 저지 않음을 想起할때 말만의 式閱意識排除나 協助가 아니라 참다운 協同精神에서 小兒病的인 利害關係를 超越하는 同時에 安易한 現實逃避에서 벗어나 各者 獻身的인 努力이 있으므로서만이 前身協會에 대한 同人들의 不信을 拂拭하고 새로이 發足한 協會에 대한 疑懼를 一掃하여 所期한바 目的을 成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協會로서 할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新進養成.

둘째 速記法式的 改良.

셋째 速記士의 待遇改善.

넷째 需要의 開拓.

다섯째 同人들의 福祉向上.

등이 于先 協會로서 當面한 課題라 하겠으며 新進養成을 爲하여는 急先務가 養成機關의 設置라고 보나, 보다 앞서 速記에 대한 啓蒙과 宣傳으로서 널리 一般에게 認識시켜 普及에 힘쓰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速記法式이 現在 協會에 加入된 것만도 八個法式이라 하지만 나날이 變하는 發言速度와 機械化하는 mass communication에 對備하여 速記術을 改良하여야 함은 勿論, 時代潮流에 酬應하여 速記機械化에 대한 研究가 兼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速記士의 處遇改善問題에 있어서는 우선 自體의 資質向上을 期하는 동시에 精神的으로나 肉體面으로 極甚한 勞動인 速記에 대한 當局의 認識을 充分히 갖도록 하고 先進諸國과 比較하여 應分の 待遇를 받도록 協會가 中心이 되어 強力히 建議하고 推進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爲하여 速記士가 社會的으로 正當한 位置를 確保할 수 있도록 速記士 또는 速記에 대한 法制化를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現在 速記의 需要는 國會를 中心으로 몇 個 分野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는 法廷速記를 비롯하여 政府各部處·國營企業體·新聞社·通信社등은 勿論, 著術速記라든지 各級學校에서의 記錄등에 常任速記士制를 採擇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速記의 一般化로서 速記開業時代를 맞이하도록 需要開拓에 힘써야 할 것이다.

速記人들에 대한 福祉向上 문제는 現在 各法

式的 創案者인 指導層을 비롯하여 年老한 同人들이 不遇한 環境에서 허덕이고 있는 實情인바 이 문제는 速記라는 特殊分野에서 奮來되는 職業病 등에 대한 補償策과 아울러 同人 全體에 대한 福祉問題가 協會로서 當面한 時急한 課題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協會가 正常的인 發展을 거듭하여 그 運營이 軌道에 오르고, 위에 例示한 문제들이 하나씩 解決되어 나갈 때 同人들이 그들 自身の 將來에 도움을 받게 되고 現職速記士들이 安心하고 그 職에 專念할 수 있는 기들이 마련되리라 믿고 確信하며 그때야 말로 本協會의 設立意義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大韓石炭公社 勤務)

(13 面에서 繼續)

셋째로 이 글의 主題와는 약간 거리가 멀지만은 마지막 한 方案으로 考慮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錄音機의 使用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 亦是 特殊한 境遇 外에 一律的으로는 할 수도 없으며 또 할 必要도 그리 느껴지지 아니한다.

5

이렇게 따지고 보면 裁判에 있어서의 各種調書 作成上 生소한 法廷의 모습을 그려서 記錄할 必要는 切感하는 바이지만은 "그러나 各方案을 羅列해 놓고 그 長短點을 檢討해 볼때에 現在로서는 이렇다할 妙案이 없으므로 于先은 現參與書記들에게 可能한 限 速記 技術을 習得하도록 勸獎하고 漸次的으로 速記士 制度를 採擇하여 그 人員數를 늘리 나가는 方向을 摸索할 수 밖에 없겠다.

本人 으로서는 여러모로 그 實現이 可能하고 보다 合理的인 案을 銳意 研究 檢討中임을 마지막으로 付言 해둔다.

[法廷速記篇] ①



法廷速記의 展望

法院行政處長 全 禹 榮



1

法廷 速記를 展望하려면 우선 法廷이란 무엇인가 부터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大抵 法廷이라고 稱하는 경우에 그곳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通俗的으로 말하는 法廷으로서 法院 廳舍內에 設置되어 있는 法廷이라고 命名되는 室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法律上으로 말하는 法廷으로서 法官이 民·刑事等 裁判事件을 審理 裁判하는 場所를 말한다. (列事事件外에는 法廷에서 타야한다는 明文없음) 이 場所는 普通은 法院內에 設置되어 있는 法廷이란 곳이나(法院組織法 第52條 I) 法院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경우는 그 外의 場所인 경우도 있다(同上 條文 II)

法廷에는 그 處理되는 事件의 內容에 따라 民事法廷(民事訴訟法 第124條)·刑事法廷(刑事訴訟法 第275條)·家事審判廷(家事審判法 第25條) 등으로 區分 할 수도 있고, 또 公開與否에 따라 非公開法廷 公開法廷으로(法院組織法 第53條) 或은 裁判官의 數에 따라서 合議法廷·單獨法廷으로 區分하는 수도 있다.

民事法廷에는 民事本案事件을 다루는 것(民訴法 第124條)과 行政訴訟의 本案事件을 다루는 것(行訴法 第14條·民訴法 124條)이 있으며 家事審判廷과 더불어 다같이 꼭 法廷에서 行하도록 規定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刑事法廷에는 刑事公判事件을 審理裁判하는 法廷(刑訴法 第275條)과 即決審判廷(即決 審判法 第7條)이 있어서 公開된 法廷에서 行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이와 같이 여러 種類의 法廷이 있지만은 그各 法廷에 共通된 點은 法院書記나 書記官(以下 書記라 略稱함)이 參與하여 調書를 作成한다는 點이다.

따라서 調書 作成의 한 準備 段階로서 法廷에서 速記를 할 必要가 없겠는가? 한번 研究해

볼 만한 問題이다.

이 問題를 研究하려면, 于先 現行制度面을 一 旦 훑어 보고 外國의 例는 어떠한가를 알아 본 후에 將次 우리가 指向해야 할 方向은 무엇인가를 論하여야 할 것 같다.

2

法院書記의 職務는 여러가지 있으나 그중에서도 審判 參與는 그의 生된 事務이며(法組法 第10條 V) 또 審判에 參與하여 作成하는 公判 調書나 家事審判調書 또는 辯論調書 등은 各種 裁判에 있어서 重大한 役割을 합은 公知의 事實 인바 現行法上의 書記의 調書에 關한 規定 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民事訴訟에 있어서는 準備節次(民訴法 第254條)·證人訊問(同法 第275條)·鑑定(同法 第336條)·檢證(同法 第356條)·和解(同法 第356條) 등에는 期日마다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民訴法 第141條)

刑事訴訟에 있어서는 被告人·被疑者·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翻譯人 등의 訊問調書(刑訴法 第48條)와 檢證·押收·搜索等調書(刑訴法 第49條)와 公判調書(刑訴法 第51條) 등이 있다.

家事審判에 있어서는 調停調書(家事審判規則 第11條)·審判調書(家審法 第9條·人訴法 第13條·民訴法 第141條) 등이 있다.

以上 列擧한 外에도 行政訴訟法·競賣法 等に 調書를 作成하여야 하는 境遇가 있다.

그러면 法廷等에서 以上의 各種 調書를 參與

書記가 作成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現況을 한번 살펴 보자. 參與書記들은 大概의 境遇 “法廷錄”이라고 하는 白紙로 된 用紙를 綴한 空冊을 가지고 法廷에 立會하며 裁判長의 訊問이나 被告 또는 被告人의 對答, 其他 訴訟 關係人의 陳述과 審理 進行 過程等을 前述한 法廷錄에 記入하게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文字는 한글 또는 漢字임은 共通되나, 많은 訴訟關係人이 말하는 것들을 일일이 하나도 빠지 않고 記錄할 수 없는 結果 重要한 骨子만을 간추려 記入하거나 또는 自己 나름의 獨特한 略字나 符號를 쓰거나 하는 것이 常例이다. 이렇게 해서 裁判廷의 訴訟 進行 狀況을 記錄해 가지고 나와서 이에 根據하여 法律條文이 要求하는 各種 調書를 作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神이 아닌 故로 한 開廷에 數十件式 事件을 가지고 들어 가면 長時間에 걸쳐 많은 事件의 많은 形形色色의 訴訟關係人들의 陳述이나 訴訟 進行 過程을 錄取記錄해야 하는 關係上 머리에 혼동을 일으킬 可能性도 있고, 또 미처 다 記錄을 못하는 境遇도 想定할 수 있으며 잘못 記錄했거나 時日이 經過된 後에 法廷錄을 보면은 境遇에 따라서는 自己가 썼으면 서도 무엇인지 잘 모르는 曖昧한 것도 있을 법한 일이다. 重要하고 複雜하고 큰 事件일 수록 그러하리라. 여기에 速記의 必要性을 매대로 느끼게 되며, 따라서 法에도 規定들을 두고 있는 바 예를 들면 民事訴訟法에 있어서 法院은 辯論의 全部나 一部를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하여 錄取할 수 있게 하고 이를 調書의 一部로 하는 規定(民訴法 第148條)을 둔것을 볼 수 있다. (刑事는 刑訴法 第56條의2 參照) 이것은 書記의 法廷錄 作成의 하나의 補完策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角度를 달리하여 速記의 必要性을 法으로서 規定했다고도 볼 수 있다.

3

事件이 날로 幅穢 해가고, 또 그 內容도 複雜 微妙해 짐에 따라 法廷錄取의 速記化 또는 機械化가 要求되는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이 要請을 어떤 方向으로 그 解決策을 摸索할 것인가에 關하여 生覺하는데 있어서 參考로 外國의 例를 한번 살펴 보는 것도 決코 無意味하지는 않을 것 같다. 故로 于先 隣邦 日本國 裁判所의 例를 들

어보자. 그 나라는 裁判所 書記官 外에 速記官이라는 職種이 있어 1966年度의 定員은 935名으로 되어 있으며, 그 昇進 經路는 速記官補→速記官→主任速記官→次席速記官→首席速記官으로 되어 있고, 昇任 方法은 各 其職級에 該當하는 昇任試驗에 依하며 裁判에 關한 速記 및 이에 關한 事務를 그 職務로 한다. 그런데 그들은 일찍이 1950년에 速記制度를 導入하여 同51년에 裁判所書記官研修所에서 그 養成을 管掌하게 되었으며 52년부터 本格的으로 養成에 着手하였다. 그 對象은 裁判所職員中 高卒者(또는 同等以上者)로서 入所試驗에 合格된 者에 對하여 2年間 研修를 行하는바 速記理論·法廷速記·速記技術 外에 法律科目과 一般教養科目까지 가르치고 있다. 1952年 以來 速記官의 確保를 爲해 每年 100名式 入所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速記의 機械化도 研究하여 相當한 成果를 보고 있다고 한다. 參考할 만한 事實이다.

4

그러나 우리의 現在 處해 있는 諸般 與件은 前述과 같은 外國의 制度를 當場 導入하여 實踐에 옮기기란 너무나도 여러 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이 境遇의 問題點은 後述 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現在 指向할 수 있는 方向을 몇 가지 提示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생각 나는 것은 現在의 參與書記 390餘名에 對하여 速記技術을 習得시키는 方案이다. 이 方案은 되기만 한다면 理想的이기는 하다 그러나 職務에 每日 每日 使달리고 있는 職員들 인지라 時間的 餘裕가 問題 되겠고, 또 教育施設이나 그 運營도 問題가 되겠으므로 各自의 自由意思에 맡기고 되도록 勸獎하는 道理밖에는 없겠다.

둘째로 參與書記와는 別途로 速記士를 採用하여 參與書記와 더불어 法廷에 參與케 하는 方法이다. 日本이 그런 方法을 擇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現在의 財政 形便으로 봐서는 거의 實現可能性이 희박한 案이다. 적어도 現 書記數의 半인 300餘名은 採用해야 되겠는데 그런 豫算도 없고 또 人的資源도 問題일 것이며, 그 收容 亦是 生覺할 問題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런 制度만을 마련해 놓고 1년에 몇 名式 漸次的으로 늘려 나가는 問題는 한번쯤 研究해 볼 必要가 있을성 싶다. (11面 下段에 계속)

[法廷速記篇] ②

法廷速記의 實際 問題

盧 元 鎬



速記란 말하는 것을 그대로 記錄하는 것이지만 그 用途에 따라서는 多少 달라지는 境遇도 있다. 即 議會에서 議員들의 發言을 말하는 그대로 錄取하여 歷史의 한페이지를 記錄하는 것과 座談會 席上에서 說性說來되는 것을 記錄할 때와는 나의 經驗에 비추어 보아 아무래도 差異가 없다고 斷言할 수 없다. 더구나 外國放送(日本語)을 直譯하여 記錄할때 勿論 文脈은 通하지만 語句 하나 하나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다.

본인은 5·16後 革命裁判所에서 書記라는 本職을 맡아 그當時 社會의 耳目을 끌었던 커다란 事件의 公判에 立會하여 記錄한 일이 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調書의 樣式도 모르고 그저 事實 그대로를 錄取하는데만 沒頭한 나머지 裁判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要素인 證據決定의 部分을 빠뜨린 못지못한 過誤를 犯한 일이 있었다.

其後 서울地方法院으로 轉補되어 立會書記로서 調書를 作成하게 되었는데 速記術을 利用하여 被告人·檢事·辯護人·相互間의 攻防戰을 事實 그대로 記錄하여 나중에 法官이 判斷할때에 記憶을 새롭게 하므로서 올바른 判決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自負하고 多少나마 自慰하는 바이다. 勿論 法院의 調書는 어디까지나 訴訟法에 依하여 格式에 맞추어 作成해야 하므로 가령 裁判長이 먼저 끌고 辯護士가 나중에 迅問했다고 하더라도 記錄에는 檢事·辯護人·裁判長의 順序로 묻은 것같이 記載하여야 하며 또한 證據調査에 있어서도 被告人이 어떠한 部分

을 簡單히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平凡한 말로 否認했다 하더라도 條文에 맞추어 “成立은 認定하나 內容은 否認하고 本件 證據로 함에 同意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形式화된 文句를 使用하게 되므로 처음 實務를 할때에 記錄은 完全히 하고도 調書를 作成하는데 隘路가 적지 않았다.

前日 大韓速記協會 發起人 總會때에도 速記士의 社會進出 問題에 있어서 法院의 登用問題가 論難되었거니와 法廷速記에 對하여 所見을 몇마디 적어보고자 한다.

前에 陸軍本部 法務監室에서 軍法會議에 立會하고 있었던 高麗式의 尹義漢氏와 서울式(姜駿遠式)의 李俊培氏 그리고 本人등 세사람이 처음 革敎에서 法院으로 왔다. 그 當時 法院 行政處長 署理이던 盧某氏(現在 辯護士 開業中)는 大學을 나왔더라도 考試에 合格되지 않았으면 書記補(五級)로 任命하는 道理밖에 없다면 前職은 全然 考慮하지 않고 “書記補로 發令을 받든가 아니면 그만두라”하던 말이 아직도 귀에 響정하거니와 法院에서는 秘書와 技能職을 除外하고 書記(4級)職은 特採전 競爭試驗이전 莫論하고 外部에서 採用하는 境遇가 全然 없고 書記補를 競爭試驗에 依해서 採用하고 書記補 甲(5級甲)中에서 昇進試驗을 보게하고 있다. 그러니 現在 速記士中에서 書記補試驗을 본다면 主로 法律을 專攻한 他競爭者들을 물리치고 合格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協會를 再建強化한 이점을 利用하여 協會의 幹部들과 또한 速記士를 아껴주고 速記를 理解하는 先輩들이 法院行政處 當局과 接觸하여 速記의 必要性을 再強調하고 認識케 하는 동시에 또한 民事訴訟法에 速記錄을 調書의 一部로 할 수 있다는 條項에 依하여 複雜하고 까다로운 裁判에만 速記士를 外部에서 초빙하여 記錄하고 있는 實例의 幅을 넓혀 于先 다른 技能

職과 마찬가지로 速記士를 採用토록 하고 各級 法院에 固定配置하여 記錄을 돕게하다가 各人의 能力에 따라서 昇進하는 길을 講究하여 주도록 하는것이 切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餘談이거니와 本人등이 처음 法院에 왔을 때를 回顧하면 會議가 있거나 까다로운 事件이 있을 때마다 呼出을 當하여도 생소한 곳이라 拒絕하기가 困難하고, 履歷書에 “速記”라는 두 글자를 써넣은 것이 원망스러웠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勿論 反文하는데 時開이 얼마나 所要되며 正常執務以外에 한두時間 速記를 하면 그 負擔이 어떠한지를 理解해주어 多幸한 일이지는 하였다. 그 當時만 하여도 訴訟關係人(檢事·被告人·辯護人)들이 記錄의 正確을 爲하여 公判廷에서의 錄音을 許可하여 줄것을 종종 裁判部에 申請하는 境遇는 있었으나 지금은 錄音을 하자는 예는 極히 드물고 웬만 하면 速記를 하자고 要請하는 것으로 보아서 法曹界 人士들이 速記를 理解하고 그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다.

그리고 裁判에 速記를 하려는 意圖가 첫째는 어디까지나 記錄의 正確을 期하자는데 있지만 그 裏面에는 利害가 相反되는 關係者들이 或時나 僞證을 하지 않을까 念慮되어 거짓말을 못하도록 못을 박자는 點에도 있다. 그 實例로 昨年 여름 서울高等法院 特別部에서 速記를 하여달라는 連絡을 받고서 急히 가본즉 某前職 高官이 政府를 相對로 하는 行政訴訟이 있었는데 審計院 職員 數名이 證人으로 出頭하였고 原告側에서도 前職 某高級官吏 2·3名을 帶同하고 傾聽하고 있었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 僞證의 罰을 받겠다고 宣誓할한 마당이었는데 線과 點으로 記錄을 하는 곳에서 證人들은 그 寡圍氣에 취말려 거짓말을 할때야 할수 없었을것이다. 그때의 空氣가 하도 심상치 않아 本人도 그 翌日로 錄取한 그 때로를 反文하여 가지고 갔을때 마침 原告側 代理人이 그자리에 있다가 證人들이 事實대로 證言해 주었으니 簡單히 要點만 적어주어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全身의 피가 끼꾸로 흐르는 것같은 感이었다. 이제까지 本人의 經驗談을 적었거니와 法院에서의 速記의 必要性을 말한다면 公判調書는 陳述의 要點을 記載한다고 되어 있으나 刑事事件에 있어서 被告人이 警察과 檢察에서의 陳述을 번복하고 事實 全體를 否認

하고 나오는데 速記術이 아니고 速筆로 記錄하여 證據로 내세운다는 것은 아무래도 無理라고 본다 또한 民事裁判에 있어서도 複雜하고 利害가 相反되는 證人의 證言 內容을 速記術으로써 完全히 記錄하여 判決의 資料로 삼는것이 能率的이며 正確을 期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地法刑事課勤務)

發言速度變遷狀態

사람의 發言速度는 年年이 달라지고 있다. 議政壇上에서의 國會議員의 發言速度를 年代別로 表示하면 아래와 같다.

一分間發言速度

年代別	最遲	最速
制憲	180	346
二代	180	381
三代	200	443
四代	188	468

最高速發言議員

制憲國會	尹致映	金風祥
二代國會	李鍾榮	朴定根
三代國會	金善太	朴永鍾
四代國會	金善太	韓熙錫

最低速發言議員

制憲國會	徐禹錫	徐容吉
二代國會	李鍾郁	梁又正
三代國會	鄭重燮	朴世經
四代國會	朴忠模	



[法廷速記篇] ③

法廷速記의 必要性



楊 激 在

—當事者訊問은 그 陳述을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陳述者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그 陳述에 關한 部分을 읽어주고
增減變更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本文에서)



筆者는 法廷速記에 대한 廣範圍한 問題를 가 지고 論하기 보다는 于先 筆者가 法廷速記를 말 아 經驗한 所感과 法廷速記가 왜 必要한가에 主 力點을 두고 記述하고자 한다.

本來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速記는 議會速記 로 通稱만큼 그普及이 單純化했고 치우쳐 왔다. 그러나 經濟社會의 發達과 더불어 우리는 速記가 議會(地方議會도 包含)에서만 이 아니라 經濟界· 金融界 即 利害關係가 얽힌 總會나 理事會 또는 言論界·學術團體에서의 討論 等 구태어 外國의 秘書速記까지 들추지 않더라도 速記의 用度는 多樣一路에 있고, 社會의 複雜性에 反比例하여 人間의 單位時間의 能力이 限定되는 바쁜 世上 이 되어 갈수록 速記를 더욱 必要로 한다는 事實을 認識하게 됨 됐다. 따라서 앞으로 公認速記 士法이라도 制定된다면 速記錄은 그 法的 公信 力이나 證明力에서 社會에 寄與하는바 至大할 것이다.

이러한 諸情況을 떠나서 筆者가 本稿에서 法 廷速記의 必要性에 關해 云謂하고자 함은 實로 議會速記가 歷史(議會史)의 記錄이며 나아가서 는 國事의 事實記錄임에 比하여 法廷速記라는 公判의 正確한 事實記錄인 反面에 個人의 權利 擁護의 證據記錄으로서 그 比重이 莫重하기 때

문인 것이다.



그러면 公判速記 即 法廷速記란 무엇인가? 法廷速記는 그字句대로 法廷에서 當事者·鑑 定人 또는 證人訊問時에 그 陳述을 速記術에 의 하여 記錄함을 뜻한다.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現行民事訴訟法 第 343條「當事者訊問은 그陳述을 調書에 記載하여 야한다」同法 第303條 口述의 原則「證人은 書 類에 의하여 陳述하지 못 한다…」에 의하여 民 事訴訟에서 當事者와 證人의 陳述을, 現行 刑事 訴訟法 第51條 第8項·第48條 第1項에 公判調 書의 記載要件으로서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 定人 通譯人 또는 翻譯人의 陳述」을 軍法會 議法 第 85條 第8項, 第82條 第2項 第1號 公 判調書의 記載要件으로서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翻譯人의 陳述」을 速記法에 依해 公判調書作成함을 原則的으로 法廷速記라 할 수 있고 以外 公判廷外에서의 檢證時 被告人 證人 等の 陳述을 記錄함도 이에 包含된다. 勿 論 辯論은 現行法上(民訴法143條, 刑訴法51條11 項 軍法會議法 第85條 第11項) 公判調書에 그 要 旨만 記載하게 되었음으로 速記가 不必要하다고 하겠으나 辯論部分을 除外한 其他의 調書作成에 있어서는 被告人·證人 等の 陳述中 그 「要旨」만 記載하라는 條文이 없으므로(事實上「……陳述의 要旨記載」란 憲法精神에도 違背되는 것이 아닌 지 疑問視됨) 이는 速記術을 習得하지 못한 法院 書記로서는 記錄不可能이며 따라서 當然히 速記 士에 의해 正確迅速히 記錄되어야 한다는 歸結이 나오는 것이다. 또 이것은 被告人·證人 等の 陳

述을 事實 記錄치 못하는 法院書記에게 그 陳述을 記錄하는 調書作成權限을 주어 (民訴法 第43條, 刑訴法 第51條 軍法會議法 第85條) 그 證據能力을 認定하니 (民訴法147條, 刑訴法第56條 軍法會議法 第89條) 法上 큰 瑕疵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外國人이 自己의 意思를 「체스추어」를 써서 說明하는 것을 言語不通인 內國人이 덧붙여 解釋을 하고 斷定을 내리는 경솔함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矛盾된 事實에 대한 副作用이 表面化하지 않는 緣由는 民訴法 第150條 「陳述은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書面” 또는 口述로 할 수 있다」 또는 刑訴法 第52條但書 軍法會議法 第86條 但書 「陳述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에 關한 部分을 읽어 주고 增減變更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그 陳述을 記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法律上 缺陷을 補完하고 있지만 事實은 書記들의 法的 知能이 偽裝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면 지나친 偏見일까?

事實 上述한 民訴法 第150條 規定대로 百步를 讓步해서 陳述의 全部를 書面으로 代한다고 치자, 그러나 前記한 刑訴法 第52條(但書, 軍法會議法 第86條 但書條項으로서 法院書記가 作成한 諸陳述調書가 完全하게 作成된 것이라고 認定하면 큰 誤算이다. 速記術에 依하지 않고 法院書記가 主觀的 記憶에 依하여 要略한 公判調書는 50%以下의 記錄 即 拔萃 또는 要約調書에 不遜한다 陳述者의 請求에 依하여 이를 읽어 준 陳述者가 最小限 나머지 50%의 事實을 完全 記憶해서 再陳述補完이란 人間의 記憶限界性으로 말미암아 不可能에 가까운 것이다.

換言하면 公判廷에서 一分間에 80字 乃至 100字 程度의 筆記能力밖에 없는 人間의 筆記 能力을 가지고 每分間 250字 乃至 350字 速度의 陳述을 어떻게 調書에 全部 記錄한다 말인가?

上述하다시피 法上諸陳述의 要旨記載條項이 없을 뿐만 아니라 現行法上으로도 公判調書에 諸陳述의 事實記載을 認定하면서도 그 事實記載者인 法院書記가 速記術의 不能으로 法院에서 實質上 拔萃 乃至 要略記載를 默認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인바 이는 嚴然한 違法事項이며 이로 말미암아 被告人에게 不利益을 가져오고 따라서 自由心證主義에 立脚한 判決에 있어 그 分別을 흐리는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는 것이다.

現行 民訴法 第148條 「辯論의 速記와 錄取」 第

1項 「法院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辯論의 全部나 一部를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使用하여 錄取할 수 있다. 第2項 「前項의 速記錄과 錄音帶는 調書의 一部로 한다 但……」

刑訴法 第56條의 2 (軍法會議法 第90條) 「公判調書의 錄取」 第1項 「被告人, 證人 또는 其他者의 訊問에 있어서 法院은(軍法會議는) 必要한 때에는 그 問答의 全部 또는 一部를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使用하여 이를 錄取할 수 있다.」 第2項 「被告人, 辯護人 또는 檢事(檢察官)는 各者의 費用負擔으로 前項의 筆記 또는 錄取를 할 수 있다.」라고 規定함은 法院書記의 被告人 其他者의 公判 陳述調書作成 能力의 不備를 補完하는 樣 꾸민 法的인 鋪裝인 것이나 그 運用에 있어서 所謂 社會의 耳目을 끄는 事件에 단 適用하려 함으로써 法律앞에 平等의 原則이라는 憲法精神에 어긋나는 事例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 이 條項은 速記士가 法院에서 그 必要性을 認定받는 唯一한 規定으로서 法院書記가 스스로 陳述調書의 作成能力缺如를 認定하는 規定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速記士에 대한 消極的 條項인 「…할 수 있다」라는 等은 하루 速히 修正되어야 하며 前述한 法廷速記士를 積極的으로 參與시켜 實質的인 證據能力이 있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理論的인 面에서 記述하였거니와 이제 筆者가 겪은 몇 가지를 紹介하고자 한다.

흔히 判事는 公判廷에서 參與한 書記에게 被告人이나 證人의 陳述이 重要하다고 認定되면 “지금 陳述 잘 記錄하시오”라고 이물레가 많다. 이는 刑訴法 第51條 第12項 「裁判長이 記錄를 命한 事項」에 의거 當然한 것 처럼 認定되나 事實 法廷書記의 筆記가 速記術에 依하지 않기 때문에 判事가 重要陳述을 귀금에 주는 一面도 있는 것이다. 書記가 任意로 被告人의 別害關係에 關聯된다고 判斷한 部分만 잡아서 記錄하는 事實은 書記의 裁量權이 너무나 넓음을 뜻하는 反面 뒤집어서 말하면 裁判長이 公判調書의 拔萃作成에 刑訴法 第53條에 依하여 署名捺印까지 하고서도 그 公判調書를 事實上 書類整理의 價値밖에 認定치 않는 證左이기도 하

다. 그러나 裁判長과 書記가 署名捺印한 公判調書가 上訴審에 있어서 判決文과 함께 그 比重이 莫重함에는 그 앞뒤의 경우에 있어서 法的으로 어떤 內面的 矛盾을 지니고 있음이 分明하다.

여하튼 現段階로서는 法院書記의 人間性과 道義心과 良心에 呼訴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을 지나서 단적으로 法院書記의 暗記에 依한 調書作成은 그들의 認識밖에서 (筆記로서 言語를 따라가지 못하니 陳述內容의 순간 記憶은 곧 잊게 됨으로써 陳述의 全部를 感得치 못함) 公判調書作成上 被告人等의 陳述의 事實記載義務를 遂行치 못하는 過誤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로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全盛을 누린 理由가 여러가지 켜지만 가장 큰 原因은 그 當時 發達된 [로마]法 때문이라고도 한다. 法治國家인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法的 缺陷은 하루 速히 是正하여 前述한 바와 같이 完全한 事實記載를 할 수 있는 實質的 證據能力을 가진 速記에 의한 公判調書를 作成하는 條項을 挿入으로써 書記의 拔萃調書作成權限을 防止함과 同時에 좀더 公明하고 正大한 判決에 一助가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 —

某 殺人事件에 있어서 死刑이 求刑된 重大한 公判이 있었다. 公判節次가 다 끝나고 宣告만이 남았을 때 裁判官은 筆者가 速記로 作成한 公判調書를 몇번을 몇일 就讀하더니 無期로 宣告한 例가 記憶난다. 「速記가 아니었던들…」 餘韻을 남기는 그 裁判官의 印象이 지워지지 않는 지금까지 아직도 筆者가 記錄한 어느 部分이 그에게 自信을 굳히 주었는지 疑問인 채다. 하여간 그 當時 速記에 의한 公判調書가 裁判官의 自由心證에 의한 判決에 一助가 되었다는 어떤 보람과 矜持가 지금껏 잊혀지지 않는다.

事實이지 모든 事件이 法廷에서 顛覆되는 수는 얼마든지 있다. 刑事訴訟은 勿論이지만 民事訴訟에 있어서도 雙方間에 利害關係가 얽힌 複雜한 事件은 참으로 그 分別이 어려울진대 正確한 速記에 의한 記錄이야말로 公正하고 的確한 判決에 도움을 주며 名實 共히 完全한 證據能力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裁判部가 事件의 經緯와 情狀 또는 過程들을 陳述한 法廷에서의 事實速 記錄을 다시 再讀할 수 있다는 事實은 바로 慎重에 慎重을 거듭하여 公正을 期함으로서

人權擁護로 通하는 길이 될 것이며 憲法 第8條에 의해 國家로서도 國民의 基本的人權을 最大限으로 保障할 義務를 履行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요즘엔 重要한 刑事事件이나 民事事件에 있어서는 被告人이나 當事者가 自費로 公判錄音을 하고 速記士에 依한 速記를 하는 例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로 보아도 이제 法廷書記作成의 公判調書中 法廷陳述調書는 事實上에 있어서 그 證據能力을 잃고 要式行爲로 밖에는 取扱되지 않는다고 認定할 수 밖에 없다. (書面主義를 採擇치 않는 限)

그때도 或者는 방대한 速記人員에 대한 牙算이라든가 事件의 輻輳에 反해 事務處理의 非迅速性을 憂慮할지도 모르지만 速記士에 의한 公判記錄이 아쉬운 채 速決로서 判決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事情으로 因하여 判事가 法廷書記 自由裁量으로 拔萃한 調書를 參考하여 心證을 굳히고 判決한 事件이 最惡의 경우 誤判이었다고 假定하자! 이 事件이 上訴審에서 破棄還送되거나 破棄自判을 할 때에는 救濟될 希望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上訴의 理由없다고 認定하여 一審에서 確定된다면 駭愕할 人權蹂躪이며 司法府의 權威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假定이었지만 筆者는 實地로 그러한 事例를 가끔 經驗한 바있는 것이다. (勿論 表面化 하지는 않았지만) 人權을 最大로 擁護하는 民主主義國家에서 그 위에 人權을 最大로 保障 乃至는 分別해주는 機關임을 皮膚로 直接 느끼는 法院에서 이러한 結果가 表面化된다면 法院에 대한 信賴는 姑捨하고 社會에 不安과 不正이 橫行할 것이다. 그러니 速記에 의한 事實記錄이 公正한 判決에 一助가 된다면 언제까지나 豫算에 拘礙되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法廷書記에게 速記術을 習得시키면 最善의 方法이 아니냐 할는지 모른다. 勿論 法院書記가 速記術을 習得하면 간단한 解決策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速書術의 習得에 있어서는 全力을 다하여 習得한다 하여도 1年 乃至 2年이 所要되며 法廷速記를 할 수 있는 事務에 從事하자면 누구나 習得하여 技術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素質과 努力에 左右됨으로써 少數의 人員만이 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書記의 勤務時間外의 速記術習得이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54面 下段으로 계속)

提 言



能率的이고 體系的인—



—協會運營을 위하여

崔 鎮 洙

速記協會가 發足한지도 벌써 5個月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協會運營狀況을 보전해 몇가지 檢討를 要하는 面이 있어 여기 愚見을 提示하여 參考케 하려한다.

現在 協會의運營은 理事會에서 行하고 있다. 即 協會定款第二十條에 依하린 會長團은 本協會를 代表 統轄하게되어있고 同第十四條十五條에 依하여 理事들은 理事會를 構成하여 基本運營方針 및 重要事項을 議決하는 동시에 各部署를 組織하여會務를 執行하게되어있다. 그런데 事實問題에 있어서는 理事全員이 會務執行에 參與하기는 어렵고 各部長들이 會務를 擔當하고있는 實情이다. 여기에서 問題되는 것이 部長級들의 會務執行 能率이다. 現在協會의 모든 任員은 自己 本來의 職業을 가진 사람들이 無報酬로 名譽職이나 다름없이 協會일을 맡아 處理하고 있다는 것이다. 勿論 協會의 財政面이 潤澤해지는 경우 專擔理事制를 採擇할수도 있겠으나 總會에서 選出되는 理事들이 自己本來의 職業을 拋棄하고 協會業務를 專擔하지 않는限 이 또한 解決이 어려운 點이 있다.



따라서 現在의 制度와 運營面에서 본래 會務擔當者들의 執務能力의 限界性이 문제가 된다. 即 各者의 專攻分野가 아닌 部門에 대한 業務遂行能力과 各者本然의 職業으로 因한 時間的인 制約이다. 이는 理事의 選出方法에서 오는 必然的인 結果라 하겠다.

協會의 運營은 前身協會와 같은 緩漫하고 無軌道한 方式으로 이끌어나간다면 現在의 制度와 陣容으로도 그런대로 꾸려나갈수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過去에 刊行된 "速記文化" 한가지만

보더라도 그當時의 運營이 얼마나 無計劃的이었다 하는것을 端的으로 表示하는 것이라고 본다.

◇ 事務局의 新設 ◇

이에 筆者는 그러한 前轍을 밟지않기 爲하여 두가지 提議를 하고자한다.

그 하나는 事務局의 設置다,

各部署에 事務職員을 두고 그들을 統轄한 事務局長制를 採擇하여야 한다는것이다. 事務職員은 各部長의 指示에 依하여 部長이 擔當한 業務의 事務的인 面을 執行 하게하고 事務局長은 그들을 統轄監督하는 동시에 協會運營의 實質的 責任者인 理事長을 輔弼케 한다면 能率있는 業務執行이 될 것이다.

勿論이에는 財政문제가 뒤따르는 것이지만 協會의 運營을 艱難目으로 볼때 協會를 法人體로 하는 것뿐 아니라 體系的이며 秩序있는 運營을 爲하여 이는 時急히 設置되어야 할것이며 當面한 臨時措置로서 事務員 1, 2名을 두어 解決해나 갈 수도 있을 것이다.

◇ 專門機構의 設置

專門機構란 長期間 또는 專門的인 研究를 必要로하는 問題들을 다루어 解決策을 提示하는機構로서 理事會의 諮問役制을 하게 하리는것이다

即 長期的인 運營方向을 비롯하여 速記學術의 改良, 速記의 機械化, 速記士法制定, 待遇改善方案, 會誌編纂方向, 基金運營方案등 繼續性이 있고 그分野에 特殊한 知識을 必要로하는 問題들을 다루기위해서는 人的構成面에 制限이 不可避한 理事會멤버 以外의 人士들을 起用參與케 하여 常時 研究할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

專門機構의 構成은 (30面下段으로 擬議)

官費養成機關

이 지닌 問題點



韓 奉 永

昨年 11月 우리 速記人들은 大同團結의 旗幟 아래 速記人으로서의 自覺과 文化一翼의 擔當者라는 矜持를 되 찾고 二百餘의 會員을 擁져 速記界의 宿願이던 名實相符한 全體速記法式의 發案者와 實用者를 網羅한 協會를 發足하게 되었음은 多幸한 일이었다.

그러나 모처럼의 學界의인 모임인 우리 協會의 앞날에는 許多한 難題가 기로 놓여 있다.

흔히 速記人은 마음이 넓지 못하고 偏狹하다고 하는 말을 듣는데, 이는 어느 社會, 어떤 組織에나 있는 必要惡일지도 모르는 式悶意識과 排他主義에서 온 產物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가 圓合된 이 時點에서 速記界의 舊惡이랄 수 있는 이런 問題를 기지고 是非하려는 것은 아니라 第1回定期總會를 目前에 둔 이때 우리가 前非를 反省하고 來日의 올바른 姿勢를 가 다듬는 다는 點에서 그 意義가 있다고 본다.

速記界의 痼疾인 式悶意識이 表面化하기는 特別히 需要의 門이 좁은 速記界에서 後進들의 社會進出에 均等한 機會를 주지 않고 特定法式에게 優先權이나 有利한 條件을 賦與하는데서 비롯되

다고 본다.

이로 말미암아 後進登用의 길이 막히거나 不利한 立場에 있던 法式은 커다란 打擊을 받았고 그 結果는 速記學界나 實用界發展을 크게 阻害하여 沈滯相을 가져오게한 重要 原因이기도 하였다.

이 問題에서 우리가 注目할 點은 官費養成機關이 速記界에 미치는 影響이다.

官費養成機關의 問題는 協會創立의 契機를 마련하였던 去年6月 10日 國會에서의 速記界重鎮들과 國會幹部들의 懇談會에서 이미 論議된바 있다 (國會報第57號 108面~109面參照)

同席上에서 李東根氏는 『過去의 國會速記學校가 速記界의 發展도 가져왔지만 어느 한個의 法式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로 因해서 速記界의 沈滯性을 기저온 原因도 이에 있다』고 말했으며

金星漢氏는 『過去에 國會에서 速記士를 登用하는 過程에 있어서 私設學院의 卒業生은 優秀한 者도 試驗을 볼 資格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從前의 國會速記學校는 어느 法式의 獨走만을 助長하여 速記界의 發展을 阻害하고 끝내는 國會速記士 定員 51名中 (1958年 12月現在) 官費養成法式出身이 45名으로서 거의 90%의 國會速記士를 1個法式에서 獨占하는 結果를 가져 오게도 하였다.

速記士의 登龍門인 國會速記陣을 어느 法式이 獨占하였을 경우 私費運營이라는 어려운 條件下에서 自己犧牲을 무릅쓰고 後進을 養成하고 있는 餘他法式은 國會에 登用되지 못하는에서 自然히 一般의으로 그 法式의 實用性 與否의 問題까지 疑心을 갖게 하며 아무리 優秀한 法式이라도 社會的으로 認定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要因이 된다.

이는 現在速記人口의 比率로 보아서 거의 國會速記士가 全速記人口의 過半數이고 院々의 速記人도 대부분 國會를 거처나왔다는 點에서 國會速記陣이 韓國速記界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後進養成이 제대로 되지 않는 現實情下에서 그 需要를 充足하기 위해 官費養成機關이 時急히 設置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지만 萬一 前轍을 밟을 그런 官費養成機關이 設置된다면 또 다시 速記界는 收拾할 수 없을 程度의 混亂에 빠지고 말것은 自明한 일이다.

筆者는 오히려 現下 韓國의 速記需要狀況으로 볼때는 아직도 就業을 못하고 있는 速記習得者들의 就業을 위해서도 官費養成의 時期는 尙早한 줄 알고 있으나 萬一 官費養成所가 設置된다면 그 運營方向의 設定에 있어 慎重한 配慮가 있어야 하겠고 速記協會의 存立乃至는 韓國速記界의 將來에 커다란 影響을 미칠 問題이니 만큼 充分한 相互協議가 行해져야 할 줄 믿는다.

官費養成校는 모든것이 好條件下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甚한 競爭(私設學院에서는 생각조차 못하지만)끝에 索養이 豊富한 優秀한 젊은 이들이 報酬를 받고 있는 講師陣 밑에서 規則的인 教育을 받기 때문에 그 法式에서 自然히 優秀速記人이 나온다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며 萬一 그런 好條件下에서 他法式을 習得시켰을 경우에는 그 以上の 成果를 견줄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問題로 해서 速記界가 한때는 院內 院外로 갈라선 쓰라린 經驗을 겪은때도 있었으나 4·19以後 多幸히 速記士採用에 있어 公開競爭試驗이 實施되고 한때 似而非待遇를 받던 速記法式에서도 國會速記陣으로 登用됨에 따라 速記界에 새로운 協調「무드」가 造成되었음은 기쁜 일인데 우리 速記界가 分裂의 汚點을 맞은 時期가 바로 問題의 官費養成機關이 全盛했던 때요 反面 모처럼의 團結이 이룩된 時期가 이 官費養成機關이 門을 닫고 있는 때라는 點을 볼때에도 이것이 偶然만이 아닌 것을 速記界의 사람은 알고 있을 줄 안다.

그러면 萬一 官費養成機關이 設立된다면 어떤 方向으로 運營되는 것이 가장 理想的인가 하는 데 대해서 筆者의 見解가 多少의 도움이 된다면 一考 있기를 바란다.

첫째 法式採擇問題이다.

勿論 日本과 같이 國會의 速記法이 發案되어 이를 敎授한다면 別다른 異論이 없을 것이나 現下 우리 實情으로는 어느 程度의 研究期間이 있어야 할 것이니 이는 論外로 한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어떤 特定法式을 單一採擇하는 것은 前者의 愚를 또다시 犯하는 것이므로 一大警戒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數個法成을 採擇할 경우에 輪番敎授나 同時 數個班 敎授問題는 豫算等과 關聯되는 것이니 實情에 알맞도록 調整하면 되는 것이지만 採擇法式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하는 것이 難題일

것이다.

그러나 日本速記協會에서도 많은 加入法式中에서 「協會推薦速記方式」이라는 것을 每年審議決定하여 發表하고 있다는 것을 볼때 國會當務者와 協會가 共同委員會를 構成하여 優秀法式으로서 敎授陣이 構成될 수 있는 法式을 選定할 수 있을 줄 안다.

둘째 運營方式의 問題이다.

筆者는 國會機構內에 獨立된 機構로 設置했으면 한다.

또한 從前에는 國會速記士들이 敎授 또는 助教를 兼하고 있었으나 敎養科目은 또 모르되 速記科目에 있어서는 어디 까지나 專任敎授制를 實施하여 敎授에 專念케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은 速記法式의 研究와 離退速記士들의 救濟의 한 方便이 될 수도 있는 줄 안다.

더구나 現下 協會의 與件으로 보아 可能하다면 協會와 直接的인 紐帶를 갖고 速記學校의 事務運營은 協會事務局(將次構成할 것으로 보고)에 委任시켜 效率的인 運營方式을 擇해 봄직하다.

어쨌든 언젠가 있을 이 養成所問題에 대해서는 複雜한 問題가 許多히 있으나 協會의 運營과 關聯하여 어떤 妙策이 發見되어 速記發展에 眞正한 寄與가 되는 方式을 꾸준히 研究하여 그 實效를 견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이 論旨로 어떤 當務者에게 壓力感을 주거나 行政的인 面을 干涉하려는 意圖는 秋毫도 없는 것이고 相互 速記 問題에 關心을 갖고 그 發展을 위해 努力하는 位置에서 이 問題가 지닌 問題點을 考察해 보았을 뿐이다.

특히 速記同人들은 相互 利害關係를 超越하여 韓國速記界의 앞날을 걱정하는 뜻에서 共鳴이 있기 바란다.

〈本協會資格審查委員長〉



速記士法 制定의 必要性

金 永 善



1. 速記士法이 왜 必要한가

速記가 必要한 곳은 대개 그 記錄保全의 價値가 큰 곳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速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文字化시키는 唯一한 手段이기 때문에 점차 社會가 複雜해질수록 速記를 必要로 하는 部門이 擴大되리라 고 본다. 우리의 現實을 보면 가장 速記士가 많은 곳이 國會다. 이는 代表的인 會議機關이오 國民의 政治的 代表機關이기 때문에 모든 會議過程의 記錄이 없이는 議事進行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할 것이다. 해서 國會는 本會議나 分科委員會를 莫論하고 全部 速記하고 있으며 이는 國會法 第百八條二項에서「會議錄에는 速記法에 依하여 모든 議事を 記載해야 한다」고 明示하고 있으며 其他 重要的 會議制機關에서는 다 速記錄을 作成하고 있다. 또한 國家機關이 아닌 言論界 大企業等에 점점 速記를 必要로 하는 分野가 擴大되고 있으며 常時 速記士를 雇用할 수 없어 請託 速記를 시키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速記가 必要하다 해서 그저 速記를 한다는 한가지 事實만으로서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能力 있는 速記士가 精誠들여 速記를 해서 正確한 會議錄 또는 速記錄을 作成하지 않으면 오히려 逆效果가 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不幸하게도 누가 제대로 速記를 해서 負荷된 任務를 完遂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容易하게 識別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첫째 速記를 必要로 하는 곳에서 安心하고 速記를 시킬 수 있고 둘째 速記能力 있는 자가 一定한 水準에 到達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입는 被害를 除去하므로써 速記가 말은

바 社會的 任務를 제대로 遂行시켜야 한다고 본다.

萬若에 國會의 各種會議나 昨年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APU總會 또는 UN總會 등에서 速記가 없어서 그 會議進行過程을 文書化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恒常 異議提起로 인한 紛爭이 불씨를 안고 있으며 혹 지난 會議過程에 대한 異議가提起되면 그 수습에는 相當한 時間을 消費해야 할 것이며 會議制機關은 그 機關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하기란 利害가 對立되지 않는 곳에서만 可能하다는 新學說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錄音을 해 두면 되지 않느냐고 反問할는지도 모르나 예컨대 數十台의 錄音機로 錄音을 해 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각己 必要한 때에 必要한 部分의 錄音「테이프」를 찾아서 그 部分을 듣는다는 것은 錄音「테이프」의 操作을 해 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을 바꾸어 能力이 不足한 速記士가 잘못 會議錄을 作成해서 그 會議錄 自體를 疑心하게 되면 그 會議錄이 얼마나 불렸느냐를 묻기 전에 그 正確度를 疑心하는 會議錄이라면 그 會議錄으로서의 구실을 다 못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速記는 練習이 아닌바에야 能力 있는 速記士가 精誠껏 써서 언제나 높은 公信力을 維持해야만 그 速記로서의 社會的 機能을 完遂하는 길이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速記에 從事하는 速記士의 資格을 法으로 定하여 速記士의 制度를 法律로 確立해야 한다.

2. 參考가 될 어떤 法이 있는가

法律에 依하여 그 資格이 定해지는 辯護士 可

法書士 辯護士 技術士 등의 경우를 보면 그 行爲를 一般의 禁止해 놓고 法的要件이 갖추어지는 경우에 限해서 그 禁止를 解除하며 一定한 規制에 違反하면 그 禁止의 解除를 取消하며 當該團體에의 加入義務等 負擔을 課하고 있다. 예를 들어 說明하면 辯護士法 第一條에서 「本法은 辯護士制度를 確立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明記되어 있는바 이는 權利義務로 모든 社會組織이 運用되는 法治社會에서 法的 正當한 執行에 寄與하는 또 法을 지키는 法院의 法執行過程에 있어서의 技術的 專門家로서 必要 不可缺한 存在이기는 하지만 그 制度가 紊亂해지면 그 重要度에 比例해서 큰 社會의 癥的存在가 될수 있기때문에 그 本然의 任務만 充實히 遂行시키자는 것 일 것이다. 이와 꼭 같은 規定을 司法書士法 第一條 辯護士法 第一條에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速記士도 그 制度를 確立하여 社會的인 速記活動을 圓滑히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確立한다는 制度의 骨子는 무엇인가 첫째로 資格을 確定해야 한다. 辯護士法은 그 3條와 4條에서 司法書士法은 4條와 5條에서 技術士法은 4條에서 辯護士法은 3條와 4條에서 計理士法은 2條와 3條에서 各各 그 資格要件을 列擧하고 있는데 이 資格規定으로서 從事者의 範圍가 確定되는 것이다.

둘째 그 資格이 確定해서 具體的으로 어느 個人이 그 資格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目的에 充實하도록 活動시키지 않으면 許可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 計理士法 第2條의 2項에는 「計理士는 誠實히 그 職務를 遂行하며 그 品位를 維持하여야 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速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資格이 있는 速記士라해도 誠實히 會議錄 등의 作成에 臨하지 않으면 그 結果가 밀기 어려운 會議錄을 作成할 可能性이 있다. 이것을 法的으로 罰則을 規定하고 또는 거기에 부수되는 權利와 義務를 賦課하여 모든 未備를 막되 信義誠實의 道를 열어나서 社會의 公信用이 增加되어야 速記의 價値와 더불어 社會的 發展에의 寄與度가 增大할 것이다.

세째로 위의 誠實을 確保하기 爲해서는 民主社會에서 一般權力關係의 統制로는 너무나 放漫하고 不法行爲의 理論에서 보는바와 같이 自由活動의 限界가 너무 넓어서 行動 規制에 여러가지 難點을 隨伴하기 때문에 特別權力關係에 準하는 規制力을 가진 團體의 組織이 必要한 것이다. 例컨대 司法書士法에서도 5章과 6章에서

辯護士法은 9條에서 計理士法은 11條에서 各各 그 團體를 가질것을 規定하고있으며 辯護士法 第12條를 보면 辯護士는 辯護士會에 加入하여야 한다고 強制加入할것을 規定하고 있으며 自團體內의 制限된 自治權에 類似한 規律權을 가지고 있다. 現在 速記部門에서는 大韓速記協會가 結成되어 定款에 依한 運營을 하고있으나 法的保障이 없어 그機能을 發揮함에 있어 實効가 적음을 우리는 볼수있다.

위의 세가지 條件이 그 制度 確立에 根幹을 이루며 速記士法의 制定에있어서도 위에 列擧된 諸規定이 좋은 資料가 될수있을것이다.

3. 法 制度의 實際面은 어떠한가

앞으로 速記士法이 制定되어야 한다고 再三 強調하는 바거니와 制定된다면 그 方向은 어떠한 하겠는가, 우리나라의 過去 實情을 追記해보면 5·16 前에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卒業生은 技術員 資格認定令에 依해서 甲種技術員 3級의 資格證을 文教部長官 名義로 發付 받아왔다. 이것이 唯一한 法令에 依하여 認定됐던 資格이요 其他 몇가지 「케이스」가 있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論議할 對象이 못되는 것이다. 그러나 過去의 것으로 參考價値가 큰것은 없다. 하기때문에 세로 法을 만들어야 하는데 實際 速記士法을 制定함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우리의 社會的與件이 果然 速記士法의 立法을 必要로 하느냐 하는點이다. 모든 速記活動이 例컨대 國會速記士로서 公務員法의 規制를 받는 경우에 限한다면 구태어 새로운 法을 만들 필요가 없을것이다. 다시 말하면 速記士法이 切實히 要請되는곳은 어떤 特別權力關係 또는 이에 準하는 服務關係가 아닌 速記活動分野다. 이 分野가 얼마나 많으나 어떤 制度의 確立이 社會的으로 要請된다 할때에 비로소 速記士法이 制定될 것이다. 筆者는 지금 時機的으로 보아 그러한 社會的 要請이 成熟돼 잔다고 본다.

둘째 法의 內容問題다. 速記의 公信用을 倍加하여 社會的需要에 應할수 있도록 速記士制度를 確立하는것이 目的인데 制度確立의 要件은 앞에서 조금 적어보았지만 그 骨子를 敷衍해보면 高度의 技術的熟練度를 保持하되 民主的으로 그 資格을 定하고 速記士法에 依한 資格者以外의 者가 速記한것은 그 公信用을 認定치 않으며 또한 資格者라 할지라도 誠實義務等에 어긋날때에는 곧 그 資格을 박탈케 하며 現協會를 法律에 依한 速記士會로 改編해서 全國 速記의 最高 最終의 管理者가 되도록 하여야 비로소 制度的 確立을 期할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本協會監事)



速記界에 대한 나의 提言

—速記界의 過去와 現實—

金 震 熙

速記界의 現實을 論하기에 앞서 速記界가 形成된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 成長過程을 通하여 速記의 就業面과 養成事業面을 살펴보고 저 한다.

우리말 速記術이 처음으로 그 實用을 보게 된 것은 1946년 12월 12일 12시에 있었던 立法議院의 開院式과 때를 같이하여 始發하였다고 생각한다. 開院式의 날짜와 時間이 12字로 거듭된 것은 이 12字가 모든 일이 圓滿히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는에서 採擇되었다고 들었기에 速記의 出發도 이미 그 幸運이 約束된 것으로 믿는다.

當時 立議의 開院을 앞두고 立議事務處當局은 會議의 記錄을 速記法에 依한 方法으로 할것을 決定하고 速記士募集을 서둘렀으나 猝제로 速記士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말 速記士가 없는 것으로 斷定하고 무척 서운하게 여겼고 日帝의 우리말 抹殺政策을 원망하면서도 幸여나 하는 期待를 걸고 繼續 速記士의 搜索戰을 벌였다. 千辛萬苦에 速記士를 찾아냈을 때에는 快哉의 萬歲를 부르게 되었다. 倭政下에서 速記術을 研究하고 우리말 速記를 創案하여 解放과 더불어 實用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은 速記創案者들의 勞苦와 業績에 敬意와 讚揚을 드리는 바이다. 當時 立議에 採用된 速記士는 5, 6명에 不遇하였으며 그待遇는 그當時의 事務總長의 月俸을 凌駕하였음은 그稀少價値에서 오는 理由만은 아니고 앞에 들은 그들의 勞苦와 業績에 緣由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하여 時代의 脚光을 받고 速記士라는 職種이 처음으로 職業隊列에 登場하게 되었고



이 新奇하고 魅力있고 展望이 밝은 速記職業이 出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僅少한 速記人員으로서의 立議의 發言量을 記錄하기에는 너무도 힘에 겨운 일이었고 後進速記士養成이 時急한 課題로 되게 되었다.

軍政下의 立議의 發足이 將次 構成된 大韓民國國會에 對備한 一種의 準備段階로서 그 意義를 찾는다면 速記도 또한 立議時代를 通하여 自立을 爲한 整地段階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速記의 實用에 있어서 立議時代는 速記學術의 整備를 爲한 實驗場으로서의 役割과 速記士 自身이 取할 方向과 姿勢를 確立하기 爲한 貴重한 經驗을 얻는데 좋은 機會였다고 하겠다. 이렇게 하여 初創期의 速記界가 形成되었고 各派式間에는 熾烈한 競爭이 峯르기 시작하였다.

各派式間에는 自派勢力의 擴張을 爲하여 後進의 養成에 心血을 傾注하였고 그結果 制憲國會에 이르러서는 近 20名의 速記士가 增員되게 되었으며 姜駿遠式(서울式) 張基泰式(逸波式)이 伯仲之勢로 進出이 顯著하였고 그外 金天漢式等이 速記士로서 議會의 記錄을 擔當하게 되었다. 制憲國會를 거치는 동안 記速界도 漸漸堅實하게 成長하였고 第2代國會에 들어서서는 그 展望이 더욱 有望하게 될 무렵 6·25 動亂이 勃發되었다.

6·25動亂이 모든 部面에 莫大한 損失을 招來케 하였지만 速記에 있어서는 實로 致命的인 打擊이어서 功은 塔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結果가 되었다.

當時 國會의 서울 死守決議는 單 한名의 速記

士도 南下치 못한 結果가 되었고 避難國會의 歷史的인 貴重한 記錄은 다시 再生할 수 없게 되는 등 千秋의 恨을 남기게 되었다. 殘留速記士는 被殺, 拉北, 他職에의 轉業 등으로 殆半의 速記士를 잃게 되었고 9.28收復後 國會의 記錄을 맡을 수 있는 速記士의 數는 10指로 屈할 程度였다. 이렇게 甚한 傷處를 받은 速記界는 1.4後退로 舞臺를 避難港都인 釜山으로 옮기게 되었다.

避難國會에서는 激增하는 速記需要量을 備하기 爲하여는 自體에서 速記士養成機關을 가져야 할것을 決定하고 國會事務處內에 大韓速記高等學校의 設置를 보게 되었다. 速記學校設置에 따라져 어떠한 派式을 採擇하느냐 하는 것이 各派式間에 있어서는 큰 關心이 아닐 수 없었으며 各派式間에는 自派의 擁立을 爲한 深刻한 角逐戰도 있었으나 逸派式으로 採擇이 되게 되었다.

여기서 逸派式이 採擇된 經緯를 잠깐 살펴보면 當時 國會速記士의 大部分이 逸派式 速記士여서 速記教師陣의 確保가 容易했고 教師陣의 兼務로 그 經費의 節約이 그 主된 理由였고 速記學術自體도 無難하다는 結論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다.

國會速記學校의 開設에 크게 刺戟을 받은 서울式 金天漢式派에서 6.25事變 以後 中斷되었던 速記士養成事業이 모든 어려움은 克服하고 다시 繼續되게 되었다.

避難地 釜山에서의 苦難을 뚫은 速記人들의 努力은 後日의 速記界의 發展에 큰 貢獻을 이루었고 서울遷都後 速記界는 大韓速記協會의 結成을 이룰 程度로 크게 發展하였다.

서울 遷都後 速記의 職域도 漸次 擴張되어 이제까지의 國會의 獨占物처럼 되었던 速記가 金融機關·新聞·通信·雜誌社·地方議會 등으로 進出이 顯著하였고 特히 參議院의 構成에 이르러서는 速記界는 豊盛한 活氣를 띠게 되고 速記士의 株價도 날로 날로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제까지의 中央集中의 速記가 地方議會의 構成으로 速記文化는 地方에의 普及을 보게 되었으니 可히 全國的規模로 發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發展一路에 있던 速記界는 5.16革命으로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

革命後 非常措置法의 公布로 國會는 解散되게 되어 民·參兩院의 百名에 가까운 速記士가 一時에 戰場에서 逐出되었고 國會의 速記學校도 閉

鎖되어 速記士 養成이 中斷케

提 言

되었으니 可히 速記界로서는 受難時代라 하겠다.

民政復歸後 國會의 成立과 때를 같이하여 速記界는 다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國會의 速記士도 近70名을 算하게 되고 가까운 將來에 百名線에까지 肉迫하게 되었으니 欣快한 일이다.

國會의 解散中에는 速記士의 移動도 많았으며 各派의 勢力分布에는 많은 異動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나 速記界의 不況속에서 오직 東邦式이 孤軍奮鬪格으로 速記士養成事業을 꾸준히 繼續한 功績은 높이 評價받아야 할 것이다.

以上은 立議以來 歷代國會를 中心으로 速記士의 就業狀況과 養成事業面을 概觀하였지만 速記界는 恒常 時局과 政局의 變遷에 따라 가장 銳敏하게 影響을 받게 되는 것은 速記가 議會에의 依存度가 높은데서 오는 必然的인 結果라 하겠다

이제 現速記界의 課題로 생각되는 몇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들어 或 參考가 되었으면 多幸으로 생각한다.

1. 速記職場의 擴張

速記界의 隆盛을 期하려면 무엇보다도 要緊한 것이 速記職場의 開拓이 急先務라고 생각한다. 現就業職場의 增員에도 많은 用力이 必要하겠지만 새로운 職域開發에 더욱 힘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于先 卑近한 例로 過去부터 말이 論議되어 오던 法院系統에서 記錄을 爲한 速記法의 採擇을 爲한 運動의 展開이다. 가장 基本이 되는 人權과 財產問題를 다루는 法院의 記錄은 些少한 點에 이르기까지 그 正確·迅速性이 要求된다고 하겠다. 이 名分에서는 法院의 速記法 採擇을 爲한 豫算編成의 促進에 있어서는 一般國民의 理解와 支持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가지 各部長官級以上の 秘書室에는 速記能力者인 秘書 乃至 秘書官을 두도록 그 實現을 爲한 努力이다. 이 速記가 長官을 補佐하는데 特히 公報性을 띠는 일에는 좋은 利器가 될 수 있음은 贊言을 不要로하는 바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出版文化事業面에 있어서는 速記의 協力도 速記進出의 分野라고 생각한다. 實現可能性 있는 部面에 強力한 作用을 加하여야 할줄안다.

2. 速記士 養成事業

速記職場의 擴張과는 表裏不可分の 關係에 있는 것이 速記士의 養成事業이다.

速記士의 養成에 있어서 國會의 速記士養成機關의 復活은 速記界의 共通된 要望事項이라고 생각한다. 最少限 1年以上의 修習이 必要한 速記教育을 爲하여는 國會의 協力을 얻어야 成果를 얻을 줄 믿는다.

3. 速記士의 待遇問題

過去 立議에 있어서의 速記士의 優待는 速記職業이 가지는 特殊性에서 오는 當然한 惠澤이라고 생각한다.

速記士로서 勤務할 수 있는 年齡의 制約은 3 齣에 이르르면 벌써 速記士로서는 轉業을 爲한 苦惱이 빠르게 마련이다. 人生의 「골든·아워」를 速記에 쏟는 代價에 對한 保障을 速記界는

講究할 段階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4. 速記學術의 研究

速記術에 門外漢인 사람이 舉論할 立場은 아니지만 우리말의 發言速度가 顯著하게 높아진 事實은 速記學術도 이에 따를 수 있는 水準까지 높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職場의 開拓에 隨伴하여 機械速記의 應用이 要請된다고 생각한다. 이 方面은 아직 未開拓狀態이니 만큼 早速한 日時에 使用可能의 段階로 이끌어야 할 줄 안다.

速記界의 集約體라고 할 수 있는 速記協會가 再建되어 이제 意慾으로 모든 事業이 着着 進行되어 별지 않은 將來에 좋은 成果가 이루어질 것을 期待하며 速記協會와 速記文化의 隆盛한 發展을 祈願한다. (前民院事務處速記課長)

≈ 贊助者名單 ≈

〈편집자주〉 客年 12月 10日 本協會가 創立總會를 가진 이때 本協會의 創立과 發展을 祝賀하여 李孝祥國會議長과 金鍾泌共和黨議長을 비롯 會하여 贊助金을 보내 주신 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協贊에 있어서 與野院內總務團의 積極的인 協助에 感謝를 드립니다.

- 李孝祥國會議長 2萬원
- 金鍾泌共和黨議長 5萬원
- 共和黨院內總務團 1萬원
- 李東寧議員 //
- 金振晚 //
- 具泰會議員 金一封(以下同)
- 姜尙郁議員 徐相濤議員 高興門議員
- 崔爽林議員 白南禧議員 宋漢喆議員
- 文梧鳳議員 金周仁議員 鄭泰成議員
- 曹昌大議員 芮春浩議員 朴奎祥議員
- 金任植議員 鄭憲祚議員 金遇敬議員

- 閔沐南議員 丁來正議員 李白日議員
- 申允昌議員 崔致煥議員 李敬海議員
- 鄭鎮東議員 申灌雨議員 成德用議員
- 李相敦議員 丁明燮議員 梁克弼議員
- 楊淳植議員 吳相植議員 李炳玉議員
- 李在晚議員 李万燮議員 金好七議員
- 印泰植議員 柳光鉉議員 林次周議員
- 閔丙祺議員 金鍾煥議員 崔瑞日議員
- 李品來議員 陳基培議員 李鍾根議員
- 金柄淳議員 辛泳柱議員 裴吉道議員
- 崔守龍議員 李于憲議員 申玉徹議員
- 金重鉉議員 金殷夏議員 吳學頌議員
- 劉守鉉議員 洪英基議員 金在淳議員
- 吉典植議員 劉聖權議員 孫昌奎議員
- 方一弘議員 金鍾茂議員 任炳洙議員
- 李鍾諄議員 李 活議員 柳承源議員

祝 創 刊

京鄉新聞社	社長 朴 瓚 鉉	大韓日報社	社長 金 連 俊	東亞日報社	社長 高 在 旭	産業經濟新聞社	社長 백 승 진	서울신문사	社長 張 太 和
新亞日報社	社長 張 基 鳳	朝鮮日報社	社長 方 又 榮	中央日報社	社長 元 鍾 勳	韓國日報社	社長 金 鍾 圭	現代經濟日報社	社長 石 正 善

速記法の

새로운 方案을 模索하여

崔 亨 奎

速記를 研究한 사람이나 實務者라면 누구나 더 빨리 錄記할수는 없을까 하고 苦惱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現存하는 國文速記의 各個法式의 長點만을 取함으로써 速度能力을 倍加할 수 있는 方法을 찾아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各法式의 區區함에서 오는 阻礙과 副作用으로서 우선 速記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어느 法式을 擇할 것인지 右往左往하게 되고 既成速記人들도 雖然 中式闊을 가리어 自派自我的 優越感으로 因하여 速記界는 發展을 크게 阻害當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나 우리 速記界도 이제 發展할 時期에 到達하였고 科學文明과 함께 速記의 機械化가 時急하다는 것을 切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速記界는 大韓速記協會의 旗幟아래 大同團結하고 合心協力하여 速記의 近代化를 이룩하기 위하여 努力 할 때라고 確信합니다.

尊敬하는 各速記創案者 그리고 速記人 여러분! 各法式을 總網羅하여 優劣과 長短點을 가리어 取捨選擇하는 速記의 革命을 斷行하자는 것입니다. 卒見이나마 本人의 研究結果를 바탕으로 簡單한 例를 든다면

(1) 逸波式의 基本文字는 初歩者의 理解도가 빠르고 容易하여 그 優秀性이 認定되며,

(2) 東邦式의 動詞 8變形은 言語의 記術을 超音速的으로 이끄는 一章一筆의 優秀한 點이라 하겠고 (3) 高麗式의 深圓 省略法은 暗記가 必要없이 實用性있는 長點이며 (4) 세종식의 母

音廻轉은 多樣的 活用으로 多音一筆의 記法이고

(5) 其他法式에도 省略法과 略字等に 있어 科學的인 優秀性으로 記憶과 活用に 便利한 點을 많이 內包하고 있다 하겠읍니다.

以上 列舉 한 것은 氷山一角에 不遑한 것으로 綜合 研究한다면 가장 優秀한 速記法이 되고 後進을 爲해서 뿐만아니라 速記의 近代化를 이루는 途徑이 될것임을 強調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速記人은 大韓速記協會로 뭉쳐 小我를 버리고 大我의 廣場에서 速記學術의 統一로 速記의 近代化를 이룩하고 앞으로의 發展에 功獻해야 할것입니다. 事實 現存하는 多數의 法式을 하나로 만들지 않고 速記의 機械化를 꾀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며 어느 法式에 의한 機械化를 이룰 것인지 漠然한 感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各法式間의 融和統一優秀點만을 取擇한 學術的인 體系와 論문을 합쳐 最優秀法式으로 면모를 갖추다면 速記文化向上과 民主國家發展

에 크나큰 轉機가 될것입니다.

各法式의 優秀點의 取捨選擇등 法式改良은 大韓速記協會 定款上의 機構인 研究部에서 主管하여 實踐하는 길이 大義名分에 맞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本人은 速記의 機械化는 于先 速記의 近代化에서 速記의 近代化는 現存法式의 綜合改良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再三 強調하는 바입니다.

卒稿가 韓國 速記發展과 同志 여러분에게 多少나마 參考가 될 수 있다면 千萬多幸으로 생각하겠읍니다.

(世宗式 出身)





企業體에 있어서의 速記士의 貢獻



金 鉉 基

元來가 速記部門에는 門外漢인 筆者에게 「速記文化」라는 새로운 雜誌를 發刊하게 된 大韓速記協會의 編輯委員長으로부터 주어진 題目이 바로 頭腦한 바와 같은 것이니 果然 무엇을 보코 이렇듯 무겁고 分에 넘치는 請託을 하여온 것이니 먼저 두려움부터 앞서게 됩니다.

바로 最近까지 約 4年餘에 걸쳐 國營企業體에 奉職하였던 實務上의 經驗을 士台로 하여 美國과 歐洲 그리고 東南亞地域을 巡訪하면서 見聞하였던 바를 參酌하면서 敢히 速記士 여러분들의 畧은 功獻을 文筆로써 紹介할 수 있는 好機라 여겨지므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拙文을 드리고자 합니다.

◇ 速記士의 職責

企業體에 局限하여 본다면 速記士에게 賦課된 責任은 大體로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會議에 參與하여 速記錄과 一定形式의 會議錄을 作成하는 任務가 가장 業務量도 많고 責任도 重大한 職責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企業體의 代表者를 비롯한 經營陣을 補佐하여 그들의 口述을 받아 演說文이나 公式書翰 같은 文書를 作成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職責에 包括되는 分野가 廣汎하고 그 形式도 매우 複雜多様な 點으로 보아 決코 容易한 일이 아닙니다.

企業體 內部의 모든 職責이 成文으로써 表示될 때에는 不過 몇줄로 足한 것이 恒例이기는 하되 直接 그 職責을 擔當한 實務者들의 立場이

나 經驗으로 본 때에는 第三者로서 想像조차 할 수 없을 만치 困難하고 複雜한 部面이 가득 한 實情입니다.

더욱이 理事會, 株主總會 等の 最高經營方針을 다루는 會議를 비롯하여 直接的으로 經營陣의 各 任員을 相對로 하여 그 口述에 따라 文書의 作成을 마쳐야 하는 職責에 이르기 까지 形形色色의 作業過程을 細密하게 따져 본다면 第三者로서는 速記士 여러분에게 深甚한 同情과 感謝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것입니다.

◇ 速記士의 素養

研修過程에서 體得해야 할 速記의 技術은 「速記士」라는 名稱을 얻기에 基本이 될 不可缺의 要素입니다. 그러나 그 職責이 滿足스럽게 遂行되려면 이러한 基本技術만으로써 決코 充分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論及된 職責을 誠心誠意로써 遂行하려는 速記士라면 大略 다음과 같은 素養을 스스로 갖추어 나가기에 힘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 企業體의 基本規程
2. 企業體의 運營方針
3. 企業體의 歷史 및 經驗實績
4. 任員陣의 指針 및 性格
5. 重要한 關係機關 및 去來處
6. 文書規程 및 帳票樣式
7. 業務分掌 및 專決規程
8. 書翰 및 式辭의 基本樣式
9. 國文 및 英文의 打字

10. 錄音器 및 "타이폰"의 操作

이 밖에도 「速記士」로서의 最善을 다 하려면 스스로의 基本素養을 더욱 깊고 넓게 갖추기 위하여 努力해야 할 分野가 너무나 廣汎한데 尙할 餘裕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速記士가 다루어야 할 일은 그大部分이 反復될 수 없는 單一回의 發言이 對象素材가 되는 것이며 그가 作成해야 할 文書는 거의 時間을 다루는 急한 時限이 附與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하루도 遲을리 할 수 없으며 또 他職員과 協議할 餘裕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외로운 것이 速記士이며 또 언제나 要求되는 것이 速記士입니다. 그 企業體가 크면 클수록 會議의 種類나 回數가 많아지는 것이며 또 任員의 數와 活動分野가 많아지는 것이므로 速記士의 任務도 그만큼 增大되는 것이 常例입니다.

機械文明이 發達되면서 事務系에서 愛用되는 機器도 많은 變遷을 겪어 왔는데 特히 打字機의 普及과 錄音器나 "타이폰"의 活用으로 말미암아 一面으로는 速記士와 打字手의 限界가 매우 混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文明의 利器를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껏 驅使할 수 있는 技術을 習得하는 것이 「現代의 速記士」로서의 素養을 더욱 빛나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企業體 內部에서도 特히 高位層을 每日과 같이 接觸해야 할 位置에 處하여 있으므로 速記士로서는 그 言語나 態度, 服裝이 端正해야 할 것은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企業體의 秘密도 가장 많이 알게 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口이 무거워야 할 것입니다. 他人이 모르고 있는 일을 먼저 알게 되면 그 事實을 誇示함으로써 스스로의 位置를 높여 보려는 것이 人之常情이므로 말로는 쉬우나 實際에 있어 " 입을 무겁게 " 갖는다는 일은 決코 쉬운 일이 아님을 銘心해야 할 것입니다.

◆ 速記士의 貢獻

위에서 略述한 바에 따라 速記士의 職責과 素養이 企業體에 있어서 決코 적은 것이 아니라 그 比重이 매우 무거운데 反하여 「速記士」라는 職位가 特殊分野에 屬하는 것이므로 他職員들의 認識은 매우 局限되어 있는 것이 常例입니다.

企業體를 運營하기에 根幹이 될 여러 가지 主

要會議의 成果를 널리 周知시키며 나아가서는 任員陣의 對內, 對外의 重要活動을 書翰, 演說文 등으로 成文化하여 補佐하는 일은 곧 人體에 있어서 中樞神經에 該當된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重大한 機能을 額面 그대로 認定하여 주는 사람은 企業體 內部에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自己P·R"을 일삼게 된다면 크게는 機密에 屬하는 事項을 漏洩하기에 이룰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人格에 對하여 重大한 蔑視를 富하게 될 憂慮도 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二律背反의인 位置로 말미암아 速記士는 企業體 內部에서도 언제나 외로우면서도 언제나 呼出에 應해야 할 高달은 勤務를 勤奮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企業體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널리 人間社會의 全般에 걸쳐서 "말없는 至誠"이 後日에 얼마나 그 當事者 또는 周邊의 사람들로 부터 깊은 感謝를 받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많은 實例를 目擊하여 왔습니다. 速記士 여러분이야말로 "그들의 補助者"로서 남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重大한 使命을 每日反復하고 있으며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말 없는 至誠"의 主人公 여러분들이 大韓速記協會를 創設하고 또 機關誌로서 "速記文化"를 創刊하게 될 것을 衷心으로 祝賀하면서 아울러 創刊號의 貴重한 紙面을 拙文으로써 채우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앞날의 幸福과 報答이 있기를 冀願하면서 健甯있기를 再三 비는 바입니다.

(筆者海外開發公社常務理事)

19페이지 계속

學術研究委員會등 몇 개의 委員會로 하고 各委員會에 專門委員 또는 研究委員을 適切히 配置하고 또한 必要한 斯界의 專門知識을 參與(顧問 또는 諮問委員으로)케 하여 前記한 問題들을 研究하여 그 結果 方案을 提示하게 하고 그를 理事會에서 論議決定하여 各部에서 執行토록한다면 그야말로 協會運營에 있어 올바르고 體系있는 運營이 되리라고 믿는다

앞에 提起한 문제들이 다 財政問題가 隨伴되는 것이나 이것이 協會의 長期的인 生命과 直結되는 문제로 보기에 早速한 採擷을 提議하는 바이다. (大韓速記協會理事)



東邦速記學院受講光景
↑

☆ 르 포 ☆

養成機關探訪記

—東邦速記學院篇—

梁 源 龍 記

花信이 가까워오는 月初의 어느 마스한午後 記者는 現在 우리나라의 唯一한 速記士養成기관인 東邦速記學院을 찾아 鍾路二街 長安인당 三層을 노크했다.

들어서자마자 童顏美男인 L先生的 우렁찬 목소리가 第一敎室에서 흘러나왔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 4月 22日에 있는 國會速記士採用시험에 應試한 學生들에 對한 猛訓練을 시키고있는 참이었다. 아가씨 세명에 더덕머리 열명이 불뚱이 튀는 연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훑쳐보고 있는데 언제나 庶民的이고 구수하기만한 同法式創案者이며 院長인 李東根先生이 記者의 어깨를 툭툭치며 닦아준다. 「이번 採用시험에 半數는 우리가 차지해야겠는데……」하고 끝말에 힘주어 말했다.

事務室正面에 걸린 「忍耐」「研修」「誠實」이란 院訓을 담은 額字를 가르키며 어려운 學院經營속에서도 오직 단 한사람의 學生이라도 이 門에 들어온 이상 落伍者가 안되도록 피땀한 至誠 하나로 버티어 가고 있다」고 우선 學院經營의 陸路부터 푸념하신다. 듣고 보니 學院敎室賃賃料나 廣告費, 人件費 등에서 月平均 10萬원의 經常費가 있어야 되는데 학생 1人當 한달 受講料 천원씩으로는 百名이라야 現狀維持 程度라는 結論이고 보니 참으로 學院經營에 赤信號가 아닐 수 없었다.

「다른 法式學院도 많이 생겨서 서로 볼을 이쁘게야 하겠다」고 말하는 李院長은 도하나 의모음을 털어놓기도 한다. 1948년에는 逸波法式學院이 鍾路三街에, 高麗式이 乙支路三街에, 中央式이 乙支路五街에, 그리고 朝鮮式이, 南大門에 姜毅遠式이 安岩洞에 各各學院을 내고 있을當時 解放式學院으로서 乙支路四街에 設置한 것이 이 學院의 始初라고 한다. 6·25前에는 定規코스도 一年修業이었는데 事變後에는 어떻게된 셈인지 모든 學院에 短期化 養成이 流行되어 學院經營上 하는수없이 이 學院도 4個月 短期코스 養成에 힘을 들이고 왔다 한다.

그동안 144期的 期別 輩出에 1414명의 卒業生을 내었으며 이 學院을 거쳐간 現業速記士는 國會, 中央情報部, 保健社會部, 農協, 國防部, 海軍本部 등 各界에서 猛活躍하고 있다고 한다.

現在 이 學院에는 研究班外에 約 80명의 學生이 修業하고 있으며 이들을 爲한 講師陣은 創案者를 비롯 李康賢씨, 그리고 補助講師 三名이 이에 當하고 있다.

또한 이 學院의 特色인 獎學制度를 實現하여 職業速記士로서 그 資質이 있는 者는 學院에서 獎學金을 주어 그 能力을 充分히 發揮케 하고 있으며 이번 國會速記士採用시험에도 이들이 단연 그 top을 끌어 올것이라고 學院當局은 믿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速記協會가 創立되어 모두가 다 參與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速記界의 前途는 밝기만 하다」는 李院長의 밝은 表情에 記者도 무언가 가벼운 즐거움을 意識하며 東邦速記學院의 보다 發達하기를 祝願하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L氏의 우렁찬 목소리를 뒤로 했다.

希望座談會



參 席 者

- 姜駿逸氏(協會副會長)
 - 李康賢氏(東邦速記學院講師)
 - 孫弘基氏(首都女師大速記講師)
 - 金百坤氏(靑瓦台근무)
 - 朴明九氏(英文速記講師)
 - 陸續奎氏(英文速記講師)
 - 李炯貴氏(東邦速記學院生)
 - 田鎭順(東邦速記學院生)
 - 李海珠(東邦速記學院生)
 - 李鎬順(首都女大國文科3年生)
 - 姜仁順(首都女大國文科3年生)
- 司會 및 記錄=梁源龍(本協會宣傳部長)

▲ 姜駿逸=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16革命으로 그동안 沈滯되었던 韓國速記界가 民政移讓과 더불어 各界의 速記需要處가 日益增大 되어감으로써 여기 저기 흩어졌던 舊友·新友가 한데 뭉쳐 지난 67年 12月 10日 新聞會館에서 大韓速記協會 再起創立을 본것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速記人口의 倍加라는 懸案문제와 더불어 나날이 高速化해 가는 發言趨勢에 따른 速記能力向上 등 우리 들의 周邊에 있는 갖가지들 한데 퍼부어 어느 한線의 앞찬 씨앗을 얻어보고저 오늘 速記 各界에서 奉獻하고 계신분 또 지금 굳은 覺悟로 速記界에 발을 넣으신 學生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來日에의 보다 힘찬 躍進을 爲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司會=그럼 먼저 速記를 배우시게 된 動機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노트」보고 間諜暗號로 誤認 投身動機 好奇心이 으뜸

▲ 田鎭順=프루탕 글씨에 이상한 魅力을 느꼈어요. 훌륭한 藝術作品이지 않아요! (웃음)

▲ 李鎬順=솔직히 말해서 저는 好奇心이예요.

▲ 金百坤=好奇心에서 出發했지만 速記를「마스타」하겠다는 目的意識을 定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잇발 빠진 速記가 되기 쉽습니다. (웃음)

▲ 李炯貴=제가 연습한 速記「노우트」를 가지고 茶房같은데 앉아 있으면 열사람들이 저를 아테 위를 훑어보고 슬슬 避하는것 같아요! 아마 情報部 같은데 무슨 暗號를 가지고 있는 것같이 보인 모양이예요! (일동웃음)

▲ 李海珠=저는 就職을 하겠다는 어떤 打算이 앞섰나 봐요! (웃음)

▲ 陸續奎=너무 하군요! 外國女子들은 다음에 남편을 內助한다는 건 眼目으로 배우는데 우선 就職하겠다니.....(웃음)

▲ 孫弘基=우리 나라 現實의 斷面이기도 하겠읍니다. 아직도 速記가 稀少價値가 있기 때문 에 職業選擇으로선 營리한 判斷이겠죠. (웃음)

▲ 李康賢=一般的으로 저의 學院養成과 정을

通해서 보니까 亦是 「好奇心」 에서의 動機가 상당한 比率을 차지 하고, 다음이 「職業을 갖기 爲해서」인데 勿論 처음엔 好奇心에서 出發했다더라도 다 무어 나가는 동안에 뚜렷한 어



姜駿逸氏



座談會光景

런 目的意識을 定한 사람은 기어이 「마스타」해 내드군요!

▲ 姜仁順=반드시 好奇心만도 아니에요. 저의 경우는 女性으로서 趣味 敎養으로 擇했어오. 이것이 後에 좋은 職業이 된다면 錦上添花지 만요!(웃음)

▲ 金百坤=이걸 完全히 「마스타」하면 一生을 두고 좋은 利器가 될뿐 아니라 願하시는 대로 錦上添花의 좋은 職業이 될줄 믿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靑瓦台에서 他職員보다 똑 같은 時間에 많은 業務를 處理할 수 있다는 것은 亦是 氣分 좋은 일입니다.

日時 1967年 3月 12日 下午2時
場所 國會建設委員會會議室

▲ 朴明九=저는 美「캘리포니아」大學에서 英文速記를 배웠는데 좀 우습지만 「박타」形式으로 해서 배웠어요! 講義室에서 어떤 美國學生이 담배를 피워가면서 敎授의 講義速記를 時間當



李 炯 賢 氏

6百弗을 받고 하고있어요! 그 래 제가 욕심이나서 좀 배우자 니간 안된다고 단연 거절을 해 요! 그래서 좋다! 내가 唐手 가 4段인데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금방

態度를 바꾸어 그림 우리 「박타」制로 서로 가르 쳐주시고 하자 해서 배우게 됐는데(웃음) 이사람 이 熱心히 가르쳐주면 나도 열심히 배려주고 좀 자증나게 가르쳐 주면 唐手時間에 호되게 쳐주 었지요!(웃음)

美선 適性檢査 받아야만..... 세 等級 있는 華麗한 職業

▲ 司會=英語速記를 배우는데 隘路는 없었습 니까?

▲ 朴明九=말도 마세요! 亦是 障礙은 語學 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言語를 記 할 수가 있어야죠! 다섯번을 포기했다가 다시 했습니 다 그러나 간신히 좀 쓰게 되었을 때 그때 한참 美國에서 流行이던 「골드핑거」의 主題曲 「레코드」 노래 가사를 速記해 주고 처음으로 10弗을 벌어 點心을 먹었을 때는 정말 호뭇했습니다. (웃음)

▲ 金百坤=美國의 速記需要處는 대개 어떤 곳입니까?

▲ 朴明九=우선 美國의 모 든 記者들은 거의 速記士입니 다. 아침, 저녁 40面씩 나가는 日刊신문이 「울·뉴스」制이기 때문에 速記를 못하면 取材를 못합니다. 그리고 各級秘書職,



李 康 賢 氏

이것은 速記가 心須條件입니다. 美國에서는 完全히 速記가 大衆化되어서 어느 機關에서나 當然히 速記士를 쓰고 있습니다.

▲ 司會=앞으로 우리 나라도 그런 速記士福社社會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군요!(웃음)

▲ 姜駿遠=내가 들기로는 美國에서는 速記를 배우는데도 IQ 適性檢査를 받아서 배우게 된 다던데.....

▲ 朴明九=그렇습니다. 美國에서는 高等學校를 나오면 누구나 適性檢査를 받아서 너는 大學을 가라 너는 技術을 배워서 社會에 進出하라 이래서 모든 學生이 그 檢査結果대로 自發的으로 實行하고 있어서 事實上 落伍者가 생기지 않습니다.

▲ 金百坤=우리 나라와 같이 學士大量生産主義에 비해 참으로 부러운 制度군요. 우리도 우선 速記를 배우는 사람에게라도 適性檢査를 해서 공헌히 速記 때문에 青春을 亡쳤다는 「아이러니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어요!(웃음)

金百坤

▲ 孫弘基=速記를 하나의 安全한 獨立된 職業으로서 養成만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이것을 一般化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重要하다고 봅니다. 例

金百坤氏 들 들면 韓國에서는 「타이프스트」가 하나의 獨立된 職業人이 되고 있지만 이미 一般化된 美國같은데서는 「타이프」를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 速記가 一般化되도록 모든 速記人이 獻身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 司會=美國에서는 速記士資格試驗을 어떻게 實施하고 있는지 紹介해 주실까요?

▲ 朴明九=肉聲速記 5分 錄音速記 5分 聾音속에서 5分 조용한데서 5分등 多方面으로 實技「테스트」를 해서 平均 1分 60單語以上 이면 A B C級中에서 該當되는 級數의 資格證을 洲速記協會에서 주고 있습니다.

▲ 姜駿遠=그리고 美國의 速記士名稱이 다르더군요. A級은「라이터」(Writer) B級은「스테노그라피어」(Stenographer) C級은「리포터」(Reporter) 이래서 亦是 손으로 쓰는 Writer를 알아주는 모양이에요.

需要處開拓운동 벌리자 分業速記制度 마련 하고

▲ 司會=다음에는 現在 速記를 가르치고 있는 분으로서 隘路나 어려운 點이 있다면 무엇을 들수 있겠습니까?

朴明九

▲ 孫弘基=처음에는 熱心히 하던 學生이 中間에서 <코비>를 넘기지 못하고 落伍되는 경우가 제일 마음이 아프더군요.

朴明九氏 ▲ 李康賢=蒙出해 놓고도 進出路가 開拓되지 않아 需要處가 없어서 그대로 實用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需要處開拓문제가 가장 時急합니다.

▲ 孫弘基=速記人을 많이 養成해 낸다는 것도 重要하지만 저는 보다 一般化에 重點을 두고 싶어요.

▲ 李康賢=이번에 새로 創立된 速記協會에 付託하고 싶은 것은 지금 法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을 되찾아야겠다는 것입니다. 5. 6年前만 해도 實業系中高等學校에서 一人一技教育으로 速記를 가르쳤는데 近來에는 法命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그 時間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찾아서 速記를 一般化할 수 있는 機會를 가져야 할 것이예요.

▲ 司會=그 學校에서 速記科目을 넣지 않는 理由는 뭐니까?

▲ 李康賢=大學入試 爲主傾向때문에 學校에서 마음대로 빼버린것 같아요.

▲ 金百坤=그럼 大學入試에 速記科目을 넣어야 하겠군요!

Son H.B.K

(웃음) 아까 速記의 一般化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現 우리 實情으로서는 職業速記養成과 一般化문제는 孫弘基氏 어느 時期까지는 分離되어야 하리라고 보아요. 우선은 職業速記人口를 늘여서 各機關에 파고들어 갈때 自然히 一般化가 되지 않겠어요.

▲ 李康賢=그래서 하여튼 速記需要處 開拓運動을 벌려야 합니다.

▲ 司會=速記需要處 開拓運動이라는 재미있

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만은 事實이 問題가 速記人口 增加문제와 結付해서 重要한 問題입니다. 隣國 日本을 보면 新聞社만 보더라도 讀賣新聞社에 速記課가 있어 가지고 50名의 速記記者가 活躍하는 實情인데 우리 나라의 신문사는 아직도 速記士를 쓸줄 모르는 未開拓狀態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日本의 各級 法院에서도 오래前부터 公判 및 檢察 訊問記錄을 速記로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캄캄한 未開拓地로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全速記人이 이 開拓運動에 힘을 모아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睦先生은 어떻습니까 英文速記를 가르치는데 隘路라고 하면 ……?

▲ 睦頌奎 = 요즘 海外開發公社를 통해서 越南가는 「공」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英文速記를 한달內에 「마스터」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졸라대는 女大生이나 또는 美國에 留學을 가게 됐는데 한 10日이나 15日동안에 어떻게 完成시켜줄 수 없겠습니까 하는 學生을 보면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웃음) 무슨 連스敎習態度로 아는 모양이에요! (웃음)

▲ 司會 = 英語速記를 完全히 「마스터」할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 朴明九 = 3. 4年은 實務해야 마음 놓입니다. 그리고 英語速記는 速記를 해온 사람과 이것을 反文打字하는 사람으로 完全히 分業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兩쪽을 다 익숙한다는 것은 暇時間이 걸립니다.

▲ 姜駿遠 = 請託速記에 있어서도 美國에서는 어떤 請託이 速記事務所로 오면 經濟면 經濟法律이면 法律, 農業이면 農業 이렇게 專門的으로 擔當하는 速記士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 該當速記士가 出張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苦痛없이 完全速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孫弘基 = 日本에서도 私設速記事務所를 開設하고 完全 分業速記를 하고 있더군요.

發言도 高度化 하는 時代
法式改良에 힘써야 할때

▲ 司會 = 다음에는 現在 速記를 배우시는 분의 隘路가 있다면 ……?

▲ 田鎮順 = 너무 막막해서 짜증이 납니다(웃음) 亦是 忍耐가 必要할것 같아요.

▲ 姜仁順 = 씨놓고도 反文이 잘 안되어서 동생한테 베키다가 그만 물어버린 일도 있어요! (웃음)

▲ 李海珠 = 저는 速記學院을 忍耐力養成所라고 부르고 싶은 정도예요! 忍耐力없인 해 낼것 같지 않아요.

▲ 孫弘基 = 速記를 통해서 忍耐力을 기르면 앞으로 婦德을 쌓는 좋은 契機도 되겠군요(웃음)

▲ 姜駿遠 = 事實이 速記를 가르치는 方法도 再考 改善해야 할것 같아요. 初學者나 既成人들도 反文 때문에 골치를 앓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먼저 읽는 것 부터 가르쳤으면 해요. 그러니까 國民學校學 1年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칠때 먼저 읽히고 다음에 쓰게하는 것 처럼 速記도 먼저 읽는 訓練을 시키고 다음에 쓰는 訓練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모두 研究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孫弘基 =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좀더 가르치기도 쉽고 배우기도 쉬운 體制가 앞으로 研究되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 金百坤 = 漸次 發言速度가 高速化해가는 趨勢인데 이에 對備한 技術向上問題가 매우 重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 司會 = 이번에 日本衆議院記錄部長 彌富啓之助氏로부터 우리 協會로 公翰이 왔는데 거기에 보면 日本에서도 發言이 高速化되어가는 傾向이어서 日本 速記協會技能檢定試驗에는 1級이 3千2百字

<睦 鎮 奎 氏>이지만 事實上衆議院이나 參議院에서 行하는 速記士採用試驗에는 3千5百字를 記錄할 수 있어야만이 合格이 된다는 것입니다.

▲ 孫弘基 = 지금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조금 <탄다>하면 3千4.5百字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도 國會速記士採用시험이 3千5百字로 올라가는 날이 不遠하리라고 展望합니다.

▲ 司會 = 技術向上에 總進軍해야 겠읍니다.

이정환

다음에 萬一先輩로서 이제 시작하는 後輩에게 주고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姜駿遠=어느 法式이던 古法式을 「마스타」 하는데는 반드시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忍耐로서 이겨 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速記를 해치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成功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 金百坤=저보고 지금 다시 速記를 배워라 한다면 이게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苦難과 忍耐의 連結이 없어요. 끝까지 버티는 者에게 冠이 씌워진다는 것은 어데서나 通用되는 原理일거예요.

忍耐力·克己 養成에 適効 文字쓰는 議員은 딱 질색

▲ 朴明九=하여튼 비쳐야 합니다. (웃음)

▲ 司會=速記士生活을 해오시는 동안에 무슨 「에피소드」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金百坤=그야 많죠! 하나 例를 든다면 4.19前 國會速記士로 있을 때 일인데 嚴群雙議員이 發言하는 도중에 어려운 漢文글귀를 넣은 發言을 한참 해요! 그때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몰라 會議가 끝난 後 直接 찾아가서 그 漢字글귀를 좀가르켜 주십시오 했더니 이 양반이 발라 화를 내면서 「그것도 몰라! 孟子를 보시오!」하고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웃음)그래서 할 수 없



이 國會圖書館에 가서 孟子를 꺼내 놓고 처음부터 읽어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그랬더니 거의 맨 끝의쪽에 가서 「是日齊喪고 汝及汝로 偕亡 이

田 頌 順 氏 라」하는 글귀가 있음더다. 卽 그뜻인즉 奏이라는 惡毒한 暴君이 있었는데 어떻게나 百姓을 못살게 굴든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없어져 버리자」는 이해됩니다.(웃음) 이때 原稿督促은 빗발같은데 孟子 冊한 卷을 읽어내느라고 혼 난 일이 있었을니다. (웃음)

▲ 朴明九=美國에서 어떤 請託英文速記를 하는데 어느 美國人이 「알겠소!」 「알겠소!」를 連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韓國말을 알고 그러냐 하고 얼굴을 쳐다보았

더니 「알겠소!」가 아니라 英語로 I get so 예요 (웃음)

▲ 陸鎮奎=이번에 APU會議에서 速記를 하는데 日本代表가 「에포」 「에포」하는 것이 말과 말 사이에 雜音이었던 것을 저는 모르고 그것도 英語인줄 알고 자꾸 「Actor」라고만 받아 쓰면서 이 사람은 왜 俳優이야기만 이렇게 하는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英語가 아니라 「에-포」예요! (웃음)

▲ 孫弘基=參議院에서 있던 일인데 어떤 議員이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速度로 發言을 하다가 「오만볼」 해놓고는 조금 쉬었다가 「선

<姜 仁 順 謙>언」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듯 말이 좀 이상한 것을 느끼면서도 5萬弗 宣言이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傲慢不遜」한 이란 말이에요! (웃음)진담 했습니다. (웃음)

▲ 金百坤=保安法관계 때문에 國會가 어수선때 野黨議員이 極限鬭爭을 하는데 當時 洪法務長官의 提案說明의 機會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委員<李 海 珠 氏>長이 하는 수 없이 「아까 配付해 드린 油印物로서 提案說明에 代합니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野黨議員이 速記士席에 달려와 速記原文을 무조건 빼앗아다가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웃음) 처음에는 덩정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 큰일 났더란 말이에요. (웃음) 그때 그 野黨議員의 周邊을 빙빙 돌다가 그분도 興奮했는지라 찢은 原文이 自己 호주머니에서 훌쩍지도 모르고 있는 틈을 타서 고양이 처럼 가만히 찾아다가 스카치테프로 붙여서 겨우 만들어낸 일도 있었어요. (웃음) 그後로는 會議場이 이상하다 하면 速記原文을 얼른 품속에 넣고 逃亡할 구멍부터 찾게 되었어요! (웃음)

▲ 司會=그 외에도 얼마든지 재미있었던 일이 많이 있을줄 믿습니다. 時間도 오려 되었고 이 座談會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長時間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下午 3時 20分散會)

알겠소!

이경사

연 구 ☆☆☆

속기와 속도한글 타자기

공 병 우



←공병우 박사 특별제공으로
회원들이 타자를 배우는 모습
(속도타자학원에서)

우리가 한글과 한문글자를 섞어서 쓰면 1분간에 평균 30자, 한글만을 쓸때에는 60자까지 쓸 수 있다.

우리가 손으로 글자를 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지금은 기계로 짧은 시간대에 많은 글자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문명의 이기인 타자기의 종류가 현존하는 것이 3가지가 있으나, 타자의 생명인 속도가 빠른 타자기는 본인이 만든 속도 한글타자기 뿐이다. 속도타자기는 다른 타자기보다 30%~40%, 때로는 50%나 빠르므로 사무처리를 빨리 할수 있는 기계다. 그러므로 속도 타자기만이 회의록이나 강연회의 내용을 그자리에서 받아 찍을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 사람이 평균 250자-300자의 말을 1분간에 하는데, 속도 타자기는 1분간에 250자-270자의 글을 찍을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하는말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손으로 쓰는 속기라는것이 있다. 속기는 특정한 문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강연, 또는 회의사항을 받아적어내는 기술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속기는 약 20여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실용되었다. 속기와 타자기의 속를 비교해 보면, 속기는 능숙한 사람이 1분간에 320자이고, 보통 200~250자의 속도로 속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능숙한 속기사가 10분간에 약 3,000자의 말을 속기하고, 이것을 일일이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번역해내는데 100분(10배)내외의 시간이 걸리고 이를 다시 타자기로 타자 하는데 15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도합 135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만일 속기사가 타자들

할 수 있다면 속기하는데 10분 바로 타자하는데 15분~20분 할하여 30분으로 끝낼수 있으므로, 100분이라는 시간이 절약된다. 우리의 문명의 이기인 타자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 기때문에 선진국에 뒤떨어지고 있다. 타자수는 속기를 배우고 속기사는 타자를 배워서 속기사로서 타자수, 타자수로서 속기사의 1인 2기의 기술을 가진다면 사무능력면에서 다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간단한 속기 기술은 타자수에게 필요한 상식이다. 간단한 타자 기술은 속기 또한 속기 사에게 필요한 상식이다. 생존경쟁이 심한 이 시대에 타자수가 속기의 기술을 겸함으로써 다른 타자수 보다도 우대를 받고, 속기사가 타자기술로서 보다 빠른 속기 기록을 내 놓게 되므로 더욱더 우대를 받게될 것은 물론이다.

우리말 속기도 이제는 손으로 할것이 아니라 외국과 같이 속기 타자기로 속기를 단행 하여야 만 보다 정확한 내용을 쉽게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공병우 타자연구회 회장, 의학박사)



[論 叢]

速記素材論

姜 駿 遠



우리 速記界에도 어엿한 “速記文化”誌가 創刊됨에 즈음하여 ①一般素材로서 世界의 記線速記가 겪어온 線·符號의 理論의 變遷과 實踐의 迹跡을 綜合分析하고 ②特定素材로서 우리말의 語音과 語法을 速記理論에 對應認識함이 有義함을 느끼고 實重한 紙面을 빌어 이에 要覽코자 한다.

線·符號의 便度

自然運筆線의 速記의 認識은 아래 세段階를 거쳐 이제 自然運筆로 定論이 되었으나 ①單線基調과 ②連線基調¹⁾ 나누어 論題가 남아 있는 形便이다.

① 正圓派는 源圖를 幾何正圓을 빌어 說明하였으며 1720年 Byrom을 거쳐 1837年 Pitman(모두英語) 1867年 Duploye(佛)에 이르러 完成—8分圓에서 8曲, 6直線을 얻었고

② 斜線派는 이에 不可用線이 있음에 反撥 人類가 오래 써온 알파벳 草書體에서 良勢線만을 골라 커의 漢字水字草書 같은 源圖를 얻고 斜下直曲10餘線에 上·平·下線을 추려 1802年 Roe(英)에서 1834年 Gabelsberger(獨)에서 大成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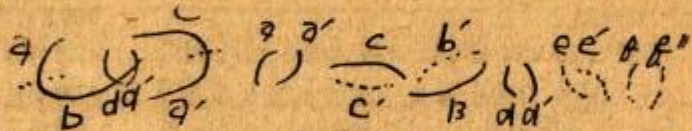
③ 橢圓派= 이렇게 正圓·斜線이 手筆 記線의 核을 갖고 있는 동안 △正圓派에서 實用에 거슬리는 45°의 斜線을 15°~20°로 變向하여 實用處理 △斜線派의 劑量을 大減하는 措置를 分析 再綜合하여 正·反·合의 新源圖를 水平橢와 右斜橢와 그直에서 얻은 것이 自然運筆(natural motion)이며 1886年에 malon(美)에서 試案—

正圓派 보라 160年 늦은 1888年 Gregg(美)에서 大成한 것이다.

記線力學 그러나 記線의 核은 原子衝撞처럼 放射形으로 爆發하는 것이 아니다. 이 手筆記線은 그 曳引力을 右向橫書에 둔다면 새로운 速記의 記線力學이 생길수 있다.

即 ①作用點 ② 힘의量 ③ 힘의 方向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는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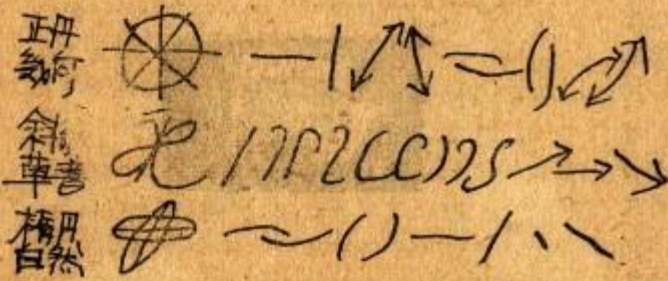
人間의 右手로 無意識으로 記線하더라도 比較



的 迅速·正確히 써지는 것은 a, b의 20°와 15°의 左卷, c, a'의 水平과 20°의 右卷이, 또 短線일 때만 便한 右下向 20°의 d, d'가 速記線核과 基礎 筆線이라 하겠고 하필 漢數字의 四의 草書에서 分線였다고 說明함은 漢字使用國에서는 有用한 方便이 되겠다. 다시 그 對稱線들 c', b'와 新設線 e, e', f, f'을 加하고 6向直線을 더하면 12曲과 6直線을 얻고 △漢四解線 A의 6曲線은 「運筆의 軌道」로서 最優秀線, 그 나머지는 便速의 差는 있지만 次善線으로 알아 들것이다. 線分中에 淡과 濃도 있을수 있으나 本體이 優勢하게 쓰이는 現今이므로 덜어 두기로 하고 사실 曲線은 그 始筆과 方向에 따라 用力線이 되어 스스로 굽어지는 것이다.

進向 記線의 가상 基調인 힘의 方向을 다루는데 있어 ①美 S. mc clure氏는 일찌기 進向便度는 水平群이 奇數 1, 3, 5順 垂直群이 偶數順 2, 4, 6이라고 規定하였는데 ②姜案은 百分率로 右向 60% 下向 40%로 하고 6向次順도 m式과 4, 5의 順이 바뀌는 것이다.

曲狀 曲狀認識은 ① m氏는 源圖橢圓을 橫切하여 上半을 正弧로 보고 便 그





下半 負弧를 次로 보는 見解에 對하여 ② 姜案은 橢圓源圖를 縱切, 左卷을 一律로 順弧로 보고 便線으로, 右卷逆弧를 次善으로 ③ 直6向은 兩案 모두 第3位로 보는데 直線은 形而上學으로는 兩點間의 最短距離이므로 最速할것 같으나 手筆의 運筆軌道에 어긋나고 初一字는 便速한것도 있으나 連次字로 連書가 될때에는 直狀維持가 어려운 線形인 것이다. 그러나 읽을 때는 人間의 視光自體가 直線임에 따라 直이優, 曲이劣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基準	連書勢	卷勢	向勢	主·副調
姜	連書	右向橫書	左卷	遠心	主調有
M	單線	주먹內外	右卷	求心	主調無

線勢基調 이제 透徹한 右向橫書의 速記法을 構成하기 위하여는 이미 進向 曲狀에서 집 작이 가졌으나 그線勢基調가 크게 2分되어 이제까지의 通論인 m案은 單一線을 주먹內나外에 集線하고 따라서 求心, 主調있는 右卷이 되는 反面姜案은 우리 말을 單音主辭가 極히 드므므로 2.3音節 連書를 基準으로 하고 右向橫書의 左卷勢, 向勢는 主調가 두텁한 遠心으로 하고 있는데 寡聞이나 界速記界의 充分한 討議 課題가 되어야 할 것이다.

小大實線 이제 各個線을 生動하는 單線으로 보고 그 便度를 認識하는 일이 남았고 이것이 또 가장 重要한 實際 研究 作業이다. 여기서는 小는便, 大는不便, 直은便, 曲은不便 따위 常識的이나 一律的으로 規定 할 수는 없는 고로 左表를 提示하였다. 軌道文字와 1級에서 보면 曲字에서는 小4에 大2, 여기 直에서 小1 大1 이 軌道線勢줄이고 여기에 1級文字를 曲直合算하여 總 36字中 小가16 大가10, 計26이 便字에 屬하고 2.3級에서는 小2 大8이 되니 A의 軌와1 級便26. B 2.3級 不便10, A에서만의 小18, 大10, 曲16 直10이되는 比率이 나타난다.

示差機能 語形全體의 示差機能도 말 할수 있으나 여기서는 單一線의 示差로서는 ① 進向이 모든 線分의 基礎要件으로 보고 가장 明確히 쓰고 읽어지고 ② 曲直과 小大와 符號가 이에 따르는 順인데 이中 小大 比 및 實長은 世界各法式마다 或은 說明을 위하여 成業後의 實線과 다른 入門敎習을 하고 있으나

別表의 手筆實線이 參照가 될것이다. ③ 最小線과 最大線은 小로 無制限, 大는 大로 또한 無制限이므로 自由스럽고 이들은 字初字間 語形尾에 붙는 符號와 더불어 基本文字와 異形인 點에서 表意化의 示差機能을 保有하는 것이다.

第6表

		曲(12)		直(12)		計
A 便		小	大	小	大	
	軌	4	2	1	1	8
	1	7	5	4	2	18
	小計	11	7	5	3	26
B 不便	2	1	3	1		5
	3		2		3	5
	小計	1	5	1	3	10

主勢, 副勢 모든 有爲轉變하는 存在에는 더 우기 瞬時に 語速을 따라 쓰는 速記에서는 움직이는 힘의 方向과 量에 어느 傾向이 없을수 없으니 ① 進向의 右向 下向兩群, ② [線形의 曲狀의 左卷·右卷, 나아가서는 回線合流등 偏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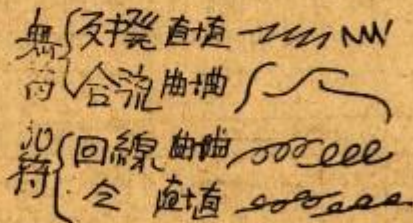
	曲 (24)	直 (12)
軌道	()	
1級	()	
2	()	
3	()	

要求되니 黃金分割(Golden section)은 數學이나 美術音樂에서 뿐아니라 우리 速記線形에서 도 當然히 要求되어있는것이다. 먼저 △進向에서 希

最小線 2-3	小文字 5-6	大文字 10-12	最大線 15-20
------------	------------	--------------	--------------

求되는 主勢는 右向橫書로서의 前進勢 右向群이 그便度를 30, 25, 20으로 보고 75% 거기에 回歸勢가 必要하니 20%로서 潤滑한往復運筆이 企圖되어야 하고 더우기 複音節 語形連書에서는 進向에 優美한 律性이 생겨야 할 것이고 △曲狀勢는 左卷順弧를 主勢로 50 거기에 길들여서 써지는 直25를 습하여 75% 여기에 右卷逆弧의 回歸狀이 또한 必要하니 25%로 理想을 삼아본다. △小大의 主勢는 各線便度에서도 보듯이 小60, 大40, 最少限 50:50으로 나타낼 必要는 있는 것이다.

連線3運筆 2.3音節語가 80%를 차지하는 특히 우리말에 ① 字間無符의 連線 ② 字間加符의 連線狀態를 아나다를 수 없는데 ③ 反卷은 直十直이며 字間無符의 경우인데 進向은 右 上이 下 左斜向의 軌道向이 좋고 銳角이 優勢하고 ④는 無符曲+曲形인데 小大區分이 筆勢 때문에 紊亂하기 쉬우나 速書가 되어 賞用되어야 할 것이다. 때로는 直線과도 連書可能하고 大小鉤를 끼어 連書도 된다. ⑤ 다음은 字間加符(特이圖)의 경우의 連書인데 同卷曲끼리는 優, 反卷曲끼리는 劣이 된다. ⑥ 直十直의 間符는 그 母字線의 示差를 살리려면 抗曲對側에 加符하지만 劣에 屬하는 方法이다.



符號便度 圓鉤類等 符號의 實線의 小大比는 그 面積 1:9(直徑1:3)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定論이며 字線과는 달리 表意의 視覺效果를 가지는에서 賞用된다. 一律로 小는便 大는不便으로 規定할 수는 없고 그 加符位置의 便順은 逆으로 尾·間·頭로 逆說할만큼 判異한 것이니 △頭符는 基本文字에 比하여 눈에만 異形이어서 異形로울 書速은 1個字와 맞먹으며 이 경우의 1級便符는 大鉤, 小鉤 小圓, 2級에 橢圓類,

	1급	2급	3급
頭			
向			
尾			

3級에 加尾符가 된다. △間符는 그加符로 因하여 前後字의 區劃을 表示하는 效果도 갖는데 鉤는 流筆로 하고 橢圓도 正圓과 混用이 許容된다면 有用하다. △尾符란 大低 더우기 曲線字는 곧急 停止하여 抑勢로써 손이 떴어지는 것이 아니고 多少間의 流勢現象인 餘勢는 不可避한 것이며 이들은 더우기 加尾符號까지 別用하게되니 限界를 넘는 流勢에 依한 그 混形이 두려울 程度로

	4	5	2	3	1
A直	*	-	\	/	!
B左	-	!	(((
C右	-	-))	!

全符號가 1級에 屬한다. △ 다음 最少線은 基本文字가 아니므로 역시 符號로 보는데 表의 2直과 1曲(符記記憶의 체크)을 特便한 것으로 때놓고 그向으로는 1~5의 順, 曲直狀은 ABC 便順에 대략 該當되는 것이다.

空筆排除

速記文形의 單 複은 常識으로는 評價하지 못할것이다 直線이 많거나 똑똑떨어져 있으면 曲線 보다 視覺表出量이 僅少하므로 速筆한 것으로 느낄지 모르나 이것은 空筆이 計算되어 있지 않은 斷定인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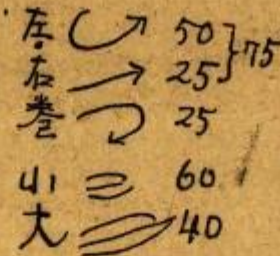
秒間記錄

卓	8~9
대외	7-8
체코	6-7
零	5-6
回線	7-8
樸字	④⑤⑥⑦



다. 아무리 簡
略한 1字1劃
文字라도 한
글式으로 한
字한字 배어
쓰면 到底히
速書不可能一
秒間記錄表에
서 보듯이 回
線이 6-7線

로 생긴이 兩
側面을 各國
各式에서 正
負 側이란 幾
何學用語가 있
고 그 規定性
조차 相異한
形便이므로 筆
者는 筆記感
覺에 어울리



이나 可能한點은 8-9밖에 못찍고 疲勞는 極
甚 漢草書 四, 出, 甫, 天의 멧진 速回線連筆은
왜 생겼는가를 回想하면 좋을 것이다. 結局 速
記의 今後의 課題는 이 空筆排除에 두어지고 있
는데 이 作業은 우선 速記의 語法의 發掘과 並行되
어 達成할것
인바 한 實例
들 活字量으
로 50字(速記
로 8語形)中
空筆比例가 國
漢文으로는 2
60 한글로는
207, 速記로는
6空筆이니 한
글에 比하여
速記는 무려 35倍의 空筆排除를 斷行한 것이 된
다. 速記는 우선 한 語形을 連書, 다음에는 한
文行의 連書까지가서 形式으로는 完璧에 이르는
것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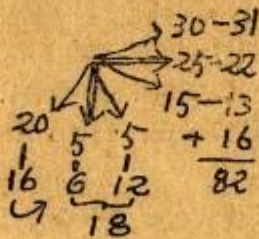
는 側面名을 順側·逆側으로 나누었고 더우기
管見으로는 世界最初인 細分法인데 字屬的과 字
沿的인 두가지 認識을 두렷이 하기로 하였다.

① 字屬에서는 順側을 直은 左肩에 太陽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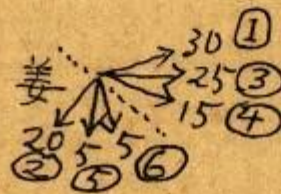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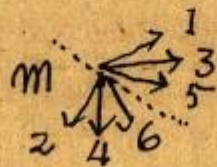
어 그비치는 面右向은上, 下向은 右로하고 曲은
모두 內를 順으로하여 字線自體發音의 補筆法을
삼고

③ 字沿은 母線과는 다른 概念을 表意로 하
기 위하여 좀 遠距離로 하고 曲直不問, 右肩에서



位置規定

速記에서는 不
可避하게 1個
線이 생기면
大別兩側의 對
稱位置가 생
기는데 이 素
材를 體系認
識하여 表音
表語에 有用
할 수 있다.
① 順·逆二한
波에는 스스



多幸히 順次로 通音이 되는데 한 通音群內의 類線類向化의 길을 擇해질 것이고 더우기 聲重中과거는 前母音爲主나 後母音爲主로 나누어질 터인데 餘韻이 남는 後音爲主가 優勢할 것으로 보인다. (사파-사가, 휘방-혜방, 의사-이사等 理參照) △ 받침의 絕音은 連音 音의 規則으로 初發子音과는 달라지는데 鼻音 나옴은 不變, 비은 7비으로 通音, 어는에에는 ㅂ비으로 通音이 되고, ㄷ은 ㄷㅂ, 또는 ㄷ리과도 通音이 된다 이들 子, 母, 받침의 通音들은 그 類出率을 勘案, 速記의 基礎運筆은 決定할 것이다.

調音素 速記語形을 1劃을 2字讀 또는 無書而讀할 수 있는 基礎的인 方途의 하나는 調音素를 理解活用하는 일이다. 集計에 나타남 -音은 用言 「먹으며 먹어서 오르(昇)음으며, 올라서」와 體言의 끝으며리, 수수께이의 (으, 이) 등은 모두 「-ㅏㅑㅓㅕ」없이 받침으로만 끝낼수 있으나 3,4音節語들 2劃程度로 恒書 恒讀하는 縮字法의 一翼이 되어야 할것이다.

主辭, 助辭

規範度法이 무엇이라든지 速記法認識에는 速記의 語法의 開拓이 必要하고 이 進度의 差異는 곧 한速記法式의 優劣을 決定하는 要因이 될것이다. 文法家의 10~12品詞說을 둘로 묶어 「詞」도 「辭」로 廣義分類를 하자는 持論인데 容納될 것으로 믿는다 즉 文法의 助詞, 語尾類를 들으면서 한뜻을 한 語形으로 쓰라는 것인데 「꿈을 꾸다」 같은 零格語나 「힘을 쓴다, 빈틈이 없다」 「誠意를 다하여, 研究를 해가지고서……」를 發音대로 모두 쓰면서도 1劃形化(따라서 表意化)하는 길은 速記語形이 普通文字文章보다 더욱 速讀(發音速度보다도)되는 基調가 될것이다. 그밖에 「에」先行的에 關하여, 에 對하여, 「것」先行的인 것, 다는것, 하는것 라고하는것 「등」더 나아가서는 接尾漢字語 先生, 博士, 時代……등도 助辭로 看做하는등 그 助辭素材의 開拓할 分野는 無盡藏인 것이다.

表語語形

添加語인 우리말의 助辭는 그 音節數의 40~50

A	B	C	D
江	Ka	가	
意表	音素	音節	表語速記

%를 차지하고 語末마다 붙는 規例이므로 우선

助辭를 便速하고 特異하게 써서 速書速讀正讀케 하는데 이미 英語速記는 (Would you mind)은 1語形으로 速書處理되고 있는것이다. 우리말의 速記水準은 ABC를 모두지나 D의 3劃으로 5字量 「大體的으로」가 써지고 「大」와 「的으로」는 表意「體」만 表音으로 남는 程度에 이르게 하여야할 것이다. 여기에 外來語를 動形詞化하는 하·되 指定詞의 「이」 敬稱使役被動의 「시·히」 「리기」 등은 우선 體系的으로 表意化 되고 있음은 各法式의 常識이고, 漢字 冠字인 接頭詞 大事件 不知中에 無味乾燥, 全人類의 大不無全, 非나 「찬」 強意頭否定的 「아니, 안못, 」이 表意化 되어야 하고 더욱 前進하면 「로」를 先行하는 「되, 보, 알, 생각」의 1語形表意化, 「케」 先行의 「하, 되, 생각」 「고」를 先行하는 「있, 나서, 제서」 「기」 先行의 「쉬우, 어려우, 바라, 困難하」 「수」가 先行의 「있, 없」 「지」 先行語 「안, 못, 말」 其他 「오락가락」 「水泡로 돌아가다, 기가 막히다」 등 慣習語形등 1形表意化하는 規定이 必要하다. 英文印刷에는 活字體를 무려 20餘種을 갖추고 있어 出版物의 表意化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글 創制前의 쓰던 漢字主辭에 語順대로 붙여 쓰던 口訣이 速記書式을 暗示도 한바 있으니 助詞나 語尾表記를 漢字의 一部劃만을 써서 “二”는 主格「이」로 尾(애)자 머리붙 따서 處死格「에」에, 더 傑作은 爲字의 머리와 尾의 “七”만을 따서 上下1層字로 하여 “하니”로 한것들은 助辭表意化的 速記의 假智였다고 斷定하고 싶어진단다.

質量一致

우선 “에스페란토”와 같이 人造語가 아닌 우리말 自體가 副詞 “씩” 名詞 “각다른골목” 動詞 “기가막혀서”를 쓰려면 1意1形原則에 들어 맞게쓰는 그 內容量과 形式을 一致시키는 作業이 必要하게 된다. 表音을 통한 新表意語形을 科學에 가깝게 지어나가려면 ① 文法上의 主助辭의 區分을 速記字線에는 안쓰는 濃線化를 한다든가 ② 內容의 重要性에 따라 一히 加下線을 치든지 上段記形을 하여 立體的區分을 한다든지 ③ 左手로는 色鉛筆로 註赤을 하여 反讀을 容易케하는 등 速記의 窮極的인 △ 速學=體系的 明瞭確固 △ 速書=線, 符의 便頻度の 合致 △ 速讀=表語化的 極域에 이르러 따라서 正讀且速讀이 되는 完璧을 向해 나가야 할것이다.

(本協會副會長, 前國會速記長, 梨大, 慶大講師)



講習會講評

第1回
速記

普及講習會를 마치고

東邦速記學院長 李 東 根

速記會速記士를 비롯한 全國에 散在해 있는 全體速記人으로 團結된 大韓速記協會가 客年12월에 創立總會를 가진後 오늘의 萎縮된 速記界에 새로운 活力素를 불어넣음과 同時 速記大衆化運動의 첫 事業으로 擇한것이 今年1月30日 YMCA에서 開幕된 第1回速記普及講習會이었다.

이 講習會를 갖는데 있어 協會로서는 두가지 重大關心事가 있었으니 그 하나는 衰退一途를 줄다름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今日的 速記界 現況下에서 이번 講習會에 果然 얼마만한 人員數가 參與할 것인가하는 것이요 그 둘째는 3週間이라는 極히 制限된 짧은 期間內에 實施되는 講習成果가 果然 어느 程度일것인가 하는 點이었다.

筆者는 이 두가지 問題를 縝密히 分析 檢討하는 同時에 여기에서 일어지는 結論을 資料로하여 앞으로의 速記普及 運動에 對한 筆者의 構想을 開陳코저 한다.

이 두가지 問題中에서도 첫째 問題인 參集人員數 問題는 우리 나라 速記界의 안날에 對한 盛衰를 占쳐볼 수 있는 豫報라고 解釋해도 過言이 아닌 性質의 것으로 開講當日까지 協會로하여금 은觸角을 곧 두세우게 하는 問題이었으며, 그 둘째 問題 亦是 이번 講義가 職業的인 速記士養成이라는 從來의 틀에 갇힌 既定教育課程을 打破하는 것이 아니라 一般大衆이 지니고 있는 速記에 對한 그릇된 觀念(速記는 一種의 特殊技術로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普偏性을 지니지 못하고 몇몇 特出한 才質의 所有者만이 習得할 수 있는 學術이다 라는等)을 一掃시킬 수 있는 講義內容이어야 하였으며 또한 初學者들로 하여금 速記에 對한 趣味를 十分 갖게 할 수 있음은 勿論이려니와 3週間이라는 制限된 時間에 나마 速記의 基

本文字를 完全 消化케 해야하는 一面 終講後에 이르러서도 受講生들이 各自의 日常生活에 活用할 수 있는 略字, 略符(受講生의 90%以上이 學生이었음으로 主로 各級 學生들의 學校速記에 應用될 수 있는)까지도 教授해야 하였음으로 協會側으로서나 特히 直接 이번 講義를 맡았던 筆者로서는 敎案作成이나 講義口述內容에 이르기까지 細心한 注意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多幸히도 이 두가지 問題가 다 豫想外로 좋은 成果를 거두게되어 우리 全體速記人이 恒時 念願하고 또 앞으로 받드시 展開해야할 速記의 大衆化라는 指標 到達에 매우 希望的인 밝은 빛을 던져주는 樣相을 보여 주었다.

即 첫째 問題인 參加人員數 問題에 있어서는 三大日刊新聞紙上에 不過 單 한 번의 2段 20行이라는 極히 적은 스페이스의 廣告를 냈음에도 不拘하고 六百餘



名이라는 受講申請者數를 記錄하였다는 事實은 아직도 一般大衆이 速記에 對해 全面的으로 外面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立證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 全體速記人에게 鼓舞的인 希望을 안겨주는 同時에 또한 이 現象은 곧 速記普及運動의 不振狀이 一般大衆의 速記에 對한 認識不足에 基因함이 아니라 도리어 이에 對한 既成速記人들의 熱意不足과 怠慢에 基因하였었다는 事實을 端的으로 示唆해 주는 覺醒劑이기도 하였다. 勿論 이 六百餘名의 申請者全員이 受講生임은 아니었으나 實際 受講者數만도 4百7~80名을 헤아릴 수 있었다는 事實과 이中에서 所定의 3週間講習을 完全履修한 者가 2百3~40名이나 되었다는 事實은 우리 나라 速記史上 類例 없는 驚異的인 成果이었다것은 筆者뿐만 아니라 速記에 從事하는 者라면 누구나 否認 못할 것이다.

그 다음 問題는 講習成果에 對한 問題인데 이 問題는 보는 사람의 主觀에 따라 그 成果가 달리 評價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라 하겠으나 直接講義를 擔當하였던 筆者로서의 主觀에서 볼 때 이 亦是 成功的이 아니었는가 生覺된다.

여기에 參考的으로 이번 講義의 主要內容을 紹介하면 첫째 總基本文字(받침까지 包含)를 15等分하여 하루의 講義分量으로 定하였고 둘째 初學者의 趣味心을 도우기 爲해 當日배운 基本文字로 應用할 수 있는 略字·略符를 使用頻度率에 따라 順次로 教授하였으며 셋째로 受講對象者의 性分(學生·一般人)如何를 不問하고 普遍的으로 가장 많이 使用되는 動詞略字에 特別 重點을 두어 各個의 動詞마다 117個式은 能히 應用變化시킬 수 있도록 廣範하게 注入시켰으며 넷째 以上の 熟達方法으로서 每日每日의 進度課程을 宿題形式으로 復習·練習케 하였고 다섯째로 이를 日常生活화시키는 應用方法으로서 于先 各自의 日記帳에다 이를 한글과 混用케하여 漸次的으로 그 範圍를 學校筆記에까지 使用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以上과 같은 講義內容 및 練習, 熟達, 應用方法에 依하여 이루어진 이번 講習의 成果에 對한 受講生들의 總評은——終講日 協會에서 行한 綜合設問中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項에서 「도움이 되었다」가 190名 「도움이 안되었다」가 6名 「잘 모르겠다」가 28名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번 講習이 매우 成功的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위의 第1回速記普及講習會의 分析에서 볼 때 우리 나라 速記普及 發展向上問題는 限定된 既成人層에서 卓上空論的인 論議에만 끝일 것이 아니라 이를 靑少年層에게 普及과 向上을 꾀하는 便이 實相은 더욱 重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자면 于先 學生層을 對象으로 함이 가장 效率的이라는 結論이 나온다고 본다.

그러면 어떠한 方法으로 學生層에게 普及을 꾀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研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筆者의 生覺으로서는 여기에 두가지 方法이 있다고 본다. 卽 하나는 積極的인 方法이요 다른 하나는 消極的인 方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積極的인 方法이란 全國의 中·高·大等 各級

學校의 分布狀況을 調査把握한 然後 創案者級으로 構成된 講師陣으로 하여금 地域別로 分擔케 하여 全國一齊히 巡廻普及講義를 實施하고 各學校에다 速記部를 創設하여 一大 速記부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敎材 및 諸般 參考資料 등에서 오는 豫算問題와 講師陣의 人員 不足이라는 難點이 가로 놓이게 될 것이다.

다음 消極的方法이란 上記의 直接 巡廻講義代身에 獨習 할 수 있는 講義錄을 發刊하여 書信形式에 依한 通信講義로서 各學校에 速記部를 創設케 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 方法은 積極方法에 比하면 그 成果가 너무나 微微할 것임은 明若觀火之事이며 이 亦是 豫算問題의 難點은 그대로 宿題로 남게 될 것이다.

어쨌든 ①의 方法이나 ②의 方法의 어느것에 依하는 協會로서는 最短時日內에 最大의 努力을 傾注하면서 最善의 方法을 講究하여 期必코 實踐에 옮기지 않으면 안될 緊急을 要하는 至上課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各學校에 速記部가 設立되게 되면 現在 이웃나라인 日本에서 盛行되고 있는 各地方單位(道) 라든가 또는 中央에서 全國規模의 個人戰團體戰의 學生速記競技大會를 定期的으로 (1년에 1回乃至 2回) 開催하게 된다면 學生相互間에 또는 各學校間에 競爭意識을 誘發시키게 됨은 必至의 事實로서 速記의 普及은 急進的으로 展開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注意해야 할 點은 이 學生速記競技大會는 그 運營面에 있어 特別한 留意와 相當한 研究를 必要로 한다는 事實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學生速記競技大會는 既成速記人의 競技大會와는 그 趣旨에 있어 根本的으로 달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既成速記人競技大會는 選手各者의 實力面의 優劣을 判가름하여 優秀한 速記士를 發掘하는데 그 目的이 있으나 이 學生競技大會에서는 上記의 目的보다, 는 도리어 學生層에 速記를 普及시키는 하나의 手段이라는 窮極的인 目的을 두어야 할 것이다. 萬若에 이 學生速記競技大會마저도 既存했던 大會와 같은 規制를 받게 한다면 적어도 앞으로 2年內에는 學生層에서 選手가 登場할 수 없게 될 뿐더러 그 數에 있어서도 顯著하게 減少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學生速記競技大會는 어디까지나 初學者에서 부터 完全速記士가 되기까지의 中間過程을 지루하지 않고 滋味있게 習得해 (47頁 下段으로 繼續)

第1回 速記講習에 關한 綜合設問의 分析

李 康 賢



이 資料는 1967年 1月 30日부터 同年 2月 20日까지 3週間에 걸쳐 大韓速記協會 創立記念 事業으로 同協會 主催 東邦速記院式이 主管한 第1回 無料速記 公開 講習을 마친 履修生中 224名(男子 132名 女子 92名)을 對象으로 하여 앞으로 繼續될 公開講習會에서 是正되어야할 點 등 여러가지 參考資料를 얻고자 協會 事業部에서 行한 綜合 設問에 대한 分析이다. 이 設問을 통해서 가장 特記할만한 것은 受講動機에 있어 速記學院에 在學中인 學生들과는 그 目的을 根本的으로 달 리하였다는 事實이다. 即 速記學院에 入學하는 學生들의 受講動機는 9割0%以上이 業速記士가 되기위해서 또는 入隊後 軍行政技術兵(速記兵) 이 되기위해서 라는 뚜렷한 目的意識이 있었음 에 反하여 이번 受講生들에게서는 이 點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刮目할만한 事實로서 協會 側에 좋은 研究課題를 提供해 준 것이라고 본다

以上 設問順에 따라 分析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速記講習을 받게된 動機는 무엇인가.
 - 가. 速記를 알기 위해서 53.6%(男子 66名 女子 54名)
 - 나. 노트 筆記의 도움을 위해서 27.2%(男子 41名 女子 20名)
 - 다. 速記士가 되기 위해서 4%(男子 8名 女子 7名)
 - 라. 好奇心에서 15.2%(男子 17名 女子 17名)
- ◇ 分析=「速記를 알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率로 나타났는데 이는 速記에 대한 PR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同時에 適當한 普及運動만 展開한다면 相當한 成果를 얻을수 있을을 暗示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PR과 普及의 未裕은 우리나라 速記歷史의 日淺함과 諸般社會的 與件에도 그 原因이 있겠으

나 速記人들의 보다 積極的인 普及運動의 實踐이 切實히 要望되며 各 法式이 하루바삐 現在의 冬眠狀態에서 깨어나 奮發再起하여 時急한 養成機關設立에의 注力이 아쉽다.

「노트 筆記의 도움을 위해서」가 27%를 나타내고 있음은 興味있는 일로서 現大學生들이 平常時의 學校筆記에서 보다 能率的인 筆記方法을 얼마나 渴望하여 왔는가를 엿 볼수가 있다. 各 法式의 學生筆記用速記法도 研究해 볼 만하다고 본다.

「好奇心에서」가 15%인 것은 過去에 어떤 速記冊子를 통해서거나 또는 速記하는 場面の 目擊等에서 오는 新奇함에 關心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번 機會를 利用한 것이 아닌가 解釋된다. 이런 면에서 볼때 速記 PR을 위한 刊行物이 全無하였음을 慨嘆하지 않을 수 없는 現時點에서 이번의 『速記文化』誌의 創刊은 그 意義가 자못 크다 아니할 수 없다.

가장 低率의 4%인 「速記士가 되기 위해서」는 當然한 歸趨로 이번 講習의 根本趣旨가 速記士養成이 아닌 大衆普及講習이었음을 立證한 것이라 하겠다.

- 2. 3週間の 期間을 어떻게 보는가?
 - 가. 길다 0.5%(男子 1名 女子 2名)
 - 나. 짧다 66.1%(男子 82名 女子 65名)
 - 다. 適當하다 33.4%(男子 48名 女子 27名)
- ◇ 分析=가장 높은 率인 「짧다」는 講習過程에서 完全히 興味와 趣味를 느끼고 좀더 배웠으면 하는 慾求不足을 表示한 것으로 보이며 「適當하다」의 33.4%는 이번 普及講習의 趣旨를 잘 理解한 것으로 본다. 「길다」는 0.5%밖에 되지 않음으로 論及할 것이 없다.
- 3. 速記를 배워보니 어떠한가.
 - 가. 어렵다 18.7%(男子 17名 女子 17名)
 - 나. 쉽다 4%(男子 4名 女子 5名)
 - 다. 할만하다 77.3%(男子 111名 女子 62名)

◇ 分析=「할만하다」가 가장 높은 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처음 生覺한것 보다는 尙상 배워보니 意外로 쉬웠다는 것으로 解釋되며 速記는 머리 좋은 생각한 사람만이 배울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같았다. 이런 點 많은 啓蒙과 宣傳이 必要하다고 본다. 各法式에 따라 3週間の 進度 및 教授法이 다르겠지만 이번 主管法式의 짜임새 있는 進度計劃이 奏効한 것으로 보인다.

18.7%인 「어렵다」는 모든 學術分野講習成 果에서 그렇다시 100%의 目的達成일 수는 없다는 必然的인 現象이 아닌가 생각되나 좀 더 容易하게 배울 수 있는 速記에의 改善 研究에 繼續 努力하여야 할 餘地가 있음을 보여준 것 이라 하겠으며

4%의 「쉽다」는 정말 잘 消化하고난 「쉽다」 인지 분간키 어렵다.

4. 지금까지 배운것을 어떻게 보는가?

7. 도움이 되겠다 84.8%(男子 117名 女子 73名)

나. 도움이 안되겠다 2.7%(男子 3名 女子 3名)

다. 잘 모르겠다 12.5%(男子 12名 女子 16名)

◇ 分析=이번 講習의 總決算이라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다」가 85%로 나타난 것은 主催한인

協會立場에서 보나 主管한 東邦速記法學의 立場에서 보거나 매우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비록 3週間이라는 짧은 期間이었지만 이번 講習이 學校筆記에 實用될 수 있다는 것을 實證해 준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講習內容이 充實을 期했다고 自負한다.

「잘 모르겠다」의 12.5%는 制限된 짧은 時間關係로 各自의 練習, 復習의 不足에서 오는 不安定한 心理狀態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

「도움이 안되겠다」가 2.7%를 보여준 것은 前項의 「어렵다」가 18.7%인 것과 比較하여 볼때 이번 成果가 成功的이었음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反證으로 보아 無妨할 것이다.

以上 簡單히 各 設問에 對해 分析해 보았다. 끝으로 이번 講習生의 性分을 다음과 같이 附記해 둔다.

職業別	男子	女子	計
一般公・事務員	28名	22名	42名
記者	3名		3名
아나운서	1名		1名
大學生	86名	58名	144名
高校生	9名	7名	16名
無職	3名	5名	8名
其他	2名		2名
合計	132名	92名	224名

(東邦速記學院副院長)

(45頁에서 繼續)

나갈수 있는 同時 온근히 競爭心을 일으키게 하는 普及과 向上을 圖謀하는데 그 뜻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大會에서도 級數를 上級 中級・下級の 三種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이며 速度는 上級이 200~250字, 中級이 125字~175字 下級이 75~125로 하는 것이 適當할 것이며 競技時間도 大幅 短縮시켜 2分이나 길어도 3分內로 끝쳐야 할 것이다.

끝으로 筆者가 構想 하고 있는 學生速記 競技大會의 競技規制를 다음에 적어본다

個人戰 (2分間)

上級	200字	225字	250字
中級	125字	150字	175字
下級	75字	100字	125字

團體戰

(1) 學校別로 3名을 1組로 하되 몇組라도 參加할 수있다.

(2) 速度는 1分間에 200字로 2分間

(3) 反文은 1組에서 1枚로하되 組中の 3人의 分擔量은 自由

(本協會 副會長・東邦速記學院 院長)



A P U



總 會 點 描

Y 生

★ APU와 速記士

1966年 9月 2日부터 7日까지 6日間 Walker Hill에서 第2次 APU總會가 開催됨에 따라 APU憲章 第10條III 및 第14條에 依據 우리나라 國會速記士들도 事務局의 一員으로 Walker Hill Liman House에 投宿 迅速한 事務處理作業에 着手케 되었다.

國際會議에 國會速記士가 大量 參與하는 일은 1655年 4月 當時 國會速記士인 柳虎龍 李柱範氏 (現國會交遞委事務官 · 現韓國銀行議事課長)가 卞榮泰氏 梁裕燦氏等과 함께 Geneva國際會議에 隨行한 以後 처음 있는 일이었다.

APU憲章 第2條「本聯盟은 完全한 自由와 眞正한 民主主義를 達成維持함으로서 亞細亞에 恒久的인 平和와 繁榮을 招來함을 目的으로 한다」라는 이렇게 遠大하고 重要한 目的을 가지고 亞細亞各國代表가 參席하여 討議하는 會議에 그 記錄을 맡았다는 것은 꽤 보람있고 호뭇한 일에서 執務에 一毫의 蹉跎도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緊張한 우리였다.

一行의 構成은 金鎮基 國會速記課 第1係長을 班長으로 한 17名과 10餘名의 打字員 그리고 10餘名의 英文速記士도 包含되었다.

★ 올빼미 事務

우리 記錄班員은 當日速記錄이 翌日 午前會議時에 配付되어야 함으로 낮에는 會議에 參席 記錄하고 夜間에 反文하여 打字員에게 넘겨 校正 印刷까지의 過程을 마치자면 밤을 꼬박 지새우는 수 밖에 없었다.

이야말로 올빼미式 激務……그러나 16名의 國會速記士와 編輯職員以外엔 거의 가 美女들(?) 一色이었으므로 疲勞를 모르고 能率있게 해 치울 수 있는 事務分量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英文速記士 아가씨들은 그들 自身이 發言時間의 3倍 乃至 4倍면 反文(速記文字를 英語文으로 번역하는 것)할 수 있다는 豪言과는 달리 發言時間의 7倍 乃至 8倍가 所要되는 우리 國文速記士들의 速記錄完成時間과는 比較도 되지 않는 不振한 事務處理였다. 筆者가 살짝 그들의 office로 가 봤더니 英文速記士 아가씨, 英文 typewriter · 錄音器, 그리고 通譯등 4位各體가 되어 나오는 소리가 不協和音을 이루고 있었다. 英語實力이나 英文速記實力은 문제 外겠지만… 實務經驗의 不足에서 오는 것만은 不認할 수 없는 光景이었다.

勿論 個中에는 分間 135單語를 速記할 수 있다는 美國 아가씨도 있었다. 이 美女(?)는 왼손잡이로서 實務할 때는 바른 쪽으로 썬 나가다가 줄을 바꾸어 쓸 때는 바른손으로 왼손을 탁! 쳐서 왼쪽으로 옮겨가는 妙技를 發揮하여 모두들 신기하게 여겼다.

★通譯과 「이어폰」

本總會에서는 國際會議의 慣例에 따라 同時通譯을 韓國語 英語 佛語 日本語 및 中國語로 하게 되었으며 이 中 韓國語通譯이나 韓國代表의 發言을 速記하는 일이 國文速記士들의 主任務였다. 그런데 우리는 通譯의 創作力(?)에 의한 要略通譯에 感歎해 마지않는 바였으나 國文速記士들中 英語나 日語에 實力 있는 사람들은 直接 翻譯速記하는 飛技까지 驅使하는 例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方向에 따라 소리의 強弱이 심한 「이어 폰」을 들고 씨름해 가면서 記錄을 하느라 애를 태웠는데 姓名도 밝히지 않은 V國 議員의 發言이 끝난후 그 V國 議員에게 가서 빈약한 英語로 姓銜을 여쭙니 그분은 佛語로 유창하게 「……」? 하는수 없이 그분의 名札을 민망할 정도로 눈여겨 볼 수

밖에 없는 失禮를 犯하고 말았다.

代表議員들이여 發言하실 時 姓衛이나 밝혀 주십시오.....

9月 5日 經濟分科委員會에서 委員長 U氏, 한 時 議事進行에 關해 發言하였는데도 「이어폰」은 잠잠... 무로히 通譯을 바로보는 速記士에게 R議員 「저사람 뭐라고 말 하는 거야?」速記士들 눈만 眨眨할 수 밖에.....

後에 「그분의 英語發音은 「스페인」語인지 佛語인지 여하튼 分辨이 어려워 진답했다」는 通譯의 解明이고 보면 錄取를 풀어본 英文速記士 아가씨들의 苦衷은 同情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 비와 速記原文

總會期間中 繼續 비가 내리어 main Building 과 事務所 宿所인 Liman House 사이를 往來하는데 噁이나 神經을 썼다. taxi가 있기는 하나 美女速記士들에게 讓步하는 美德을 지닌 處地이기에 차떼 오기가 힘들었으며, 原文을 愛人인양 가슴속에 간직하고 鋪道를 때리는 빗줄기를 避해 가노라면 후줄근히 젖어오는 바지속에서 따스한 體溫을 느끼며 原文의 安全運搬에 滿足하던 우리였다. 이를 보고 웃음 짓던 Walker Hill 從業員들——이들은 하나 같이 親切하고 상냥스러웠으며 英語會話能力도 대단하였다. 깨끗한 外貌에 好感이 안 갈 수 없었지만 언젠가 洋食料理 食事後의 計算은 꽤 불만한 「코스트」였다.

x x x

3月 7日 APU總會는 亞細亞의 繁榮과 平和라는 APU의 根本精神이 점점 더 크게 開花되기를 다시 한번 祈願한다는 要旨의 閉會辭(總會議長 李孝祥)로서 幕을 내리게 되고 올빼미 勤務도 끝이 났다. 이어 우리 一行은 吉基祥委員長 局長으로부터 “大過없이 치문 事務處理에 感謝하다”는 모처럼의 讚辭를 듣고 보니 「記錄報國」이라는 李孝祥議의 揮毫가 想起되어 새삼 本職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事實 國文速記士를 必要로 하는 國際會議는 극히 드물고 이번 APU總會外에 亞細亞反共聯盟會議等 우리 나라가 主催하는 國際會議程度에서 그친다.

이는 言語의 限界로 因한 것이며 本APU 總會의 參與도 同憲章 第14條 第2項 「...本聯盟의 文書는 모든 會議用語(開催地의 國語 및 英語)로 記載한다」에 依하여 그 參與가 可能한 것이었다.

그 實 이번 總會를 通하여 느낀 것은 英文速記術까지 習得하고 싶은 衝動이었다. 이는 筆者만의 생각일 것이나 其外 速記事務의 能率化와 迅速을 위하여 于先 第1次的으로 本會議會議錄을 除外한 分科委員會 會議錄은 우리도 한글化하여 type writer로 反文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英文速記에 있어서 type writer에 의한 反文時間이 發言時間의 3倍밖에 所要되지 않는다는 事實은 그 迅速함에 있어서 커다란 長點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가 打字로 反文한다면 이는 한글專用에 앞장서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勿論 이에 대한 是非는 別途로 論議할 문제겠지만 筆者는 이 反文時間의 短縮에서 오는 利點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다.

★ Bon voyage

말끔히 개어버린 「하늘에 저녁 노을이 炸裂하는 여기 옛 溫達將軍의 遺蹟이 山野에 깔린 Walker Hill을 떠날 차비를 꾸리며 힐끗 밖을 보니 푸른솔 앞에 아롱진 물방울이 水晶같았다. (筆者 國會速記士)

現職速記士分布

(1967. 3月末現在)

國會事務處	82名
青瓦臺	1名
政府各部處	11名
軍關係	20名
地方自治團體	2名
企業體	7名
金融機關	3名
海難審判委 其他	11名
計	137名

(本協會에 登錄된 分에 限함)

外國速記界現況

(1) 日本篇

梁 源 龍



—速記士の 職別報酬現況을 들어본다—

그동안 宣傳部에서는 世界各國의 速記士職別 및 報酬現況에 對해서 資料를 蒐集하고 있는바, 現在까지 入手된 資料에 依하여 그 現況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日本은 東洋에서 제일 먼저 速記學을 導入한 나라로서 70餘年の 歷史를 자랑하고 있을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速記에도 影響을 준 早稻田式 中根式 등은 日本速記界의 鼻祖로서 君臨해 온 것이다.

日本速記協會

1920年 5月 17日 任意團體로서 發足된 日本速記協會는 많은 陣痛과 波瀾을 겪음으로서 長運의 發展을 거듭, 1965年 10月 21日에는 從來의 任意團體로부터 社團法人으로 發展함과 동시에 盛大한 發會式도 가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日本國會인 衆·參·兩院의 事務局의 協助도 빌어 쓰고 있던 日本速記協會 事務所도 따로 獨立된 事務所를 設置하여 하나의 完全한 獨立된 法人으로서 發足하게 되었다.

또한 日本速記協會 事業의 하나인 速記技能檢定試驗은 日本에 있어서 唯一한 權威있는 檢定試驗으로서 中央·地方을 不問, 國家機關에서도 速記士技術 資格認定의 基準으로 삼고 있으며, 日本國會兩院의 事務局에서 行하는 速記者採用試驗의 受験資格에 있어서도 日本速記協會의 檢定試驗 第一級合格者以上の 實力者라야만 應試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官費國家養成所인 衆·參議院 速記者養成所의 學生도 在學中에 이 資格을 取得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衆·參議院 速記者採用試驗은 公開試驗이기 때문에 有資格者는 누구나 應試할 수 있으나 上記 一般인 十分間 一千二百字 許容失點 2%로서는 衆·參議院의 速記者로서는 未及하기 때문에 三千五百字程度의 試驗이 行하여지고 있어서 尙으로 高度의 實力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合格할 수 없고 最近에는 私設學院 出身 應募者의 合格者가 나오지 않는 實情에 있다.

日本 衆議院 速記者의 職別報酬及 一般職과의 比較

速記者로서 採用되면 速記士補에 任하고 速記職給料表 別表의 5等級 2號俸을 適用 1年間의 實地 訓練을 거친後 速記士昇格試驗을 行하여 그 合格者는 4等級 1號俸을 適用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3年間의 實務經驗을 거친後 主任速記士 昇格試驗을 行하여 그 合格者는 3等級 2號俸으로 올라간다. 이후 계속 經驗을 쌓아 初級管理技術을 修得한 者로 認定받으면 速記副監督으로 登用, 또한 中級管理技術을 修得했다고 認定받는 者中에서 速記監督으로 昇格시켜 年功에 따라서 速記職給料表의 最高에까지 給與를 支給하고 있으며 速記監督中에서 適格者를 行政職으로 轉換 課長으로 까지 登用시키고 있다.

全國 速記者 人員數 및 法式別 比率

法院從事 速타이프 取扱速記者가 6百餘名이 있고 手筆速記者가 3千餘名이 있는바 이들의 法式比率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衆議員式	14.9%	參議員式	14.%	速타이프式(裁判所)	18%
早稻田式	19.4%	中根式	14.6%	態崎式	4.8%
田 籙 式	3.1%	伊 式	2.4%	山根式	1.4%
日速式	0.4%	其 他	7%		

(流波式, 毛利國字式, 岩村式, 木村式, 丸山式 其他 60餘種)

資料

日本國會(衆議院) 速記職 行政職의 給料對比表

速記職						
等級	一等級	二等級	三等級	四等級	五等級	六等級
號序	圓額					
1	一圓	一圓	一圓	25,700	22,100	18,700
2	55,300	47,700	35,800	27,400	23,300	19,500
3	57,800	50,000	38,000	29,100	24,500	20,300
4	60,900	52,300	40,200	31,000	25,700	21,200
5	62,800	54,600	42,400	32,900	27,200	22,100
6	65,300	56,900	44,700	34,900	28,700	23,100
7	68,100	59,200	47,000	36,900	30,400	24,100
8	71,000	61,500	49,300	38,800	32,100	25,100
9	73,900	63,800	51,600	40,600	33,800	25,900
10	76,800	66,200	53,900	42,400	35,200	26,700
11	79,700	68,600	56,200	44,200	36,100	27,500
12	82,600	71,000	58,500	45,500		
13	85,500	73,400	60,100	46,800		
14	88,200	75,400	61,700	47,800		
15	90,700	77,400	63,300	48,800		
16	93,000	79,100	64,500	49,800		
17	95,000		65,700			
18	96,800		66,900			
19	98,600					

行政職					
等級	一等級	二等級	三等級	四等級	五等級
號序	圓額				
1	—	—	25,700	22,100	16,600
2	43,100	33,600	27,400	23,300	17,300
3	45,400	35,800	29,100	24,500	18,000
4	47,700	38,000	31,000	25,700	18,750
5	50,000	40,200	32,900	27,200	19,500
6	52,300	42,400	34,900	28,700	20,300
7	54,600	44,700	36,900	30,400	21,200
8	56,900	46,800	38,900	32,100	22,100
9	59,200	49,000	40,900	33,800	23,100
10	61,500	51,200	42,800	35,500	24,100
11	63,700	53,100	44,700	37,000	25,100
12	65,900	55,000	46,600	38,500	26,100
13	68,100	56,900	48,500	40,000	27,200
14	70,300	58,200	49,800	40,900	28,300
15	72,300	59,500	51,100	41,800	29,100
16	74,300	60,500	52,100		29,800
17	76,000	61,500	53,100		30,500
18	77,700	62,500	54,100		
19		63,500	55,100		

速記의 本質과

養成問題에 關한 小考

李 東 根

1. 速記의 本質

〈言語와 文字〉 사람들은 말과 몸짓으로 自己意思를 表示해 오다가, 文字를 갖게된 然後에야 비로서 文化上으로 큰 前進를 보게 되었다. 이는 言語(말)의 缺點인 ①멀리 到達치 못함 ②持續性이 없음-의 두가지를 補完하였기 때문이다

電波應用이 極度로 發達한 今日, 上記 ①②의 問題도 "라디오"나 錄音機로 어느程度 補完이 되는 하였으나, 言語가 갖는 本質的인 缺點은 依然히 남았다고 할 것이다.

文字는 말과 같은 意思傳達의 手段으로서의 用途를 갖고 있으므로, 音聲이 聽覺을 相對로 한것이라면, 文字는 視覺을 相對로한 記號에 依한 意思傳達의 方式이라 할수있다.

本來 文字는 이와같이 音聲의 缺陷을 補完하기 爲하여 發明된것임으로 올바른 記號만 使用하게 된다면 그 目的은 達成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音聲을 傳할려면, 相互間에 一定한 約束을 正確하게 지키기만 하면 足한것으로 그 約束이 複雜한 것이나 또는 簡單한 것이나 하는것은 別問題였다. 이와같이 해서 世界에는 各樣各색의 文字가 생겨, 各己의 文字圈을 이복하였다 이렇게해서 文字를 使用해 오는 가운데 人間들은 그의 不合理的함을 깨닫기 始作하여 改良을 거듭하는 가운데 今日에 이른다. 이 不合理的 是正의 焦點은 複雜한것을 簡略하게 하고, 틀린 우리성이 있는것을 改良하는데 있었다.

이런 點에서 볼때 우리가 使用하고 있는 漢字는 複雜하기가 그지 없는것으로, 그것은 漢字의 成立이 "音"을 表記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것이 아니고, "意"(뜻)를 表示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文字의 簡素化〉 文字가 普及되고, 文字를 쓰

는 機會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겨우 그의 複雜性을 問題삼기 始作했으며 여러가지의 改良을 試圖하였었다.

漢字도 當時의 大篆의 複雜함에서 부터 漸次로 簡略化되어, 唐代에 이르러 비로서 楷書의 發達에서 오는 字形의 統一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中國에서는 尙今도 그 簡素化가 繼續되고있는 中이며, 우리나라에서도 敎育漢字 또는 常用漢字라 이름하여 複雜한 漢字의 使用을 可及의 程度로 制限하고 있고 더욱이 近者에 이르서는 文敎部에서 漢字體의 簡略化(略字化)까지도 試圖中에 있는것이다. 이것은 文字를 普及시켜 文化向上의 한 手段으로서 取해지는 措置이기는 하나 一面 書字活動의 類雜性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려는 人間의 知惠가 하나의 底流를 이루고 있음도 否認치 못할것이다.

長時間의 筆記, 語速(言語의 速度)과 併行됨을 要하는 筆記等 여러가지 難點을 隨伴한 書字活動의 必要가 增加됨에 따라 우리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쓰는 勞動」을 하는데 온갖 精力과 時間을 提供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速記의 特徵〉 이와같은 空間을 메꾸기 爲해 言語의 傳達이라는 文字 本來의 目的에서 떠나 言語速度와 맞추어서 筆記를 容易하게 하기 爲하여 全然 다른 觀點에서 생각해 낸것이 速記인 것이다. 따라서 速記의 記號는 ①쓰기 쉽고 ② 빨리 쓸수있게 하고 ③記憶하기 쉬워야 하고 ④ 틀리지 않고, 그리고 빨리 音聲의 세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速記學에서는 顧文이라함) 考案되어 있다.

〈言語와 速記〉 그러면 사람의 言語에 適合한 記號란 어떤것일까, 그것은 사람의 말의 速度와 同時에 音이 記錄될 수 있음을 最底의 要件으로 하고, 여기에 알맞는 符號라면 可하다는 말이될 것이다.

그러나 實際로 이와같이 簡潔한 記號란 그리 많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速記符號는 위의 要件을 充足시키기 爲한 考慮기 必然的으로 加해지게 마련이다. 그 考慮란 「記憶에 最適한 省略」이라는 形態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速記符號 「-」는 「가」라는 音을 表하는 것이나 이 記號를 約 30mm로 길게하여 「價格」이라고 읽는것이 그것이다 (東邦法式)이와같이 하여 發音을 記錄하고, 그것을 말한 그대로 普通文字로 다시 쓰는 行爲- 이것을 速記라 한다.

그러면 普通 사람들이 말하는 言語란, 大體 어느 程度의 速度를 가지는 것일까, 여기에는 "느린말" "아주 빠른말"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아주 느린 말을 漢字가 섞인 우리한글로 다시 옮겨 썼을 경우, 10分間에 130~1700字 前後가 된다. 이것을 速度로 하여 速度의 種類를 一覽表로 作成하여 보면

速度 1 (1300~1700)

아주 느린말

速度 2 (1700~2000)

적 느린 말

速度 3 (2000~2200)

普通 사람의 會話

速度 4 (23000~2500)

普通이지만 약간 빠른感

速度 5 (2500~2800)

좀 빠른感

速度 6 (2800~3000)

적 빠른 말

速度 7 (3000~3500)

아주 빠른말

以上の 일곱가지로 大別 된다.

〈筆記能力〉上記와같은 言語速度에 對해우리가 日常時 使用하는 文字(한글·漢字)는 筆記速度面에서 볼때 매우 뒤떨어져있다. 이것은 複雜性이 그 큰 原因으로서, 아무리 亂暴하게 빨리 간겨 쓴다해도 分間換算 겨우 60~80字를 넘을 수 없다. 설사 그以上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長時間 繼續하여 維持하기란 到底히 不可能한것이다. 이것을 解決하기爲한 符號가 곧 「速記符號」 또는 「速記文字」 (基本文字)라고 불리어지는 것으로 1分間에 250程度의 速度로 筆記할 수 있는것이다. 이 符號는 單劃의 線을 1音 1符號

로 함을 原則으로 하고 (東邦式)다시 여기에 다 여러가지 種類의 記憶符號(省略法)를 驅使함으로써 1分間에 300~350이라는 "스피드"를 갖는다 이것이 곧速記이다.

2. 우리나라 速記 略史와 各養成所의 轉移 및 現況

〈우리나라 速記略史〉 여기에서 우리나라速記의 歷史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速記歷史는 解放前과 解放後로 나누어진다. 解放前으로는 西紀 1909年 朴如日先生을 爲始하여 嚴正友 姜駿遠氏等 네 여섯분이 研究發表한바 있으나 不幸하게도 當時의 日帝抑壓政策으로 因하여 모두 發表에만 끝치고 實用普及의 햇빛을 보지못한채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며 (姜駿遠氏는 解放後養成所를 設立하였음) 解放後로는 다음 諸氏가 續續 研究發表하는 盛況을 보여 주었다.

(年度別)	(創案者名)	(法式)	(發表形式)
1935·6	姜駿遠	서울式	東亞日報
1946·6	張基泰	逸波式	單行本
1948·2	李東根	東邦式	單行本 (速記學講義)
1948·5	朴·松	朝鮮式	學生新聞
1956·3	南相天	南天式	單行本
1957·	金天漢	高麗式	講義錄

上記外에도 "中央式"의 [朴寅泰, 金世鍾氏]의 金世鍾氏가 있었으나 아깝게도 著述이 없었다. 그러나 上記 諸法式中에서 現在 各分野에서 實用되고있는 法式으로서는 "高麗式" "逸波式" "서울式" "韓國式" "世鍾式" 그리고 筆者가 創案한 "東邦式" 등에 지나지 않는다.

위의 略史를 通해서 볼때 우리나라 速記歷史는 60年이라는 比較的 긴 年輪을 갖기는 하였으나 實際面에서 活用段階인 本軌道로 올려진것은 解放後의 일임으로 우리나라 速記의 中興期는 解放後로 보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實質的인 速記歷史는 不遇 20年이라는 日淺한 歷史밖에 되지 않는다.

〈各養成所의 轉移와 現況〉 解放을 契機로 俄然活氣를 띠기 始作한 速記界는 創案者마다 自己流의 法式을 研究發表한 뒤를 이어 各己 自己法式의 普及을 爲한 養成所設立에 盡力하여 "서울式"의 姜駿遠氏가 서울·東大門區 安岩洞에「서

을식速記研究所)를 “逸波式”의 張基泰氏가 鍾路區鍾路3街에 「逸波式速記士養成所」를 高麗式의 金天漢氏가 中區乙支路3街에 「高麗速記學院」을 “中央式”의 朴寅泰氏가 中區乙支路5街에 「中央速記學院」 “朝鮮式”(現 韓國式)의 朴松氏가 中區南大門路에 「朝鮮速記學院」을 그리고 筆者의 “東邦式”이 中區乙支路4街에 「東邦速記專門學院」을 設立하는 등 各各後輩養成에 온갖 精力을 기울여 오던中 6·25라는 不意의 暗潮에 부딪쳐 各養成所는 全面廢鎖라는 悲運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그러나 “高麗式”의 金天漢氏와 “東邦式”의 筆者만은 動亂中の 諸般隘路를 무릅쓰고 釜山과 大邱에서 各己學院의 看板을 다시 걸고 再起의 旗幟를 올렸으나 時局의 不安定에서 오는 當時의 諸般社會與件은 두 學院에 極甚한 運營難이라는 磨物만을 안겨 주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두 學院은 不得已 從前의 速記士養成이라는 長期教育課程에서 速記普及이라는 短期講習課程으로 後退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는 反對로 “逸波式”의 張基泰氏는 戰時國會가 釜山에서 열리게 될것을 機會로 國會當局의 好意와 協助를 얻어 國會內에 國費(國會豫算)로된 大韓速記學校를 創設하는데 成功하였다. 이 大韓速記學校는 우리나라 速記界에 많은 功勳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反面에 今日의 우리나라 速記界의 不振相을 보이게한 큰 要因이 되기도한 아이로되나 存在이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6·25動亂은 逸波式을 除外한 餘他法式에게는 完全廢門 乃至 窒息死의 寸前狀態에까지 몰아넣는데 充分하였으며, 거기에서 逸波式마저도 4·19後의 新政府에 依하여 廢鎖되고보니 우리나라에는 겨우 두 個의 學院만이 남게되는 暗潮相을 露呈시켰고 그나마도 高麗速記學院까지, 繼續되는 出血의인 運營을 持續할질없이 끝내는 去年가을 廢門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結果 現在로는 東邦速記學院만이 우리나라 唯一한 速記士養成機關으로 남게되었으며, 우리나라 速記界復興을 爲하여 孤軍奮斗하고 있는 實情이다.

3. 새로운 養成方案의 摸索

〈養成機關全滅의 原因〉이 問題는 위에서 그 概略이 既述된바 있으나 여기에 이를 要約해보면 ①다른 學術分野에 比해歷史가 日淺한 速記

界가 미처 그 基礎이 잡히기도 前에 6·25, 4·19 5·16等 時·政局의 큰 變亂에서 받은 影響, ②速記에 對한 國家政策(특히 文教施策)의 缺如 ③國會速記學校(大韓速記學校)의 存立에서 오는 餘波 ④各經營者의 財政難등을 들수있다.

上記原因中에서 ①의 境遇는 2에서 既述되었으므로 여기서는 論外로 하고 ②는 外國과같이 政府에서 特別히 文教當局이 政策的으로 速記暢達을 期하였드라면 오늘날의 速記界는 全히 그 樣相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 問題는 晚時之 嘆의 感은 있으나 이제라도 文教部는 外國의 例를 參考로하여 速記에 對한 認識을 새로히하고 于先各 實業學校에서나마 速記를 必需科目으로 採擇케하여 이의 普及에 努力하여야 할것이고 法務部나 法制處에서는 各級法院, 檢察廳書記, 法律事務所書記, 또는 各搜查機關 및 特殊機關要員等資格規定에서 「速記士라야 한다」는 法的인 規制를 試圖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政策的 缺如는 該當部處의 事務能率을 低下시키는 同時 各分野에의 速記士進出이라는 길을 막는 結果가 되었다. ③의 問題는 위에서 若干言及된바 있으나 大韓速記學校의 存在로 우리나라에 優秀한 速記士(大部分이 現 國會速記士로 在職中임)를 多數養成시킨 功은 높이 評價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當時의 情勢(今日도 마찬가지지만)로 보아 우리나라 速記士의 唯一한 進出舞臺로 알려진 國會를 어느 1個法式이 長期的으로 獨占한 結果는 自動的으로 餘他法式의 萎縮을 招來하는 副作用에 發生을하여 各養成所의 短命을 促求하게 되었다. ④이 問題는 다른 學術分野에서도 흔히 찾아볼수 있는 우리나라 文化事業의 共通的인 特有性이라고 할수있는 現象으로서 速記普及이라는 熱意 하나만으로 初創期의 速記界를 開拓해 보겠다는 信念만을 앞세웠을뿐, 小規模이기는 하나 速記士養成所도 嚴然한 一種의 經營體이고 보면 計數的인 經理面에 너무 어두웠다는 것이 또한 큰 要因의 하나였다.

〈앞으로의 各養成所가 지녀야할 姿勢〉各法式은 協會發足を 契機로 心機一轉하여 火急히 養成機關再建에 힘써야할 것이다. 앞으로 세워질 養成所의 性格은 過去와 같이 各法式別의 獨立體로 設立되는것과 그렇지않으면 協會가 單一設立者가 되어 그 안에 各法式別로된 여러 班을 構成케하는 方法의 두가지가 있을것이다. 要件에

어느 形態의 養成所가 設立되던 間에 모—든 法式은 지난날의 自己法式의 優越性을 宣傳하기 爲한 手段으로서 他法式에 對한 지나친 中傷謀略을 일삼던 惡習에서 大悟覺醒하여 各法式間의 競技大會를 갖는다든가, 또는 共同研究比較討論會를 갖는等 善意의 競爭을 正面으로 벌려 實質的인 實力面에서, 正堂堂하게 그 優劣을 겨루게 하는 새 氣風을 造成하는데 相互間 協力해야 할 것이다. 이리므로써, 各法式間의 研究改良은 繼續될 것이며, 落後된 우리 速記界는 다시 前進을 始作할 것이다.

〈새로운 養成方案〉 速記教育하면 반드시 專門的인 速記講習所에서만 할수있고 또 速記하면 速記術을 職業으로하는 速記인에게만 必要的인 것 이라는— 一般人은 勿論이려니와 一部 既成速記人中에도 이러한 守舊的인 思考方式을 갖고있는 現實에 鑑하여 볼때, 무엇보다도 緊要한것은 이들에 對하여 速記는 職業速記士가 아닌 一般人에게도 各己의 日常生活周邊에서 끊임없이 活用例하면 學生들의 學校筆記에, 取材하는 記者에게, 簡單한 商業用, 또는 모—든 電話 메모에 秘密을 要하는 日記帳에 等等— 할수있다는 啓蒙普及教育이라 하겠다. 이 啓蒙·普及의 가장 捷徑의 方法은 亦是 感受性이 豊富하고 對象者가 많은 學生層에 파고드는 것이 效率的인 아닌가 生覺된다. 왜냐하면 東邦速記學院이라는 單하나의 養成機關밖에 없는 現實下에서 速記人口의 多量生産이란 到底히 바랄수 없기 때문이다. 學生層에의 急速하고도 廣範圍한 浸透方法으로는 먼저 全國中·高·大의 各級學校에 對한 巡廻普及講義를 施行하여 可能한 限 各學校에 速記部를 新設케하여 各學校間에 또는 各個人間에 競爭心을 誘發시킬 수 있는 各種競技大會(여기에는 微密한 企劃과 用意周到한 運營을 要함)를 適切하게 갖는다면 最短時日內에 全國的으로 速記熱을 波及시킬 수 있는 同時에 速記를 習得한 學生 個個人에게 있어어도 저어도 高等學校를 卒業할 때에는 이미 正速記士(1分間에 300字以上記錄可能者)로서의 實力者가 되어서 바로 社會職業戰線에 突入할 수 있는 態勢가 갖추어지는 그야말로 一石二鳥의 成果를 갈우게될 것이다. 이와같은 方法은 速記界 年來의 宿願이던 速記士의 資質向上이라는 宿題도 아울러 解決되는 한便 速記習得過程의 가장 큰 缺點으로 알려진 “지루한

感을 느끼지 않고 스무—스하게 마스터 할수있는 새로운 養成方向을 提示해 주기도 하면서 急激한 速記人口의 增加를 促進해 줄 것이다.

〈結言〉 위의 새로운 養成方案을 推進시킬려면 무엇보다도 既成速記人들의 積極性을 띤 獻身的인 實踐努力이 要望된다.

이제 모—든 速記人들은 現行法上에 規定된 文敎部令 第121號(63.2.15. 高等學校教育課程의 職業課程選擇者에게 男子 9單位 女子 6單位以上 商業課目을 課할수 있게되었음), 同第122號(63.2.15. 實業教育課程에서 速記가 4~6單位가 配定되었음) 다시 教育法施行令 第166號(技術學校 또는 高等技術學校에서 教育을 實施함에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科目으로 速記가 들어있음)의 實行을 無誠意한 文敎部의 處事에만 期待할것이 아니라 이의 實踐達成을 爲하여 各自의 力量을 總集結시켜 速記人 스스로가 爭取하겠다는 態勢를 갖추어 邁進해야할 것이다라 본다. 여기에서 만이 비로서 速記의 普及은 그 實現을 보게될 것이며 또한 有能한 速記士는 養成될 것이다.

(本協會副會長·東邦速記學院長)

(18面에서 계속)

일이라 하겠으며 이미 所定의 學歷을 가지고 速記術을 習得한 速記士에게 調書作成의 訓練을 시키는 것이 가장 마르고 合理的인 方法인 것이며 이에서 輩出된 法廷速記士는 前述한 法廷速記의 事務를 擔當하고 이 以外의 事務는 法院書記가 擔當함으로서 事務處理의 迅速과 適正公平을 期할 것이며 또한 法院書記의 人間性 良心에 呼訴치 않더라도 事實記錄이 完成되어 實質上의 證據能力을 가지고 判決에 큰도움을 줄 것이다.

結論的으로 本人은 法院에 있어서의 法廷速記制度는 的確한 判決人權의 保護를 爲해 眞實히 要求되는 것이므로 하루速히 採擇되기를 希望하며 “書記”外에 “法廷速記士”란 用語가 새로이 民事訴訟法과 刑事訴訟法 軍法會議法上에 特種을 붙 날을 期待 하는 바이다.

(國會 事務處 勤務)

速記法式展覽

法式紹介

<沿革>

姜駿遠式(俗稱·서울式)은 32年前인 1635年 6~7兩月間에 걸쳐 東亞日報紙上에 長期連載發表된 우리나라 最初의 實用法이며, 解放直後부터는 立法議院·國會에서 本格的으로 教授多數의 後進을 輩出하고 年次의 溫習會에서 新案이 討議되어 公定公用하는 學風을 가진 法式이며 特徵으로는 ① 自然運筆이며 ② 基本文字에는 圓·鉤가 아니 붙으므로 單劃派에 屬하는 것이 며 速記法의 3速의 要件 3正(易速學, 易速書, 易·速讀)에 適應되고 素材分析과 開發에 新案이 많은 法式이다.

<基本文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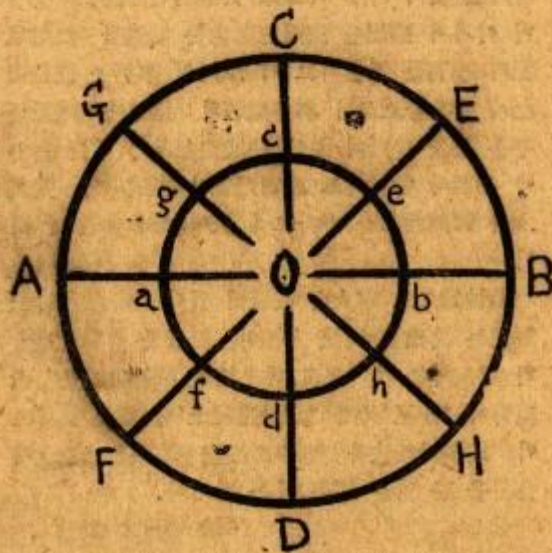
..... 子音은 15°上右向인 6mm 길이
 子音線 의 右卷上曲線·左卷 下曲線의 直線을 먹음은 橢圓을 源圖로 하고 그 倍長에 12mm의 大橢丹과 이에 加大한 15mm의 竹葉形橢圓으로 構成되는데 加大는 大의 一類로 보아 小橢圓 大橢圓의 兩分으로 認識하여 實際는 6線을 示差線으로 定한 것이다.

여기서 지킬 것은 小「ㄱ」對 大群大「ㄴ」과 加大「ㄹ」과는 混同될 수 없는 1:2:2.5로 하되 熟練後에는 2와2.5인 「ㄴ·ㄹ」「ㄱ·ㄹ」「ㄱ·ㄴ」은 各通音이니 類線으로 쓰고 읽어 아무 支障이 없는 것이다.

高麗式 速記法은 金天漢氏 創制로 1946年 完成되어 우리나라의 初創議會인 立法議院 時代로부터 創案者 自身이 利用해 오던 것으로 創案者인 金天漢氏는 日帝時 와세다(무稻田)式 速記를 習得하여 日本 同盟通信社 所屬의 有能한 速記士로 活躍한바 있다.



[分布圖]



日帝時 부터 우리말 速記의 必要性을 痛感해 오던 創案者는 드디어 1954年 8.15解放과 더불어 祖國光復을 보아 高麗式 速記法(一名 金天漢式)을 世上에 내놓게 된 것이다. 그후 數次에 걸친 補正과 研究로써 오늘의 所謂 高麗式 速記法이란 名命을 보게 된 것이다.

本速記法은 大體로 總綱과 基本文字, 略記法, 文法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紙面關係로다가 一一히 具體的으로 說明을 加할 수 없으나 基本形態와 主要 骨子에 對한 紹介를 하므로써 速記同人들의 參考에 資하고자 한다.

[速記文字의 分出]

대체로 本法 速記文字의 分出은 左示의 分出圖와 같은 一個의 圓을 8等分한 直經線上에서와 또는 各圓의 弧를 利用하여서 基本文字를 分出시킨 幾何圖派에 屬하는 類型이다.

一音一筆(字)主義를 原則으로 하되 比較的 速記基本文字는 複雜한 느낌을 주게 된다. 基本의 原形文字는 各行마다 單音 8字(ㄱ, ㄴ, ㄹ, ㅁ, ㅂ, ㅅ, ㅇ, ㅈ)

암만 線材가 있어라도 萬一 이通音에 類線의 割當이 없었다면 互用性이 없어 速記를 쓰고 읽지는 못할 法式이 되었을 것이다.

9個의 主子音은 各各 副子音들인 激·硬으로 나누어 通音類線으로 쓰기인데 여기서는 補筆法을 取한다. 즉 激音은 左下向베침을 字中間에 交叉하고 硬音은 右下向베침을 字中交叉한다. 물론 熟練後는 加線을 省略하게 되는데 結局 主子音인 平音은 代表音으로서 無點인 셈이다. 「ㅁ」은 英字 "m"과 같은 子音으로 追加 制定한다.

..... 母音은 따로 線을
母音向 加하지 않고 進向한
..... 으로 한다. 이런 例外 없는 規例는 世界最初의 試案으로서 母音을 主音 主義로 하는 우리 말에서 처음 成功한 것이다.



水平을 主向으로 한 上 15°와 下 15°의 右向群 3方向과 垂直을 主向으로 한 右 20° 左 20°의 3方向을 合한 6方向으로 하여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를 除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를 順次로 바람개비形으로 時計針돌듯이 合向-單-線으로 平音 9線×6方向으로 54字가 1音節이1線이되어 初學者에게는 그야말로 너무 簡單해서 어리둥절하다는 第一印象을짓는 것이다.

激·硬音 11線×6方向으로 66字를 構成하는데 類度는 平音 80, 激硬音 20의 比이다. 여기에 例外로 「부브」는 「그」字에 左點을 「부브」는 「그」字에 右點을 찍기인데 大直線의 下向傾向을 막아 右向橫書인 速記書行을 維持하게 하였다.

速記法式展覽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2字로써 한줄로 삼았으며 各 줄의 基本 分出線은 原則的으로 分出圖의 同一線을 利用한 것이다. 그리고 基本 文字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의 9行으로 局限시켰고 濁音文字나 激音 硬音文字 等の 基本文字는 原則的으로 原形文字(가~자)의 基本 分出線을 再活用하였다. 다만 附點位置의 如何로써 그 原形文字의 된소리 文字를 삼은 것이다.

즉 「가」行은 單音에 있어 A~B線(→)을, 重音은 G~A~F線(↙)을 割愛했으며 2 「나」行은 F~D~H↘線을 單音, 重音에 混用했으며 「다」行은 特히 重音을 만들지 않는 대신에 1. 法을 만들어 1法 「다」行을 F~O~E↗線, 2法을 E~O~F↙線을 利用하였다. 「라」行은 C~E~B↘線을 利用하였으며 「마」行은 G~C~E↗線, 「바」行은 單重音 別個의 線을 利用하여 單音에 있어서는 A~F~D↘線을, 重音을 C~G~A↙線을 活用하여 만들었다. 「사」行은 單·重音 共히 E~B~H↙線을, 母音들인 「아」行은 그 類度의 높음에 따라 各其 文字를 分出圖의 小內圓線을 各 各 活用 하였다 다만 重音文字만은 A~G~C↗線을 利用하여 分出시켰으며 原形文字의 글줄인 「자」行은 單音만을 認定하였으며 「다」줄과 같이 1, 2法을 제정 1法文字는 D~H~B↗線을, 2法文字는 B~H~D↙線을 活用하였다.

以上으로써 基本文字에서의 原形文字의 分出에 對해서는 그 概要가 說明되었는데 各行마다의 文字의 構成은 어느줄 文字나 같은 構成原則에 依해서 제정되었다.

基本文字나 略文字도 大體 . 그 文字는 線과 圓으로 組合되어 있는데 그 原則을 길이(長)에 있어 5mm, 10mm, 20mm의 세단계로 區分하여 定하였고 圓에 있어는 小圓(직경 2-3mm), 大圓(직경 5-6mm), 橢圓(長經 5-6mm)의 3種類로 定하여 利用키로 하였다. 이를 附



姜駿遠式

발
붙임 符號 칠은
基本文字線과는 달리
字頭に 符號를 加하
르 붙침이라고 부르며
별저 文字와 붙침은
視覺으로 判異하고 따
라서 表意의 效果化조차 나타난다.
符號는 그 自身의 方向이 없고

母字線에 덧붙은 뿐 그範圍가 주어지지 않는다. 붙침은 側面은 붙침기 順便한 側面 即 順側에 加頭符하는 原則에 依한다.

副母音重中聲인「ㄱ ㅋ」는 母音이지만「ㄱ」에 덧붙는 先後音을 小鉤로 規定하고 小圓과「ㄷ ㅌ」가 덧붙을 때는 主·副母音表에 보드시 副母音은 加點·加線으로 補筆法을 取하며 符號가 字間에 올때 流筆로 쓸 수 있는 것은 大小小鉤뿐이고, 「ㄹ」의 大圓·小圓은 筆勢上 立그러져서 橢圓形이 되지만 그러데로 좋은 反面에 元來 大小 橢圓인「ㅂ·ㅇ」은 「內點」이나 「外點」으로 하고 加尾小圓「ㄹ」은 小分離로, 加尾大圓「ㄷ」

直径比 직경 面積比 正母 鉤 橢圓 尾母 尾符

小	1	1mm	1	○	ㄱ	ㅇ	ㅇ	ㅇ	ㅂ
大	3	3mm	9	○	ㄱ	ㅇ	ㅇ	ㅇ	ㅂ

개	ㄱ	ㅋ	가	카	아	리	해
ㄱ	ㄷ	ㄷ	감	담	참	희	고
ㄹ	ㅇ	ㅇ	찬	진	중	서	4중
ㄷ	ㅂ	ㅂ	달	살	달	뚝	뚝

加시키는 것은 文尾에 附加키로 定하였고 單線그대로의 文字나 小圓附加의 文字나 大圓附加의 文字 橢圓附加의 文字列의 選定은 그 文字의 頻出度를 考慮하여 定하게 된 것이다.

即, 單音, 重音의 同列 文字는 같은 筆法과 構成을 原則으로 하여 「ㄱ, ㅋ」는 10mm의 單線으로 써 되고 「ㄷ, ㅌ」는 10mm의 單線에다 小圓을 附加시키고 「ㄹ, ㄷ」는 10mm의 單線字尾에다 大圓을 덧붙여서 되며 「ㄷ, ㅌ」는 20mm線에다가 小圓을 附加한 것으로서 「ㄷ, ㅌ」의 文字와 같은 형태이나 길이는 2배가 되고 그 字尾에 附加되는 小圓은 같은 小圓에 지나지 않는다. 「ㄹ」字는 10mm 單線文字 字尾에 橢圓을 適宜 附加하여 만들었으며, 「ㄷ」줄은 모두 20mm單線을 利用하여 실제 「ㄱ ㅋ」의 2배의 길이가 되도록 하였다. 本法의 特異性은 「ㄱ, ㅋ」를 原形文字構成에 追加하여 만들은 것으로 「ㄱ」는 5mm單線을 利用하여 「ㄱ」의 切半의 길이가 되고 「ㅋ」는 「ㄱ」에다 小圓을 붙인 것으로 5mm線에 小圓을 附加시켜서 실제 「ㄱ」의 切半의 길이가 되나 小圓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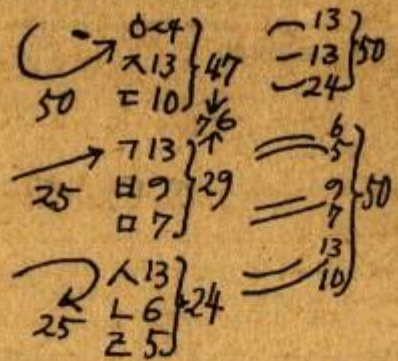
이러하여 本法의 基本文字中 原形文字를 分出 構成하였는데 그 基本文字의 字數는 實用文字 106個의 文字가 된다. 또한 基本文字에 屬하는 發音文字는 獨單으로 소리가 나는 文字가 아닌 것으로 이 發音을 單獨으로 쓸 수는 없고 文字에 接屬 또는 附加시켜서 만들은 것이다. 또한 發音은 한글 發音의 數文 28個의 發音을 모두 定하지는 않고 그 끝소리값(終聲音價)이 같이 나는(들리는)는 發音은 하나의 發音으로 混用하여 쓰기로 하여서 실제 速記發音 文字는 7個로 局限하여 音價대로 筆記토록 한 것이 한글 맞춤法과 다른 點이다.

即 發音文字는 「ㄱ, ㄴ, ㄷ, ㄹ, ㅂ, ㅅ, ㅇ」의 7個만을 쓰는데 「ㄱ」發音은 餘他的 發音 ㅋ, ㆁ, ㆅ 등을 쓰기로 하였으며 「ㄴ」은 「ㄴ, ㄸ」 등을, 「ㄷ」은 경우에 따라 「ㄷ, ㅌ, ㄷ, ㅌ, ㅌ, ㄷ, ㄷ, ㅌ」 등을 같이 混用키로 하였고, 「ㅂ」는 「ㅂ」을, 「ㅅ」은 「ㅅ, ㅆ, ㅆ, ㅆ」 등을 쓰게 되고 「ㅅ」은 「ㅅ, ㅆ, ㅆ, ㅆ」 등을 쓰고 「ㅇ」은 混用發音은 없으나 앞으로 익숙시키면 省略키로 한 것이 特異하다. 그러나 固有名詞, 地名 등은 混同의 虞가 있으므로 제대로 發音을 附加시키고는 있으나 一般

오히려 덩벼들어 小交叉로 處理한다.

덧붙여 母音인 「과」는 「ㄱ」에 逆側「加點」 「거」는 「ㄱ」에 逆側加點, 「기」는 「ㄱ」順側에 「기」배침 「비」는 「ㄱ」順側에 「고」배침으로 한다.

..... 基本文字는 狀·向 어느 面에서
左卷運筆 나 左卷橫書가 스스로 되어다가도
..... 륙 70~80%의 確率이 잡혀 있다. 以上 子音「線」의
主勢와 性向을 보면 左卷便度를 50%로 보아 「ㅇ」 24.
% 「ㅈ」 13%, 「ㄷ」 10%로 左卷이 47%이며 여기에
直이 어울려 「기」 13%, 「비」 9%, 「미」 7%로서



29%, 즉 47%+29%로 76%의 頻度가
어울려서 3/4의 뚜렷한 左卷劃調를 세웠
고 小·大別로는 小가 50% 大가 50
%으로 落着, 「進向 또한 右向端「ㄱ」 30
「ㄱ」 25 「-」 15로 70이며 實字線은 「ㄱ」
가 31 「ㄱ」가 22 「ㄱ」가 13으로 66인데
저기에 度이 右向進을 위한 反撥로서의
便更 「ㄱ」向 20에 實頻度가 82% 「ㄱ·
-」 18%만이 左卷橫書를 阻害하고 있
나 「먹으며」 「먹어서」등의 「아어」行音
語尾들의 「어어」를 不書而讀(쓰지 않고
도 읽기(하므로서 潛影되고 마는 것이다

가 륙을 나·라
) 륙는 나·라
ㅇ 륙에 나·라
ㅇ 륙이 나·라
ㅇ 륙로 나·라
과와 나·라
기 나·라
자 나·라
나 나·라
등등 나·라
지 나·라

速記法式展覽

的으로 「ㅇ」은 省略하여도 反文에 混用되는 例가 稀少하다.

이리하여 高麗式 速記法에 있어서의 基本文字 說明은 大略 끝난 셈이다. 實記文字를 例示치 못하
는 관계로 理解키에 어려울 것 같으나 速記를 아는 이들일것으로 대충 납득이 갈것으로 안다.

[略記法]

細分하여 說明 紹介하자면 限이 없을 것 같아 常用文字나 略記法이나 省略法이나 其他 文法等을
동원해서 몇가지 特色이 있다는 略法式만을 여기서 紹介하고 高麗式 速記法의 紹介를 마치고자 한다
略記文 法篇에서 우선하여 알아야 할것이 基本文字를 變形시켜서 만들어진 基礎的인 略文字와 頻度
가 많은 그리고 基本文字가 速記에 不適한 文字를 特定하여 만들어진 特定文字가 있으며 또한 받침 文
字의 소리(音)를 活用擴大하여서 文字化한 받침 活用擴大法이라든가 또는 固有, 普通名詞이긴 하나 略
略字化해야 速記 本然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라는 文字等의 略字가 있다.

勿論 上記한 變字나 特定文字나 略字나 받침文字等은 基本文字의 테두리內에서 科學的으로 檢討分
析하여 制定한것으로 習得에 容易한 方便으로 되어 있다.

以上이 初步的인 一篇에 묶어야 할 略法篇으로 以上の 것만을 充分히 活用하여도 1分時 250字 內
외는 速記할 수 있는 實力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點位線를 活用하는 附點位置 略記法이 있는바 한字 또는 數字의 文字를 어떤 位置로써
表記하는것으로 다음에 文字가 계속되는 때에는 그 位置 附點을 省略하고 그 자리로부터 다음字를
速記하면 自動的으로 位置略法을 쓰게 되는 것이다. 要는 文字를 一一히 쓰지 않고서도 文字를 反文

되고 그 數는 650助辭에 이른다.

..... 이주 複音으로 된 助詞로
特定助辭 せ 文例 ① “한수밖에, 自然
 스러워서, 그까답에, 自己를 위해서라면, 微微
 하나마, 에對하고 있으니, 오기는커녕 ② 라는
 것이, 메도不拘하고, 西洋을 비롯하여, 그르말미
 암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것은” 外에, 따
 림, 망정, 면서, 끼리, 때문, 보다, 부터, 처법
 등은 基本文字를 그대로 速書하고 「에」가 先行
 하는 「에 關하여 에 不遲하. 에 比하. 에 있어서,
 에 依, 에 지나지 않으」 등은 「에」를 안 쓰고도
 速書하여 正讀할수 있게 하고 「것」이 先行하는
 「는것, 려는것, 느냐는것, 라는것, 라는것」등도
 一見하여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한편 「를 枯捨하고, 르因해서, 로하여금, 와
 더부러, 고실으, 기실으, 기종으, 도종으, 지않
 으면 안되」 등은 따로 特定하였다.

..... 本來 그 람은 位置를 겨우
位置語法 無體系하게 한개 發言을 위
 하여 쓰던 것을 表意의 助詞位置로 定하여 既習
 한 助詞들을 그대로 順側·逆側(素材論參照)을
 찾아 表意化하여 正書速讀하게 하였다. 類出이
 며 語法上으로 決定的인 助辭인 「되, 하, 이, 시,
 같, 히리기」의 六位置法을 一般法으로 하고
 다시 位置의 特定法으로 「생각·있·없」와 「지
 +않·못·말」의 位置語等を 體系化하였으며,
 接頭詞, 또는 冠形漢字로 規定되는 「大不否·非
 未·無·全·現·한·아니·안·못」들의 位置에
 依한 表意化는 速記를 뚜렷한 表語文字로 만든
 것이다.

..... 縮字法으로는 우리말의 半量
無書而讀 이 語初받침이 붙으며 받침
 頭符制를 取하면 역시 半量은 語初加符를 해야
 한다는 計算이 나오지만 一切頭符는 潛影하는
 法이 前提되어 있으니 이는 돌아볼침法과 語間
 붙침位置法때문이다.

① 鼻音群 「ㅇㄴㅇ」의 通音받침이 前後音에
 같이 올때는 前字中間에 後字頭交又로 나타내고
 (圖7) ② 破裂音群 「ㄱㅅ」은 前字中間에 後字
 頭가 接觸만시켜 나타낸다.

..... 速記에 있어서 縮字法은
略字僅少 無時·隨時로 活用되는 것이
 나 語形이 固定되는 略字는 形線에 示差가 적은
 것은 禁物이고 頻出度가 없는 略字를 미리 制定
 하여 골치를 썩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本法에서는 主로 類出代名詞, 副詞,
 冠形詞, 接頭語와 若干의 名詞들을 上段·最大
 線·獨立符號·獨立小線에 配定하고 「아시다시
 피·하루빨리·누구누구할 것 없이·自他가 共
 認하는·例를 들어말씀하면」등 慣習語句를 略字
 및 交刃法으로 處理하였다.

文例(圖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이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러분의 誠心誠意로 自己일
 처럼 努力하신 結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의 43
 音節을 15劃으로 썼으니 1劃 2.88音節(2中大空
 筆이 4小離筆이 3)로서 餘裕있게 正確히 쓰고 또
 읽을수 있는 通常의 任意 速記文例이다. 여기서
 도 左卷→弧7. 直4, 右卷弧3으로 線勢確率이 두
 렷이 나타난다.

<創立總會全景>



<創立總會 會長人事>



로 定하였고

이中 「ㄱ·ㅋ·ㆁ·ㅇ」의 4字는 太線文字로 남어지는 細線文字로 또 「ㅏ·ㅑ·ㅓ·ㅕ·ㅣ」는 文字머리에 半小圓을 붙이게 하였다.

이 半小圓이 붙는 「ㅏ·ㅑ·ㅓ·ㅕ」를 注視하면 實際使用頻度面에서 볼때 全혀, 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文字가 그 殆半以上임을 알 수 있다. 卽「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타·파·너·더·석·저·쳐·터·도·표·쇼·조·초·코·료·뉴·듀·류·부·슈·쥬·유·큐·류·듀」等 35字는 完全 死文字이고 「야·하·겨·러·머·벼·여·켜·펴·혀·고·노·료·모·요·표·요·규·류·유·쥬」等 21字는 其使用頻도가 極히 낮은 便임으로 實際面에서 半小圓이 붙는 文字는 「ㅣ」列의 「기·니·더·리·미·비·시·이·지·치·키·티·피·히」等 14字로 大幅減少됨으로 半小圓 文字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 重母音의 變遷 「ㅐ·ㅑ」는 5mm 「거」는 10mm 「거 거」는 15mm로 全部 反側에 半小圓을 붙이게하여 重音을 表記한다.

本法式의 받침 法에서는 받침 가진 文字가 먼저 나올 때에는 7個의 받침 모두가 文字 先頭에 놓이게 되어 있으며 또 모든 받침 가진 文字가 中間이나 끝에 나오면서 連綴될 때에는 7個의 받침 全部가 받침 省略法에 依하여 그 形體가 없어지고 만다. 紙面의 制限으로 여기에 直接 文例를 들어 圖解치 못함을 遺憾으로 生覺한다.

以上에서 簡單히 本速記法式의 基本이 어떻게 構成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2) 略 法

그러나 上記한 基本文字만 가지고는 1分間에 2百4·50字밖에는 表記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1分間에 300~350字의 發音速度를 따짐 없이 完全 速記하려면 必然的으로 略法이라는 보다 簡單한 略記方法을 다루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本法式의 略法을 大別하면 組織的인 것과 實利主義的인 두가지로 나누어지며 組織的 略記方法이란 言語學的 根據를 가진 文字連綴의 變化法則을 體系的으로 整理하여 만들어 진 科學的인 略法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장높은 使用頻도를 보

이고 있는 「動詞略字」를 비롯해서 「形容詞略字」「接續詞略符」「四字略法」「最長線略字」等이 있다

또 實利主義的 略記法이란 頭腦의 直覺的인 活動範圍를 미리 設定하여 놓고 여기에 適應한 略字·略符를 만들어서 何等의 思考力을 요치않고 또 自動的으로 손 끝이 움직여 나갈 수 있을 때 까지 暗記 練習케하는 方法을 말한다. 一見 甚히 非組織的이고 非科學的인 幼稚한 方法으로 看做되나 實際 活用面에서 볼 때에는 도리어 前者의 組織的 略記法을 凌駕할 수 있는 大端히 能率的인 略記法이라 할 수 있다.

이 實利主義的 略記法으로는 「一般周知語省略法」과 「簡易略符」「助詞略符」「數詞略字」「中間略符」等이 있다. 以下 順序的으로 各略字 略符를 要約說明한다.

A. 動詞略字

本法式이 가장 자랑으로 삼고 他法式의 追從을 不許하는 動詞略字는 「一般動詞」와 「特殊動詞」로 나누어져 있다. 「一般動詞」란 「간다. 안다. 본다」等의 動詞로서 그 머리글자인 「가·아·보」字만을 動詞位置인 下線에다 씌우므로 各己의 動詞를 表記시키는 方法을 말하며 「特殊動詞」란 使用頻度率이 가장 높은 「있다. 없다. 된다. 앎으면 안된다」等 動詞의 머리글자가 本法式 速記文字로 보아서 半小圓이 붙거나 그렇지 않으면 重音 또는 받침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無數하게 變化되는 過程을 表示하기 困難함으로 좀더 能率的으로 變化시키기 爲해 쓰기 쉬운 全혀 다른 글자를 갖다가 使用한 것을 말한다.

一般動詞거나 特殊動詞를 不問하고 本法式에서는 모든 動詞를 크게 가로 「現在, 過去, 大過去, 未來, 規定, 意思表示, 可能, 推測, 否定」型的 9個로 나누었고 다시 이것을 各型別로 세로 34個式的 語尾變化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한個의 動詞變化數는 $9 \times 34 = 306$ 이라는 實로 놀라운 數字를 提示해 준다. 그러나 아무리 龐大한 數字의 動詞變化라 할지라도 略字構成이 至極히 簡單한 公式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無難히 記憶하는 同時에 손쉽게 活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參考로 「한다」動詞의 例를 들어 그 變化過程의 一部를 살펴본다.

東邦式

現在	過去	大過去	未來	規定
한 다	하였다	하였었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1 하며	1하였으며	1하였었으며	1할 것이며	1하는 것이며
2 하니	2하였으니	2하였었으니	2할 것이니	2하는 것이니
3 하나	3하였으나	3하였었으나	3할 것이나	3하는 것이나
4 하고	4하였고	4하였었고	4할 것이고	4하는 것이고
5 하는데	5하였는데	5하였었는데	5할 것인데	5하는 것인데
6 하지	6하였지	6하였었지	6할 것이지	6하는 것이지
(1)하면	(1)하였으면	(1)하였었으면	(1)할 것이며	(1)하는 것이면
(2)하니까	(2)하였으니까	(2)하였었으니까	(2)할 것이니까	(2)하는 것이니까
(3)하느냐	(3)하였느냐	(3)하였었느냐	(3)할 것이냐	(3)하는 것이냐
(4)한다고	(4)하였다고	(4)하였었다고	(4)할 것이라는	(4)하는 것이라고
(5)한 다는데	(5)하였 다는데	(5)하였었다고	(5)할 것이라는데	(5)하는 것이라는데
(6)하는지	(6)하였는지	(6)하였었는지	(6)할 것인지	(6)하는 것인지

意思表示

- 하겠다
- 1하겠으며
- 2하겠으니
- 3하겠으나
- 4하겠고
- 5하겠는데
- 6하겠는지
- (1)하겠으면
- (2)하겠으니까
- (3)하겠느냐
- (4)하겠다고
- (5)하겠 다는데
- (6)하겠는지

(以下省略)

可 能

- 할 수 있다
- 1할 수 있으며
- 2할 수 있으니
- 3할 수 있으나
- 4할 수 있고
- 5할 수 있는데
- 6할 수 있지
- (1)할 수 있으면
- (2)할 수 있으니까
- (3)할 수 없느냐
- (4)할 수 있다고
- (5)할 수 있 다는데
- (6)할 수 있는지

否 定

- 할 수 없다
- 1할 수 없으며
- 2할 수 없으니
- 3할 수 없으나
- 4할 수 없고
- 5할 수 없는데
- 6할 수 없는지
- (1)할 수 없으면
- (2)할 수 없으니까
- (3)할 수 없느냐
- (4)할 수 없다고
- (5)할 수 없 다는데
- (6)할 수 없는지

推 測

- 하였을 것이다
- 1하였을 것이며
- 2하였을 것이니
- 3하였을 것이나
- 4하였을 것이고
- 5하였을 것인데
- 6하였을 것이지
- (1)하였을 것이면
- (2)하였을 것이니까
- (3)하였을 것이냐
- (4)하였을 것이라고
- (5)하였을 것이라는데
- (6)하였을 것인지

上記外에도 우리말 動詞에는 所謂 複合動詞라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等 數多한 複合動詞가 使用되나 上記 9個型의 變化한 完全把握하면 이러한 複合動詞는 自動的으로 解決된다. 即 「할 수 없었던 것이다」를 分解하면 「할 수 있다」의 可能型에다 「過去」(었다) 및 「規定」(는 것이다)의 3者가 結合한 것에 不遇하며 「할 수 없을 것이다」는 「할 수 없다」의 否定型에다 「未來」(는 것이다)가 結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複合動詞의 數도 相當數임으로 우리말 動詞의 變化가 얼마나 甚大하며 또 까다로운 가를 端的으로 말해 주는 것으로 本法式에서 이 動詞略字 構成에 全力을 기울여 여러한 動詞의 變化라도 自由自在로 動詞略字를 驅使할 수 있는데 成功하여 이를 자랑으로 삼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B. 形容詞略字

形容詞略字는 우리말을 漢字로 表現시키면 單한字로 表現시킬 수 있다는데 着眼點을 두어 만들어진

것이다. 例를 들면 「아름답다」의 4字를 漢字의 「美」(미)의 漢字로 表記하는 것으로 그 位置는 形容詞位置인 上線에다 쓴다. 形容詞 아닌 「우리나라」도 「我國」(아국)의 二字로 應用使用한다. 要는 上記와 같이 漢字로 利用할 수 있는 것은 모두 上線의 位置에다 쓴다.

C. 接續詞略符

接續詞略符는 一個의 句節과 句節을 連結시키는 接續詞를 略하는 것인데 이 接續詞中에는 반드시 한 個의 助詞에다 붙여서 使用되는 接續詞들이 있다. 이것을 추리가지고 그 固定된 助詞에다 各己相異한 位置에 一個의 點을 찍음으로서 그 接續詞를 略하는 方法이다.

D. 最長線略法

最長線略字는 主로 單語를 單位로한 「名詞. 熟語」等에서 極히 頻度數가 높은 것을 모아 그 첫字의 長이를 特別히 長게 (約25 mm~30mm)함으로서 그 單語를 省略하는 略記法이며 記憶과 活用이

東邦式

容易함으로 政治, 經濟, 社會, 科學等 各分野의 專門術語를 廣範하게 適用시켜 使用한다.

F. 四字略符

四字略符란 四字로 構成된 「感慨無量」「一瀉千里」「三尺童子」「虎視眈眈」等 常用되는 것을 골라 첫 두字만 써주고 나머지 두字는 하나의 符號로써 略해버리는 方法을 말한다. (以上은 組織的略記法)

F. 助詞略符

本法式이 他法式에 比해 뚜렷한 差異를 갖는 異法中의 하나가 이 助詞略符이다. 本法式에서 의 모-든 助詞는 助詞가 붙는 앞 文字의 末尾에 極히 簡單化한 形의 略符를 連結시키게 되어 있음으로 他法式에 比해 한字乃至 두字의 勞苦를 덜수 있는 長點이 있다.

G. 一般周知語省略法

比較的 길게 繼續된 語句로 누구나 一般적으로 잘 알려져있는 俗語, 聖賢, 哲人, 詩人等의 發讀判可能한 程度로 最初의 몇 字만을 쓰고 나머지 글자를 全的으로 略하는 方法이다.

H. 中間略符

平均 4字以上 6,7字로된 語句中에서 使用頻도가 높은 것을 추려 가지고 그 語句의 첫字와 中間 글字 하나를 特殊한 連結方法으로 連結시켜서 나머지 글字들을 略하는 方法이다. 例하면 「이와 같이」「아시는 바와 같이」 등에서 「이와 같이」의 「이」字와 한字 건너서 나오는 세번째의 「가」字를 特殊連結 시킴으로서 「와」字와 끝의 「이」字를 略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亦是 첫字인 「아」字와 中間 글字인 「바」字를 特殊連結 시킴으로서 「시·는·와·갈·이」의 5字를 省略시킨다.

I. 簡易略符

이 略符는 主로 各種會議 또는 座談會 같은 데에서 意外로 많이 使用되는 雜多한 말을 頻度率에 따라 基本文字와는 그 形體를 달리하는 極히 簡單化한 略符를 말하며 이 簡易略符의 活用量은 多大하다.

J. 數詞略字

百, 千, 萬, 億單位等的 固定된 "0"을 略하는 單位省略法, 또는 우리가 現在 日常 使用하고 있는 아라비아數字記錄方法으로는 到底히 表示할 수 없는 2, 3 또는 2, 3), 3, 4百 等的 不定

數字를 다루는 方法, 其他 數字와 密接한 關聯을 맺고있는 「%」「‰」等 여러가지 記號를 略하는 方法이다. (以上은 實利主義的略記法)

以上으로 本法式의 主要略法에 對하여 簡略하게 說明 하였다.

끝으로 說明할 것은 本法式에서는 文字의 쓰는 位置를 「上線·中線·下線」의 세 段階로 나누었다. 이것은 只今까지 數多하게 說明된 各樣 各色의 모든 略字도 分析하고 보면 하나의 基本文字에 지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上記의 數多한 略字를 一般 基本文字와 同一位置에 羅列시켜 놓는다면 略字라는 特殊한 存在를 나타낼 수 없게 됨으로 一般文字와 混同되지 않는 略符만을 基本文字와 同一位置에 쓰게 하고 基本文字로 된 形容詞略字는 一見하여 그것이 形容詞略字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 位置를 基本文字 連綴位置보다 若干 높은 位置(約 5mm程度)에다 쓴다. 이것이 곧 上線이다.

下線이란 上線과 마찬가지로 基本文字로 된 動詞略字]만을 쓰는 位置로서 元位置 보다 約 5mm 程度 내려서 쓰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中線은 基本文字를 綴하는 元位置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圖解하면 아래와 같다.

上線……(形容詞略字 및 漢字應用略字位置)
中線(書線)——基本文字 및 各種略符位置
下線……(動詞略字位置)



<本協會 總務部長>

金 基 英

세종식

1. 沿革

세종法式은 金世鍾氏가 創案한 法式이다. 日本早稻田大學에 留學中이던 先生이 1938年 早稻田速記法式을 習得 中國 上海에 건너가 海林中學校에서 敎鞭을 잡고 있던중 當時 初創期에 있던 中國發音記號式速記에 早稻田法式을 紹介 貢獻한바 크며 現在 中國에서 使用되고 있는 快筆速記를 習得 祖國先復과 더불어 歸國日本 早稻田式과 中國 快筆速記를 混合取括하여 1950年 2月 3日 創案發表해 낸것이 세종法式이다.

先生은 비단 速記뿐만 아니라 한글 筆記體 改善에도 뜻을 두어 研究했던 바 1955年 10月項 「한글 돌림체法」을 都下 各新聞에 發表하여 뜻있는 분들의 注目을 끌기도 하였다.

또한 先生은 1957年 2月 暗記式 珠算法을 發表한바도 있다.

先生은 젊은이 못지않은 多方面의 精力家로서 全國 坊坊曲曲을 巡廻하며 上記創案을 發表하여 各界에 普及을 試圖하였던바 1958년에는 當時 文敎部長官과 한글 學會의 感謝狀을 받은바도 있다.

金世鍾先生은 1960年 沒하였다.

2. 法式內容

세종法式은 先生 生前에 네차례에 걸쳐 改良된 것으로 이 法式의 特色은 母音制用語이다. 即 語頭는 基本文字로 쓰되 語頭다음에 나오는 音은 받침 方向으로 母音化시켜 速力을 내게 하는 法式이다.

이 法式은 ①基本文字 ②받침 ③法音制用法 ④略法 ⑤辭法 등 五段階로 나누어져 上記한 바와 같이 三段階인 母音制用法에 比重을 두고있다. 어느 法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法式도 고비가 있다. 이 고비란 넘기면 終着驛이 보인다. 그 고비란 母音制用法이다. 이 母音制用法이란 한 例를 들자면 <金剛山>할때 語頭인 <금>은 그대로 쓰되 다음에 나오는 <강산>은 <금>이라는 <口>方向으로 <강산>을 各各 母音으로 고쳐 <양안>이라 붙여 쓰게 됨으로 結局 速記文字로는 <금양안>이라고 쓴다는 말

韓國式

韓國(舊朝鮮)速記는 實用速記일 뿐만 아니라 朝鮮語學會 달본을 基礎로 한 最初의 우리말 速記로서 1946年 2月 當時 漢城日報 編輯局長으로 活躍하고 계 시던 朴松先生에 의해 同紙에 紹介됨으로 因해 一般에 公開 되었다.

朴松先生의 持論인 普通 運筆速度에 口述速度를 따질 餘 없이 收錄하는 것이 速記라는 主張은 實用 速記로서의 嚆矢를 劃한 것으로 誇張된 主張은 아니다. 또 우리말 動詞 및 形容詞의 끝바꿈을 合理的으로 消化한 點이다. 名詞에 있어 子音省略法 異行間의 同母音의 省略은 韓國速記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字間의 空間도 一字로 看做하여 自由奔忙한 運筆을 다 하게 한 點은 實務에 從事하면 할수록 그 妙를 터득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또 速記基本子字와 우리말 配列에 있어 구차한 規定이 없고 履修者의 素質과 嗜好에 따라 配列을 自由로이 變更을 許容한 點은 韓國速記가 지닌 커다란 자랑이다.

韓國速記의 源流를 따지면 韋트멘式 速記亞流를 끌어왔고 日本 中根速記 早稻田式速記들 본 받은 痕迹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陰陽五行의 太極原理를 適用한 點은 當時 매우 놀라운 存在이었음을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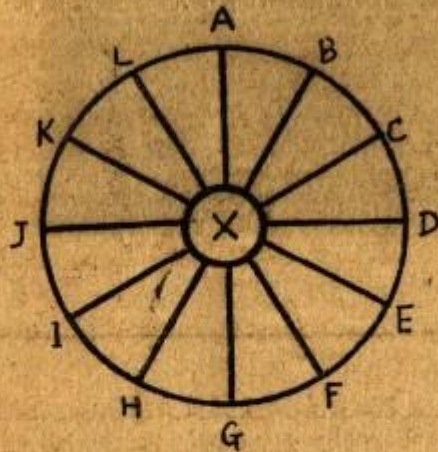
1945年末 서울驛前 太平旅館에서 第一期生(當時 4名應募)을 養成하기 始作하여 6·25動亂前까지 18期生을 輩出하였으나 朝鮮速記의 傳統을 이어온 速記士는 現在 손꼽을 程度로 밖에 남지않았다. 그러나 一家를 이루어 言論機關 軍機關 地方自治團體 議會機關 등에서 重鎮的 活躍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請託速記面에서 出版業界에서 社會에서 確固한 基盤을 닦고 있다.

6·25前까지 過渡期의 朝鮮速記의 活動은 民主黨創黨 文總創立 第1回地方長官會議 文敎行政의 各

이다. 그러므로 이 法式은 反文이 어렵다. 따라서 이 法式을 하는 速記士는 많은 分野의 常識을 要求한다.



圖 1



3. 基本文字

簡單히 基本文字만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이 法式은 유두 ①長 ②角 ③圓의 正確을 要求하고 있으며 3「미리」 6「미리」 9「미리」 12「미리」로 區別하고 있다. 上記한바와 같이 이 法式은 母音利用法이 主活用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基本文字 第1形式에서 母音 <아>行을 따로 떼어 내어 <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라·파·하>로 構成되어 있다.

即 字形構造圖에서 본바와 같이

- | | | | |
|-------|-----|-------|-----|
| <가行>은 | X-D | <나行>은 | H-F |
| <다行>은 | L-B | <라行>은 | A-C |
| <마行>은 | J-H | <바行>은 | A-E |
| <사行>은 | D-F | <자行>은 | X-C |
| <차行>은 | C-E | <카行>은 | B-X |
| <타行>은 | K-A | <파行>은 | L-J |
| <하行>은 | K-I | | |

또한 基本文字中 特別 使用率이 높은 <코·겨·며·벼·교·되·재·에·페·토>들은 基本文字 第1形式 字形에 구애됨이 없이 따로 이 特殊字形으로 하여 使用하고 있다.

種會議들 비롯하여 初創期의 各文化 社會團體에 參與하여 速記文化의 開花期의 役軍으로서 多大한 活躍을 하였다.

6·25動亂後 休戰이 되어 朝鮮速記의 再發足이 同人間에 論議되었으나 外的與件이 不許하여 此日 彼日하다가 世宗路教育會館에서 韓國速記學館이 申鉉富氏에 依해 開館되었으나 朝鮮速記에서는 이에 參與를 拒否하여 結局 申鉉富氏 單獨的 經營으로 異質的인 朝鮮速記 履修者가 輩出되었다.

그後 同速記學教材의 大幅的인 修正이 加해져서 十三期生부터는 점차적으로 本格的인 速記士가 養成되었으며 그後 朝鮮速記 1.2.3期生이 主動이 되어 韓國聯合速記學院(現中央日報社屋址)을 設立하여 軍用速記와 法院速記를 研究 普及함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忠南北道에서는 忠清速記文化普及會를 創立하여 大대의인 速記普及을 하게 되었다. 이는 實로우리나라 速記史에 1「페이지」를 裝飾하는 劃期的인 일이었으나 5·16革命 前後하여 文化活動의 全體的인 沈滯에 휘말려 結實을 보지 못한채 解散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 우리 韓國速記의 活動은 다시 活氣를 띠어 農協의 創立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의 創立 서울 特別市議會의 創立 地方議會의 創立等 戰後 韓國 社會團體再建에 活潑한 參與를 하였다.

國會 速記課에는 現在 二人(申昌秀 柳慶淑)이 參與하고 있을 뿐이나 養成機關이 없는 韓國速記로서는 國會進出의 展望을 아직 確言할 수 없는 段階에 있다.

韓國(舊朝鮮)速記學의 體系를 略說하면 韓國速記의 著述로는 朴松先生著「朝鮮速記」가 있으며 그後 門下生에 依해 增補된 南相天著「速記」(學生教科用으로 널리 普及되고 있음)가 있고 申鉉富著「速記學」이 있으며 崔龍植著「韓國速記學」全 十一卷이 있다.

이「韓國速記學」은 朝鮮速記의 體系를 網羅한 學術書로 應用編이 學生速記 秘書速記 編輯記者用 速記 軍用速記 法院速記 調會速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特色으로 되어 있다.

英國政府招請으로 渡英後 歸國하는 會長을 出迎한 本協會任員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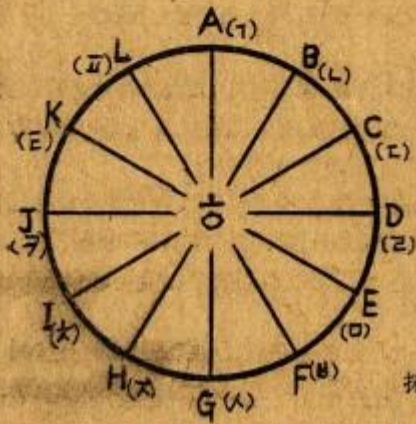


本協會研究部長
崔龍植

速記文字의 基本形을 잠간 略說하면 圖 1에서 分出되는 各直線 斜線 反圓形이 總基本 文字이며 우리말 子音을 表示하고 母音은 이 基本線의 長短과 位置法에 依하여 確定된다.

變則的 活用이 적어의 쓰기 쉽고 익히기 쉬우며 速記의 生命인 翻文이 正確하고 빠른 長點이 있다.

過去 韓國 速記의 敎育例를 보면 修業期間이 三個月되던 本協會가 定하고 있는 5級(十分間에 1,500字乃至 1,800字記錄)은 無難히 獲得하며 6個月을 修業하면 3級乃至2級은 거의 90「프로」以上 獲得하며 一級은 8個月 履修로 一般人 누구나가 習得 할 수 있다. 韓國 速記



의 將來 目標을 略說하면 當面 焦眉의 急은 養成 機關의 設置이나 運營資金의 調達難으로 當分間 實現의 展望은 없다 따라서 既存 履修者를 中心으로한 研究活動과 需要處 開拓에 總力을 기우릴 方針이다 흔어져 있는 朝鮮速記 韓國速記 韓國聯合速記의 各履修者의 結果도 杳然한 此際에 廣範圍한 事業活動은 할수 없으나 各 門下生의 橫的인 連結을 取하여 暫定的인 事業을 展開할 計劃에 있다. 그 目標은 于 先 우리의 出版物을 갖는 일, 速記事務所를 開設하는 일, 現 大韓速記協會의 支援을 얻어 需要處를 開拓하는 일 등으로 되어 있다.

以上 간단한 韓國速記法式을 紹介하며 門下生들의 많은 協調와 結實을 바라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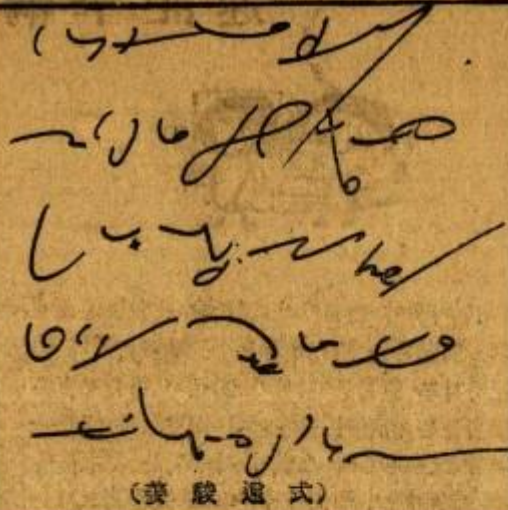
各法式速記例文比較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한번 發展의 機會가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機會는 우리의
희망과 온 國民의 情誠으로 만든 더없이 高
貴한, 實로 마지막 機會라고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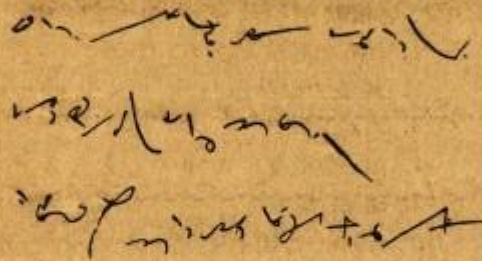
우리가 이 機會마저 놓치고 만다면 우리
에게 自主自立的 繁榮된 祖國을 建設할 機
會는 다시 오지않을 것입니다.

(67年度 大統領年頭敎書에서 拔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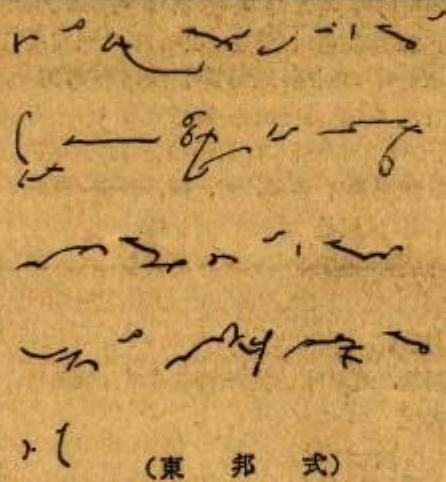
(原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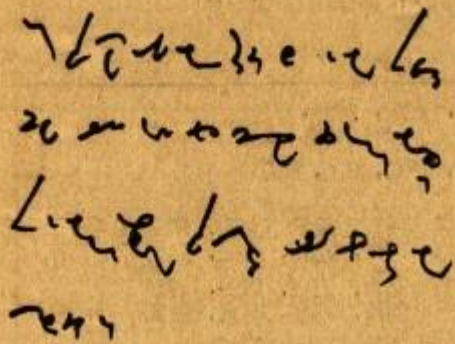
(英 殿 退 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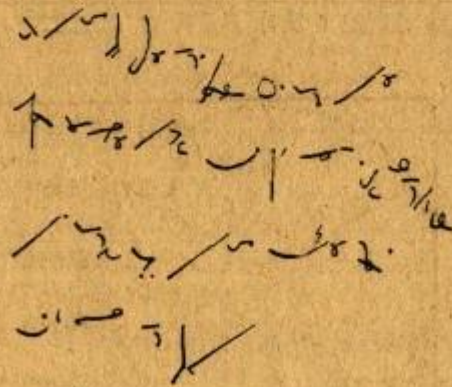
(高 麗 式)



(東 邦 式)



(世 宗 式)



(韓 國 式)

(世 宗 式) 가나다順

(韓 國 式)

速記學綱目(試案)



K 研究生

“速記” 더욱이 表音에서 現代의 表語速記를 바라보고 前進하는 速記學界는 同時多打鍵의 機械速記까지도 實用한지 이미 20餘年 聲音學者와 電子學者들은 錄音이 될뿐더러 線樣조차 視覺에 남는 機械文字考案에 血眼이 되어있는 現況속에서도 速記學이란 무엇이며 그 隣接學問으로는 무엇이 動員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직도 世界速記界의 課題로 되어 있는 것이다. 아래에 各 速記學者들이 그려낸 速記學의 體系를 2,3綜合하여 보기로 하고 速記法을 構想實用 하는 各自는 이 거울에 비추어 그 未到點을 向하여 突進할것이고 速記學의 各章, 節, 項, 目을 滿足시키는 만큼의 成果를 걸우기 바란다.

1) 約30年前에 構成된 速記學要綱은 아래와 같았다.

I. 速記概論

1. 技術論, 速記의 文化技術로서의 價値와 그 機能
2. 各 論
 - ㉞ 速記의 言語學
 - ㉟ 速記의 聲音學
 - ㊱ 速記의 語法의 發見과 그 組織方式

㉞ 여러 統計의 作成

I. 靜的速記論

1. 世界的 速記發達史
2. 韓國速記의 發達史
3. 比較論
4. 文字 및 書記學
5. 速記文字 및 符號論究

II. 動的速記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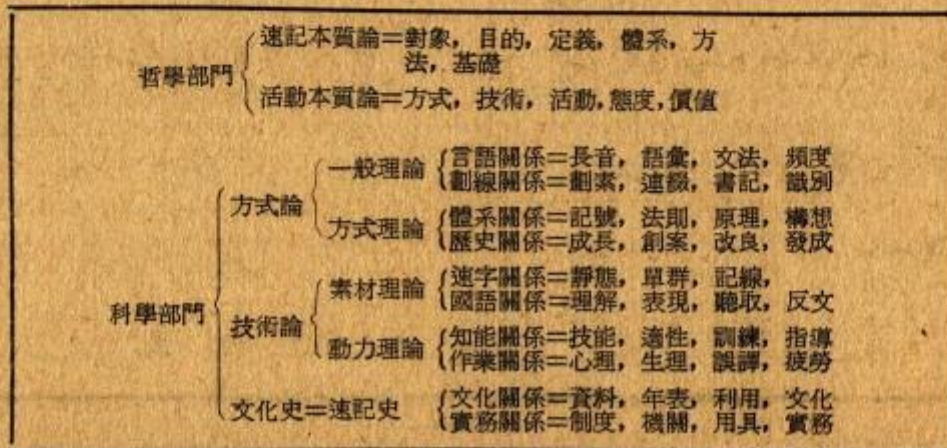
1. 表音速記論
2. 記錄速度統計
3. 記線速度論

VI. 補助學

1. 速記心理學
2. 速記生理學
3. 速記美學
4. 速記教授論
5. 速記文獻論

以上 分論外에 50年의 沿革을 지닌 日本 速記界는 學問으로의 길을 트기爲한 試圖로서 早稻田大內, 國語研究所 武部良明氏에 依하여 다음과 같은 크게 2章으로

① 哲學으로서의 速記 ② 科學으로서의 速記로 나누고 여기에 機械速記論까지 덧붙여 體系 있는 分析綜合을 試圖한바 있는데 그 要目만 紹介하면 아래의 一覽表와 같다.



陶淵明의 田園詩



(前略) 여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인생관과 부정적인 인생관의 융합으로써 활동과 휴식과의 사이, 또 무익한 번망의 세계로 몰입하려고 하는 것과 부담이 많은 생활에서 완전히 도피한다는 것과의 사이에 잘 조화된 「중용」의 철학을 체계 세울 수 있다는 것과, 세상의 모든 철학의 조력으로서 우리들이 발견할수 있었던 것으로는 이것이 가장 타당하고 가장 행복한 지상의 인간생활의 이상이라는데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두개의 틀리는 인생관의 융합이 조화된 인견 모든 교양이라든가 교육이란 것의 중국적인 목적의 조화된 인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이 조화된 인격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생의 즐거움과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인생의 즐거움과 사랑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나에게서는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우화로써 이야기하든가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실지로 살아 있는 실화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나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중국인이 교양이 나은 가장 위대한 시인이고 가장 잘 조화된 인격자가 도연명(陶淵明)인 것이다. 도연명이야말로 중국의 문학사상에서 가장 완전하게 조화되고 가장 원만한 인격자라고 해도 이에 반대하는 자는 중국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문호 임어당(林語堂)의 문장의 일절이다.

고래로 정평있는 중국시인의 시가 현대의 한국인에게는 당나라 사람들의 잠고래 같이 생각된다면 그것은 꽤 슬픈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중국시는 중국어로서 읽어야 하겠지만 이것을 우리말로 읽어도 시의 뜻은 알 수 있으며

李 明 奎

작자의 기본도 호츰할수는 있다. 그리고 중국시인의 감정은 같은 동양인인 우리들의 공명과 그 동양적인 흥취에 가득 차 있는 시상은 우리들의 취미에 맞는 것이 있다. 하물며 중국시는 중국문학의 비화(美花)이고 미옥(美玉)인 동시에 중국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문예이기 때문에 그 시를 통해서 중국의 진수(眞髓)라고도 할 수 있는 것에 접촉할 수가 있다. 현대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의 자귀(字句)의 천작연구가 아니고 중국시인의 감정이나 생활분위기를 알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마음이라고 할만한 것을 발견하는데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서 도연명 이백(李白) 두보(杜甫) 백거이(白居易)가 특히 유명하지만 여기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도연명의 전원시(田園詩)이다.

도연명이 이세상을 떠난지 1540년이 되지만 그의 시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전원의 사람이었던 그의 시에는 전원을 읊은 것이 많았고 그 작품은 후세에 길이 사람들의 애송을 받았다. 지금 그의 전원시에 대해서 약간의 고찰을 시도하는 것은 도연명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연을 읊은 시는 산수시(山水詩)와 전원시로 나눌 수 있다. 그와 같은 시대의 시인으로서 사영운(謝靈運)은 산수시에 능했고 이와 반대로 도연명은 많은 전원시를 읊었다. 전원시는 산수의 자연미를 서술하는 산수시와는 달리 전원의 자연을 묘사할 뿐만이 아니라 인적(人的)으로 전원의 정서를 풍기는 시이다. 전원은 자연미 한 가지만이 아니고 그곳에는 인간의 실용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엮인 이상 전원시에는 실용과 인사(人事)가 얽혀 있어야만 한다. 전원시는 전원의 자연미와 평화미를 구가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전원에는 미(美)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추(醜)와 우울이 감추어져 있다. 도연명은 생활고의 체험이 있느니만큼 그가 읊은 전원의 노래(詩)는 시정시인의 공상적

인 그것과는 달랐으며 농민생활의 진실을 묘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시에 대하여 마치 "일배"의 그림에 대하여는 심경이 생기는 것도 양자(兩者)의 생활분위기가 닮아 있기 때문이다. 도연명은 전원의 우울을 서술하는 것도 감히 사양하지 않았지만 그 태도는 고외로 전원생활의 이면을 폭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진실하고 솔직하게 그것을 묘사하는데 끝났다는 것에 묘미가 있는 것이다. 일개의 농민으로서 역경(力耕)에 쫓겨서 지내려 하던 그의 시에는 다분히 유교미(儒敎味)다. 덧붙여 담은 궁경정신(躬耕精神)이 겨져 있지만 그중에서 티끌만큼의 우울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의 달란된 마음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기탄없이 평한다면 그가 고조하는 역경(力耕)의 시에는 유교적인 교훈의 냄새가 풍기며 문학적인 작품으로서 보는 전원시로서는 다분히 딱딱한 맛을 가졌지만 그것도 그가 유교적인 정신으로서 농민생활로 시종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실로 그는

하루에 두번 새벽은 없으리니
 젊음은 다시 못 오리
 세월이 사람 기다리지 못하리니
 어찌 공부할 때를 놓칠소나

라는 유명한 귀절을 남긴 시인이다.

자연을 즐긴 그는 자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상을 시도 하였는가? 일찍이 바이런은 「내 적지않게 인간을 사랑한 것은 자연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 처럼 도연명도 역시 보다 많은 정열로서 인간보다도 자연을 사랑한 시인이었다.

자연에는 어떠한 때에도 허위가 없다. 그러나 자연만큼 천변만화하여 시인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인간사회에서 실망한 시인들도 자연에 대해서는 만강(滿腔)의 환희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니 하물며 중국문인의 대다수가 관계생활의 낙오자였으니 인사에 실망한 그들이 산수자연에 위로를 받은 바는 큰 것이었다. 그는 어떠한 자연을 구하였던가?

그가 바라보는 자연은 장대한 자연도 아니고 또 험괴기절(險怪奇絶)한 자연도 아니었으며 실로 한미(閑美)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것, 한정(閑靜)하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자연이었다. 만일 그의

榆柳蔭後園

桃李羅堂前

曖曖遠人村

依依墟黑屋

비들은 후원을 둘러싸고

도리(桃李)는 앞뜰에 즐비하네

멀리 바라보이는 마을은 흐리고

인가는 연기에 감쌓이었네

狗吠深巷中

鷄鳴桑樹巔

戶庭無塵雜

虛室有餘閑

개는 깊은 골목에서 짓고

닭은 뽕나무 위에서 우네

뜰에는 먼지 하나 없고

빈 방에는 한가로움 만이 있네

하고 읊은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여기에 한가하고 고요한 전원의 자연미와 기분으로서의 평화스러운 아름다움이 감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의 이상사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도화원기」(桃花源記)에는 그 신향(仙境)의 자연미를 「낭떠러지(언덕)를 둘러싸기 수 백보, 속에는 잡목은 없고 꽃다운 풀의 싱싱함과 아름다움은 낙영이 빈번한 것 같더라」고 했다.

이와같은 자연을 즐긴 그는 자연의 한 경위로서의 풍우(風雨)를 묘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그 경지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시에서도 그가 읊은 바람은 부드러운 남풍(南風)이고 비는 한가한 보슬비인 것이 많다.

동쪽 담 밑의 국화를 캐고

늪늪히 남산을 바라 보니

산기(山氣)와 일석(日夕)은 아름답고

날새들은 쌍쌍이 돌아오네

여기에 진정한 뜻이 있어

한마디 할려고 하였드니

어느덧 할 말을 잊었네

정온(靜麗)한 자연속에서만 감지할 수 있는 심경이다.

이와 같이 그가 구가하는 자연은 한가하고 조용한 자연미이며 그곳에는 만상(萬象)의 총화(叢化)된 아름다운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청초(淸楚)한 것이다. 따라서 구가하는 곳도 만상이 청신하고 기상이 흥만한 아침이라든가 모든 추함이 감추어지고 다시 고요하여지며 한가하여 칠

려고 하는 저녁때가 시에서 자연미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 많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음은 자연의 태만이 한가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연도 중국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선인(仙人) 취미에 가득찬 그런것이 아니고 서양의 시에서 볼 수 있는것 같은 자기의 철학적인 사색에 뿌리박고 음은 명상적인 그것도 아니다. 원래 중국시인은 자기의 심정을 자연물에 맡기는 일은 있지만 자연을 자기와 대립 시켜서 이것을 바라보는 일은 적다. 그들은 대번에 자연속으로 자기를 투입시킨 후에 이것을 바라 보았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경은 자연과 융합되어 있다. 유종원(柳宗元)이 말한 「조물주와 명합(冥合) 한다」는 경지도 이와같은 태도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들은 공리적으로는 자연을 보지 않는다. 봄이 좋고 겨울이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대번에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속으로 들어가 천지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국시인은 이 경지를 즐기는 것이다. 도연명도 역시 자연을 바라봄에 있어서 흔히 이와같은 태도였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속에 녹아 들어갈수 있는 중국시인은 술로서 그 정도를 알맞게 하는 수가 많았다. 그들의 신인 대다수는 애주가이고 또 자연의 품속에 안겨서 애음하는 것을 즐겼던 것이다. 자연의 품속 내지는 자연을 배경으로서 좋아하는 술의 애용은 그들로 하여금 자연과 빈틈없이 융화시키는 기연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이 이미 소박한것 처럼 그 음주의 경지도 또 낙천적이다. 자연속에서 담담한 이술의 애호에는 엄세의 거구(舉句)에 나타난것 같은 어두운 그림자는 없고 서양의 술의 시가 그 야말로 인간생활의 고뇌에서 생기고 그 곳에는 심각 퇴폐함이 뒤범벅되어 있는것과는 달리, 또 서양에서는 인간을 떠나서 술을 마실수 없는 것과는 달리 중국시인이 인간을 잊고서 자연속에서 술을 마신다는 태도는 그 얼마나 청초하면서도 몰아적(沒我的)이고 그 심경은 담담한 것이나, 그리고 이 몰아의 경지야 말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내키는대로 자연과 명합시킨 것이다. (中國文學研究者)

祝 創 刊

서울中央放送局 局長 金在寅	서울텔레비죤放送局 局長 金振榮	서울國際放送局 局長 李容相	基督教放送局 局長 甘義道	東亞放送局 局長 金相기	東洋放送局 局長 韓洙學	文化放送株式會社 社長 曹會出
-------------------	---------------------	-------------------	------------------	-----------------	-----------------	--------------------



速記關係冊子一覽



(外國은 言語가나다順, 國內는 著者가나다順)

書 籍 名	言語別	著 者	發行年度	備 考
朝鮮語速記法詳解	韓國語	姜 駿 達	1935年	
速記法要覽(大學教材)	"	"	1959	
" (")	"	"	1966	
速記講義錄(6卷)	"	金 天 漢	1957	
速記教本	"	南 相 天	1955	
簡化速記	"	朴 喜 善	1957	
速記學辭典	"	申 鉉 富	1957	
朝鮮速記術講義	"	嚴 正 友	1948	
解放速記	"	李 東 根	1948	
速記學講義	"	"	1952	
速記學講義錄	"	"	1954	
逸波式速記學概論	"	張 基 萬	1960	
스트로크계 速記法	獨逸語	Winkler	1966	
Gregg Shorthand	語 英	Gregg	1929	
Gregg 原理教本	"	"	1955	
機械速記의 字盤斗 理論	"	Stenotype社	1950	
速記史	"	Leslie	1963	
獨佛語 速記法	佛 語	Lang Lege	1965	
에스語 速記法	"	Collee	1932	
記音 速記法	英 語	Pitman	1837	
英語 速記法	"	Lang Lege	1966	
新式日本語速記術	日本語	Ganddlet	1890	
新式速記術獨習	"	熊崎健一郎	1914	
超中根式速記法	"	森卓明	1931	
速記講座	"	國字常弘	1932	
漢字音と略字法則研究	"	安田勝藏	1937	
獨習學生速記	"	武部良明	1941	
速記 type 教本	"	日本速記研究會	1953	
日本速記概說 上·下	"	武部良明	1951	
衆議院式速記法	"	西來路秀男	1955	
速記完全獨習	"	田鎖源	1961	
日本速記80年史	"	日本速記研究會	1962	
早稻田速記研究	"	川口晃玉	1965	
玉怡速記學	中國語	汪 怡	1961	
中華速記	"	許 師 慎	1963	

大韓速記協會定款

第1章 總 則

- 第1條 本會의 名稱은 大韓速記協會라 稱한다
- 第2條 本會는 速記人의 總集結體이다
- 第3條 本會는 本部를 서울에 두고 必要한 地域에 支部를 둘 수 있다
- 第4條 本會의 目的은
 1. 速記學·術의 研究發展
 2. 速記人의 資質向上
 3. 速記人의 權益擁護와 地位向上
 4. 速記人의 相互協力과 親睦을 圖謀함에 있다.

第2章 會 員

- 第5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3種으로 構成한다
 1. 名譽會員
 2. 正會員
 3. 準會員
- 第6條 正會員은 本會會規에 依한 資格審査에 合格된者로 한다

本會에 加入된 速記法式을 習得한 者나 習得中에 있는 者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準會員이 될 수 있다.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理解하고 物心兩面으로 後援하는 人士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名譽會員으로 推戴할 수 있다.

資格審査에 關한 事項은 會規로서 定한다.
- 第7條 正會員은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會員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權利를 平等하게 行使한다
- 第8條 會員은 定款 또는 總會議決事項의 遵守와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第3章 機 關

- 第9條 本會에 다음의 機關을 둔다.
 1. 總 會
 2. 理事會
- 第10條 總會는 正會員만으로 構成한다.
- 第11條 總會는 每年 4月中에 會長이 召集한다

但 正會員 3分之 1以上の 要求가 있을때 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臨時總會를 召集한다.

前項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長은 그 要求한 날로부터 1個月以內에 臨時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12條 總會는 本會의 最高機關으로서 그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의 推戴
2. 指導委員의 推戴
3. 會長과 副會長의 選出
4. 理事 및 監事의 選出
5. 豫算 및 決算의 承認
6. 會務에 關한 報告處理
7. 定款의 改正

第13條 理事會는 加入法式에서 3人以內로 選出된 理事로서 構成하며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但 總會後 最初의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한다

第14條 理事會는 本會의 執行機關으로서 그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理事長 所屬各部長 및 各支部長의 選出
2. 顧問 및 名譽會員의 推戴
3. 會務一切의 執行決議
4. 各部에서 提出하는 會務報告의 處理와 總會에 對한 報告案 其他 議案의 決定
5. 定款改定案의 提出
6. 會規의 制定 및 改定

但 總會의 事後承認을 하여야 한다
7. 會員加入承認의 決定

第15條 理事會에 다음의 部署를 둔다

1. 總務部
2. 研究部
3. 宣傳部
4. 事業部
5. 資格審査委員會

第16條 各部의 事務分擔은 다음과 같다

- 一. 總 務 部
 1. 印章·文書·什器·其他 財産管理에 關한 事項
 2. 庶務·會計·連絡에 關한 事項
 3. 組織에 關한 事項
 4. 他部에 所屬되지 않은 事項
- 二. 研 究 部
 1. 會務調査 및 統計資料蒐集과 研究에 關한 事項
 2. 速記學 術研究에 關한 事項
- 三. 宣 傳 部
 1. 宣傳 出版에 關한 事項
- 四. 事 業 部
 1. 速記學 術普及에 關한 事項
 2. 會員就業斡旋 및 福利增進에 關한 事項

3. 本會發展을 爲한 事業의 實踐事項

五. 資格審査 委員會

1. 會員懲戒 및 資格審査에 關한 事項

1. 速記士資格檢定에 關한 事項

但 各部의 業務分擔에 關하여 相互異議가 生할 경우에는 理事會가 決定한다.

第17條 本會의 모든 會議는 在籍會員의 過半數出席으로 成立되며 出席員數의 過半數로서 議決한다

但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司會者가 決定한다

第18條 地方會員은 總會出席을 他會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但 前項의 委任은 成員을 爲한 手續以外의 效力은 發生되지 않는다.

第4章 任 員

第19條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 1人
2. 顧問 若干名
3. 指導委員 若干名
4. 會 長 1人
5. 副會長 2人
6. 理事長 1人
7. 理 事 若干名
8. 監 事 3人

第20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를 統轄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會長이 指名하는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理事長과 名部의 部長 및 資格審査委員長은 理事會中에서 選定하며 所管事務를 擔當한다.

監事は 總會에 提出한 決算報告를 監査한다

第21條 本會의 發展을 爲하여 諮問役으로 顧問을 두고 學術指導를 爲하여 指導委員을 둔다

第22條 各種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連任할 수 있다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5章 財 政

第23條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入會金 會費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第24條 入會金과 會費에 關한 事項은 會規로서 定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26條 本會의 會計監査는 年1回를 原則으로 하되 會規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必要할 時는 隨時로 監査를 行할 수 있다

第6章 會員에 關한 實罰

第27條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爲하여 特別한 功勞가 있다고 認定되는 會員 및 本會에 有功한 人士는 總會의 決議로서 그 功勞에 相應되는 表彰을 할 수 있다

第28條 定款 또는 會規에 違反하여 會員으로서의 義務를 履行치 않거나 本會의 體面을 損傷하는 所行을 한 會員은 理事會의 議決로서 다음의 列記된 懲戒에 處한다

1. 謹 責
2. 停 權
3. 除 名

但 除名處分은 總會의 事後承認을 얻어야 한다

附 則

第29條 이 定款은 創立總會에서 議決함으로서 그 效力이 發生한다

第30條 創立總會에서 報告接受된 者는 本會 最初의 正會員이 된다

大韓速記協會
任 員 名 單

名譽會長	李 孝 祥	國會議長
名譽顧問	金 鍾 泌	共和黨議長
顧 問	裴 泳 鎬	國會事務總長
	李 鎬 販	國會專門委員
指導委員	李 權 孝	國會議事局長
	張 基 泰	黃 重 秀
	南 相 天	
名譽會員	李 弼 鎔	金 震 熙
	韓 鍾 暎	
會 長	李 源 萬	議 員
副會長	姜 駿 遠	李 東 根
理事長	金 宗 煥	
總務部長	金 基 英	
研究部長	金 基 龍	
宣傳部長	梁 源 龍	
事業部長	金 允 洙	
資格審査委員長	韓 奉 永	
理 事	郭 漢 永	宋 基 喆
	申 昌 秀	尹 炳 高
	李 康 賢	李 東 淳
	林 來 鉉	崔 龍 夏
	崔 鎭 洙	韓 鍾 烈
監 事	金 永 善	朴 明 守
	全 永 國	

會 務 日 誌

- 1966. 7. 26. 創立準備委員會開催, 委員長에 姜駿遠氏選出 小委員會構成 및 部署決定
- 7. 30. 第2次小委員會開催, 定款草李審議
- 8. 6. 創立準備委員會2次會議開催 發起人選定基準採擇定款採擇,
- 8. 16. 創立準備委員會三次會議開催 發起人(法式別)및 會員資格者, 名單接受
- 8. 20. 發起人大會開催 定款修正採擇, 會員資格審查委員會構成, 創立總會準備, 入會金決定
- 8. 24. 創立總會準備委員會部署分擔 準備委員長에 韓奉永氏選出
- 9. 10. 準備委員會開催 創立趣旨文法式創案者 및 功勞者表彰議決
- 10. 13. 會長候補에 李源萬議員決定, 事業計劃書草案採擇
- 11. 14. 準備委員會 開催, 創立總會日字 및 場所決定
- 11. 28. 準備委員會 開催 豫算案·創立總會會項·對議案件·定款等 最終案採擇
- 12. 10. 新聞會館에서 大韓速記協會 創立總會開催(15時50分)
 - ①臨時議長에 韓奉永氏選出
 - ②國會事業總長祝辭
 - ③創立趣旨文 採擇
 - ④定款採擇
 - ⑤名譽會長推戴
 - ⑥指導委員推戴

- ⑦會長選出
 - ⑧副會長選出,
 - ⑨ 理事 및 監事選出
 - ⑩會長就任人事
- (17時30分 閉會)

- 1966. 12. 10. 一次理事會開催 姜副會長司會 理事長選出
- 12. 12. 二次理事會開催, 部署決定
- 12. 17. 三次 * * * 基金確立을 爲한 協贊運動採擇
- 12. 21. 四次 * * * 會規制定
- 1967. 1. 7. 五次 * * * 資格審查委員會構成
- 1. 21. 六次理事會開催, 理事會權限을 任員會議(部長級)로 委任
- 1. 23. 一次任員會議開催, 4月總會까지의 事業計劃討議決定
- 1. 28. 二次任員會議開催 公開講座準備
- 2. 4. 三次任員會議開催 顧問名譽會員推戴
- 2. 11. 四次任員會議開催
 - ①協贊結果入金금 180,000—預金
 - ②協會登錄問題報告
 - ③會誌發刊中間報告
- 3. 6. 五次 任員會議 開催
 - ①會誌發刊費選定, 內定檢討
- 3. 11. 七次理事會開催
 - ①任員會議決議事項追認
 - ②資格審查規程草案提出討議
- 3. 14. 六次任員會議開催, 資格審查規程通過

祝 創 刊

經濟通信社 社長 蔡중현	東洋通信社 社長 金成坤	同和通信社 社長 鄭載護	貿易通信社 社長 李活	時事通信社 社長 金희중	合同通信社 社長 李源京
-----------------	-----------------	-----------------	----------------	-----------------	-----------------

編輯 後記

◎ 呱呱의 울음소리가 오랜 陣痛 끝에 우리 귀에 들려 온지가 어그게 같은데도, 歲月이 如流水라는 옛사람의 말대로 於焉間 5箇月이라는 時間이 흘렀다. 이렇다 할 뚜렷한 業績을 내세우기도 어렵지만 幹部-同은 눈부신 活躍을 繼續해 왔다.

남보트는 勞苦는 덜어 두고라도 于先 表면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速記文化」라고 命名한 이 冊子다.

이것이 눈의 器官을 通하여 社會와 協會, 幹部와 會員사이를 더욱 短縮시키고 情과 熱을 單군에 묶는 役割을 맡게 되는 意味에서 自祝하여 마지 않는다.

「언제 이만한 것이나마 우리 速記社會에 있었느냐」고...

◎ 이번 號에는 法院速記問題를 特輯으로 다루어 분명한 것이 되었고, 專門의 論說이 先輩와 同僚들의 손으로 珠玉篇을 이루고 있다.

各法式의 紹介도 부계 있는 資料가 될 것이며 이번 號에 빠진 法式은 다음번에 크게 다루게 되기를 꼭 期約한다.

◎ 입에 맞는 떡이 없다더니 이만한 것이나마 世上에 내놓는다는 적지아니 驛路도 있었다는 것을告

白해 준다. 아직 갓난아기니 놀러보아야 되겠고 키워야 되겠다. 子息은 내 子息이 예쁘다하니 速記人의 速記誌가 예뻐야 될 것이다.

◎ 굶은 비가 꽃샘을 부르고 山野의 새싹이 자못 물럭어 오르는 時節이라면 閑暇롭게 들리지만 이땅의 요지음은 選舉로 奔走한 나날이 繼續되고 있다.

게끗한 한票가 壇上의 善良을 북을 것이며 善良들의 獅子吼가 Short-hand의 손을 더욱 바르게 할 것을 생각하면 「速記文化」의 第2號가 여기서 움터오를 것이 豫想된다.

◎ 歷史는 봄에 이루어진다! 4·19가 봄에 있었고 5·16이 봄에 있었고 選舉도 봄에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보니 「速記文化」가 봄에 이루어진 것도 偶然이 아닌상 실다.

會員 여러분의 自愛가 있기를 빈다. 봄가을이나 여름 겨울이 우리에게 무슨 感傷을 달리 주리오만 봄에는 또한 健康의 危機인 때문에 問安으로 엮짚는 말이니 實望하지 마시라.

◎ 끝으로 높으신 분들의 貴重한 글과 激勵의 人事 말씀을 주신데 對해 敬意를 表하고 이것으로 後記를 代身한다. (7·2·11 一同)

速記文化 創刊號 (非賣品)

1967年 5月 1日 發行

發行 大韓速記協會

創 祝 刊

大韓石炭公社

總裁職務代理 李 祥 圭

大韓石油公社

社 長 朴 元 錫

韓國貨物自動車株式會社

社 長 鄭 致 甲

